

현안분석 2005-

법령용어 4

증권거래법상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finement of the Terminology and
Sentence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2005. 7.

증권거래법상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finement of the Terminology and
Sentence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연구자 : 김 정 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부장)

Kim, Jung-Soo

2005. 7.

국 문 요 약

이 보고서는 증권거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구조로 순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권거래법은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player)들이 준수해야 하는 근본적인 규범일 뿐만 아니라 분쟁의 발생시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구조는 그 의미가 명확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평이한 언어와 현대적 감각의 언어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90년대 주요국은 자국의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장개혁을 시도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하나가 법령의 정비였고, 여기에는 보다 평이한 언어로 증권관계법을 정비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이는 증권시장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증권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용어나 문장구조를 평이하게 정비하는 일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황이 보다 심각하다. 우리 증권거래법의 경우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의 번역식 표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증권거래법은 증권시장의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정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하여 증권거래법이 국민친화적 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려운 한자어의 사용, 일본어의 번역식 표현, 애매모호한 표현, 지나치게 긴 문장,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들을 현대적 언어감각으로 다듬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본다. 이는 우리 증권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의 정비 작업 중 서둘러야 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증권거래법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증권거래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쉽고 현대적인 언어감각을 반영한 순화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작업 과정에서 우리 법령에 나타난 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들을 순화하기 위해 발표된 기존의 결과물들을 많이 참조하였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나 증권시장에서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순화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증권거래법, 용어순화, 증권시장, 법령정비, 현대적 언어

Abstract

This report analyze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erminology and sentence structures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EA), and clarifies them so that investors can understand them more easily.

Every market participants must comply with the SEA which is the fundamental norm and provides important principles to resolve disputes. Accordingly, the terminology and sentence structures of the SEA must have clear meanings. The SEA should be written by plain and modern Korean in order to be understood easily by all market participants.

In the 1990s, major countries tried to reform their securities market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with amendments to securities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process, the project to write the terminology of securities laws with plain language was undertaken.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urviving as a competitive securities market is to get investors confidence. They believed that refining the terminology of their laws with plain language was inevitable.

It is definite that our case is more serious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many difficult Chinese letters and numerous Japanese style expressions used in the SEA could not be easily understandable by the new generation. The SEA has been amended faster than other laws in order to cope with rapid changes in the securities market. Such response is important, but changing the terminology of Chinese letters, numerous Japanese style

expressions, lengthy sentences and unnatural sentences with plain and modern language must not be disregarded any more. I think this task is urgent not only to enhance investors confidence to our market, but also to help our securities market make progress to become one of the world-class securities markets.

This reports goal is to make a suggestion, using plain and modern Korean terms and expressions, to refine and update the terminology and sentence structures in the SEA so that general investors could understand it more easily. I acquired assistance from many other studies that have been already done to clarify and update other laws. However, I have attempted to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SEA in making this proposal.

※Keywords : Securities and Exchange Act, Refinement of Terminology, Terminology and Sentences, Securities Market, Plain Language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I. 서 론	11
1.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 순화사업의 의의	11
2. 최근의 발전	12
II. 증권거래법의 특수성과 순화방안	15
1. 증권거래법의 특수성	15
2. 증권거래법의 순화의 기본방향	16
III.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19
1. 한자사용과 관련하여	19
(1) 과도한 한자 사용	19
(2) 어려운 한자의 순화	19
(3) 일상용어로 순화가 필요한 한자	21
(4) 구시대적인 한문투의 용어	22
2. 일본식 용어의 사용	23
(1) 순화가 필요한 일본식 용어	23
(2) 순화가 부적절한 일본식 용어	24
3. 권위적인 용어의 순화	25
(1) “~한 者” 또는 “人”의 순화	25
(2) “본 조” 또는 “본 항”의 순화	27
(3) “處하다” 및 “命하다”	27

4. 용어의 통일	28
5.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용어의 사용	29
(1) 부정확한 용어	29
(2) 불필요한 용어의 사용	31
(3) 의미가 모호한 용어	32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35
1. 일본어투의 문장	35
(1) “~에 대하여”	35
(2) “~에 위반한”	36
(3) 이중조사	37
(4) “공중의 열람에 공여”	38
(5) “~에 의하여” 및 “~에 의한”	39
(6) “행함에 있어서” 또는 “행한”	39
2. 부자연스러운 문장구조	40
(1) 불필요한 문장의 사용	40
(2) 불필요한 관용구의 사용	42
(3) 명사구의 과도한 사용	43
(4)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	44
(5) 시제상 정확하지 않은 표현	45
(6) 문장구조의 통일성의 결여	45
(7) 정확성이 결여된 문장	46
(8) 기타 부자연스러운 문장	47
3. 간결성이 부족한 어구	47
(1)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2) 간결성이 부족한 어구들	48
4.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	49

5. 기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	50
(1) 조문의 표제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50
(2)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	51
(3)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구조	51
(4) “節”의 제목과 그 내용의 불일치	52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53
참고문헌	189

I. 서론

1.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 순화사업의 의의

법령은 인간이 사회공동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키고 준수하여야 할 생활규범이자 공동의 약속이다.¹⁾ 따라서 법령은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정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제시하면서 각 구성원의 사회적 활동, 그리고 경제적 행위를 규제하고 방향지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령이 담고 있는 내용이 명확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대부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문장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령에서 사용되어 온 법률용어들은 매우 전문적이며 또한 문장구조도 압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난해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률은 특별히 훈련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반 국민들로부터 유리된 특정 법률가들만의 세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²⁾ 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률용어나 문장들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서구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외에도, 우리의 법령들이 가진 독특한 역사적 배경들을 들 수 있다.³⁾ 첫째로 우리 법령들이 서구의 법령들의 계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일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서구의 법령들이 담고 있는 이념이나 규범들은 우리 고유의 법체계와는 낯선 것들이어서 결국 이들 용어들의 번역 수준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러한 법률들이 계수되던 시기인 근대국가의 형성기는 한문 시대였기 때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1) 김기열, 법령용어의 순화사업의 성과와 정책방향, 25면.

2) Kaufman은 “법률가들의 언어가 비난받는 것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명료하지 않고(직관할 수 없고) 따라서 대중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심현섭 역, 법과 언어, 서울대 법학 58-59호 합본, 1984, 203면(김문현, “헌법분야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5.17) 10면에서 재인용).

3) 김문현, 상계논문, 10면 참조.

1. 서론

문에, 이들 용어들이 어려운 한자의 형태를 빌어 표기되게 되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오늘날 국민의 70~80%를 차지하는 한글세대가 우리의 법률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우리 법률용어들이 가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증권거래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률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법령이 어려운 한자로 가득차 있는 현상으로 인해 소위 한글세대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조차 법률조문을 읽고 이해하기는커녕 법률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를 읽지도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우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문장구조를 순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국민친화적인 입법문화를 창조하고,⁴⁾ 나아가 법의 규제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비용”(regulatory cost) 또한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2. 최근의 발전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순화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우리 법령들이 우리말로 재탄생 하게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⁵⁾ 특히 이러한 노력은 2001년 12월 6일, 많은 법률용어 및 문장들이 순화된 민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적으로도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되었고, 이는 그 동안 추진되어온 다른 법률의 순화사업에도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국회사무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안) (2003. 9. 9 예규 제10호) 참조.

5) 법제처는 2003년에 “법령용어순화편람”을 발간하면서 법률용어의 순화사업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고, 법제연구원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법령에서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순화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하여 왔다.

또한 법제처는 민법 등 8개 법령을 제외하고 현행 1,000여개의 법령에서 한자를 없애고 한글로만 표기하게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어 법령순화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⁶⁾ 다만,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 올바른 뜻의 전달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입법을 직접 담당하는 국회도 법률용어의 순화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법률용어 법문표현 입법모델, 입안방안”을 국회 예규로 발표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법률안의 입안과 그 심사 등에서 법률용어, 조문 등의 구성과 표현 등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맞춤법에 따른 일반원칙을 정함으로써 입법업무의 통일성·체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⁷⁾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연구되고 제시된 순화안들은 일정한 검증 및 수렴작용을 거쳐 머지않아 상당부분 우리 법령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법령이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의 법률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6) 조선일보, “1천여개 법률 한글로 쓴다” (2004. 6. 14).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민법 등 8개 법률에 대해서도 한글 표기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한글화 작업에서 제외된 8개 법령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어음수표법, 사회보호법이다. 현재 이 계획은 진행 중에 있다.

7) 국회사무처, 전계기준(안) 참조.

II. 증권거래법의 특수성과 순화방안

1. 증권거래법의 특수성

증권거래법(이하 “거래법”)은 다른 법령들과는 달리 1945년 해방 이후인 1962년 1월 15일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하여 당시 일본 증권거래법을 모델로 하여 거래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가 상당할 정도로 우리 거래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일부 특정한 조문은 그대로 번역이 되어 우리 법에 들어온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증권거래법은 앞서 언급한 다른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거래법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가 다른 법령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거래법은 증권시장이라는 특수한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법상 법률용어와 문장구조의 순화를 논하기 이전에 거래법이 가진 특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거래법은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상장기업의 공시의무, 지배구조, 특례조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시장참가자의 행동들을 규제대상으로 함으로써, 규제의 영역이 상당히 다양하며 매우 전문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증권거래법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유한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전문용어들의 사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며, 이들 용어들이 다른 법령에서 순화대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증권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거래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증권시장의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비해 빈번하게 개정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최근에 순화사업을 통해서 발표된 제안 중 특별히 무리가 없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재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II. 증권거래법의 특수성과 순화방안

미미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들이 용어 및 문장구조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즉 일부 순화방안이 반영되어 혼재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거래법은 주로 행정부를 통해 개정안이 준비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개정된다. 즉 증권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준비나 추진과정이 다른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는 변화된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다보니 개정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구조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일한 내용이 조문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표기되는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조문의 경우에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입법적 실수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권거래법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면서 증권거래법에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순화방향에 대해서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증권거래법의 순화의 기본방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제처, 법제연구원, 국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 법령의 순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그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물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추진되어온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순화사업은 주로 다음의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한자의 사용과 관련한 순화사업이다.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를 한글로 고치고, 또한 시대성에 맞지 않은 어려운 한자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평이한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한자어를 한글로 고치는 수준에 만족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전달을 정확히 하면서도 평이하게, 그리고 우리말답게 자연스럽게 고치는 노력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또한 국민

정서나 시대성에 맞지 않는 용어나 권위적인 용어 또한 탈피하려는 노력도 시도되었다.⁸⁾

둘째, 서구 법령의 일본을 통한 계수로 인해 일본 법률용어와 일본어투의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법령에 산재해 있는데, 이들은 가능한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어투를 우리말로 순화함에 있어 문장을 평이하고 자연스럽게 고치려는 노력도 함께 시도되었다.

셋째,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문장구조를 한글맞춤법에 맞추면서 평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다.

거래법의 법률용어와 문장구조를 순화하는 이번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순화방법을 유지하되, 거래법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8) 김희진,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의 바람직한 순화방안” 법률용어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 (국회사무처, 2004. 4) 97-98면 참조.

Ⅲ.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1. 한자사용과 관련하여

(1) 과도한 한자 사용

거래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한자를 사용하고 또 표기하고 있다. 거래법이 다른 법률과는 달리 시기적으로 해방 이후에 제정되었지만, 다른 법률에서 과도하게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흐름을 그대로 따랐으며, 거래법도 일본 거래법을 계수 함으로써 일본 법률용어를 우리의 한자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거래법은 증권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의 빈도가 높은 편인데, 최근에 개정되는 조항의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그 동안 일련의 기관들에서 추진해 온 과도한 한자 사용의 배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개정된 부분에 국한된 현상이며, 거래법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과도하게 한자가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한자들을 적절한 우리말로 고칠 필요가 있다.⁹⁾

(2) 어려운 한자의 순화

거래법에 사용된 한자를 한글로 고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나 어려운 한자를 평이한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한자표기를 단순히 한글로 고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

9) 단순히 한자표기를 한글로 고치는 일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제처의 계획대로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거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들은 자동적으로 한글로 고쳐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바른 뜻의 전달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계획이어서 거래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Ⅲ.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려운 한자의 순화사업에서 제시된 용어 중 거래법에서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용어들과, 이에 추가하여 거래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중 순화가 필요한 용어들로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 供與하다 (제5조, 제49조) → 제공하다
- 相違한 (제12조) → 다른
- 立證하고 (제15조) → 증명하고
- 携帶하고 (제18조) → 지니고
- 公告하고 (제20조, 제24조의2) → 알리고
- 表明할 수 있다 (제25조) → 밝힐 수 있다
- 均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제2항) → 같아야 한다
- 懈怠 (제58조 제1항) → 게을리 하다
- 摘示하여 (제8조 제3항) → 표시하여
- 흡결 (제30조 제2항) → 흡
- 算入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제2항) → 포함하지 아니한다
- 喪失한다 (제33조) → 잃는다.
- 終了되거나 (제33조 제2항) → 끝나거나
- 供覽 (제12조) → 보여 줌, 보게 함, 일반에게 열람
- 預置된 (제44조의3) → 맡겨진
- 경과 후 (제47조) → 지난 후
- 최초로 (제54조의5 제5항) → 맨 처음
- 詐僞 (제55조 제1항) → 거짓¹⁰⁾
- 補正하지 (제55조 제1항 제4호) → 바로 잡지
- 知得한 (제59조 제2항) → 알게 된
- 局限하여야 한다 (제60조 제2항) → 이내 이어야 한다
- 貸與하여 (제63조) → 빌려주어
- 顯著한 (제186조 제2항) → 뚜렷한, 커다란
- 遵守하지 (제89조) → 지키지

10) 김동훈, “상사법분야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2. 5. 17) 82면.

- 到來하기 전에 (제99조 제2항) → 이르기 전에
- 조력 (제191조의16) → 도움
- 액면액 (제191조의3) → 권면액
- 其他 (제2조 제16항) → 그 밖의

그러나 이들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데 명사형으로 사용된 경우나 수동형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우리말로 풀어 쓸 때 지나치게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우리말 순화와 함께 한자어를 병용해서 사용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공고하다”의 경우 ‘널리 알리다’로 순화하였지만, 명사형이나 수동형으로 사용되어 순화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한자어인 ‘공고’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다음에서 ‘일상용어로 순화가 필요한 한자’ 부분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3) 일상용어로 순화가 필요한 한자

다른 법령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 중 일상용어로 순화가 필요한 한자들이 거래법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 순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것 중 거래법에서 수용이 적절한 것으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기인한 → 말미암은 / 개시 → 시작 / 산정 → 계산함 / 제출하다 → 내다 / 수인 → 여러 사람 / 변경하다 → 바꾸다 / 변론종결 → 변론 마감 / 의하여 → 따라 / 기재하다 → 적다 / 타인 → 남 / 상환하다 → 갚다, 서로 바꾸다 / 교부하다 → 내어주다 / 응하다 → 따르다 / 지체 없이 → 곧 바로, 바로 / 인한 → 말미암은 / 종결 → 마감 / 과다한 → 지나치게 많은 / 요하다 → 필요로 하다 / 환하다 → 부르다 / 의제 → 간주 / 부여하다 → 주다, 내어주다 / 면하다 → 벗어나다 / 기입하다 → 적어 넣다 / 차순위 → 다음 순위, 다음 차례 / 공제한 → 뺀 / 통지하다 → 알리다 / 개별로 → 따로 따로

그러나 위에서 순화가 가능한 용어로 판단되지만, 동일한 용어라도 동사형과 명사형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교부하다”를 “내어주다”

Ⅲ.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로 순화하는 경우 문장 어감에서도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게, “교부”를 “내주기”로 할 경우에는 문장 흐름상 어색하게 보인다. 이러한 용례로는 “인도”, “인수”, “기재” 등이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公示”가 있다. 공시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알림”으로 순화 의견이 제시된 용어이다. 다른 법령의 경우 이런 순화가 적절할 수도 있지만, 거래법의 경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증권시장에서 공시는 “공시주의 철학”으로 표현되어 거래법의 근본이념의 하나로 논해지는 바, 이를 단순히 풀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거래법에서 “價額”도 자주 등장한다. 이 용어는 “값”을 의미하는 한자어인데,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값”으로 순화하였다.¹¹⁾ 거래법이나 증권시장에서 이 용어의 용례는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바로 “가격”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거래법 제8조에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용어의 사용이 모호하다. 이 경우 ‘가격’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모집 또는 매출의 총액”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액”은 적극적으로 순화하지 않았다.

(4) 구시대적인 한문투의 용어

거래법에 사용된 한자 중 구시대적인 한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적절한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어는 다른 법령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법령용어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이들 용어들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당해(當該)”를 들 수 있다.

“당해”는 명사 위에 붙어서 꼭 그 사물에 관련됨을 표시하는 말¹²⁾로서 지시관형사이다. 이 “당해”는 거래법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많은 경우 생략을 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다. 순화의 기본 방향으로서 생략이 무방한 “당해”는 모두 생략하였다. 두 번째로 “당해”를 문맥에 따라서 “그”

11) 류창호, 전계서, 67면 참조.

12)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제3판) 민중서관 (1994).

또는 “해당”으로 순화하였다.¹³⁾ “당해”와 관련한 이러한 순화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¹⁴⁾

- “증권회사는 그 인수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인수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수대금의 대부분 기타 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 (제49조 제4항)
→ 앞의 “그”는 생략이 가능하며, 뒤의 “당해”는 “그”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때” (제20조 제1호)
→ 생략
-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을 것
 3.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 . . ” (제14조 제2항)
→ 모두 생략

2. 일본식 용어의 사용

(1) 순화가 필요한 일본식 용어

우리 법령에는 일본식 용어가 산재해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들 용어의 지적과 함께 개선안을 제시해왔다. 거래법의 경우도 다른 법률에 비해 일본식 용어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순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13) 이에 대해 “해당”은 “바로 들어맞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은 이외에도 “(관형사처럼 쓰이어) 무엇과 관련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므로 실질로 “당해”와 동일한 의미로 대체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희승 편저, 전게서 참조.

14) 김문오,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국립국어연구원(2000) 1면, 227면 참조.

Ⅲ.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첫째, 가처분·가압류(법 제173조 제2항, 제174조의9)는 일본식 용어로서 각각 “임시 처분” 및 “임시 압류”로 순화할 것을 법제처의 “법률용어 순화정비편람”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주로 집행절차와 관련된 절차법상 용어인데, 근간이 되는 이들 법령에서 먼저 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법에서 먼저 순화하는 것은 순서상 적절치 않다고 본다.¹⁵⁾ 따라서 이 용어의 순화는 민사소송법 등의 순화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둘째, “각 호의 1”이라는 표현이 증권거래법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는 일본 증권거래법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각호의 하나”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2) 순화가 부적절한 일본식 용어

일본식 용어이지만 증권시장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범주에 들어오는 용어들은 이미 국어사전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말로 그대로 사용해도 어색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은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한 분야, 또는 거래의 한 전형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용어들로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引受”가 있다. 이는 일본어를 우리말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지만, 이 용어는 “증권의 인수” 또는 “기업의 인수” 등 증권시장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빈번히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본식 용어라 해서 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본다.

둘째, “引渡”가 있다. 이 용어도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거래 및 결제 등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핵심적인 용어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¹⁶⁾

15) 같은 견해,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03. 8) 89면 참조.

16) 류창호, 전계서, 87면 참조.

셋째, “賣渡” 및 “買受”가 있다. 이 용어들은 거래법에서 수도 없이 등장하는 용어로서 이미 우리말이 되었다고 볼 정도로 어렵지 않은 용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용어도 순화 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넷째, “持分”이 있다. 이 지분의 순화안을 “몫”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는 적절한 순화일 수 있으나, 거래법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미 이 용어도 증권시장에서는 보편화되어 거부감이 가는 용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분” 대신에 “보유상태” 또는 “보유량”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분신고의무”를 “몫신고의무”로 순화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나 “보유상태신고의무” 또는 “보유량신고의무” 정도는 고려해 볼만하다고 본다.

3. 권위적인 용어의 순화

(1) “~한 者” 또는 “人”의 순화

우리 법령에 흔하게 사용되지만 권위적이고 비민주적 용어로 지목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한 자”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민법, 형법 등 거의 모든 법령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거래법도 예외가 아니다.

이 표현은 중립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를 “~한 사람”으로 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보인다. 또한 “人”도 “~하는 사람”으로 순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2002년 1월 26일에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이 순화안을 받아들여 “者”를 모두 “사람”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거래법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첫째, “者”의 경우 거래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받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사람”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인”을 구분해 낼 필요가 있다. “人”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人”이나 “者”를 순화하는 경우 모두 “~하는 사람”으로 순화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순화하면 한 음절이 세 음절로 늘어나면서 문장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간결성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한 순화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III.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둘째, “者”가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거래법에서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을 들 수 있는데, (i)사외이사의 자격을 정의하고 있는 제2조 제19항, (ii)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33조, (iii)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54조의3, (iv)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54조의5, (v)감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191조의12 제1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者”가 명백히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와 법인을 함께 의미하는 용어들이 열거적으로 사용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자연인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사람”으로 순화하고,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者”를 그대로 두는 것은 문장 체제상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다고 본다.

셋째, “者”가 법인을 의미하거나 사람과 법인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i)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제11조 제4항), (ii)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제14조 제1항), (iii)인수 계약을 체결한 자(제14조 제1항), (iv) 교부한 자(제14조 제1항), (v) 배상책임을 질 자(제15조 제2항), (vi)유상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제21조 제1항), (vii)매도의 청약을 한 자(제24조의2 제3항)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순화할 경우 문장형태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배상 책임을 질 법인 또는 사람” 형태가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人” 또는 “者”가 복합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¹⁷⁾ 이에 해당되는 예로서는 발행인(제3조), 인수인(제2조 제7항), 매도인(제10조 제1항), 신고자(제14조 제1항), 신고인(제19조), 신청인(제31조 제1항), 감정인(제14조 제1항), 발기인(제14조 제1항), 관계인(제19조 제1항), 청구권자(제15조 제1항), 특별관계자(제21조 제1항)¹⁸⁾, 특수관계인(제36조), 불특정다수인(제21조 제3항), 공매매수사무취급자(제21조 제5항), 공개매수자(제21조의2 제2항), 주요출자자(제32조 제1항), 준법감시인(제54조의4), 매매거래자(제85조), 위탁자(제100조 제1항), 예탁자(제174조) 등이 있다.

17) 같은 견해, 류창호, 전거서, 96면 참조.

18) 특수관계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으나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순화안을 내놓은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법이나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거래법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가 매우 많아 일일이 그러한 경우를 분석하여 “사람”과 “者”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者”가 훈이 높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지만,¹⁹⁾ 대부분의 법령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거래법의 경우 다른 법률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한다.²⁰⁾

(2) “본 조” 또는 “본 항”의 순화

本은 관형사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칭하는 “이”를 뜻하는 말인데, 이는 권위주의적인 표현으로서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²¹⁾에서도 “본 법”은 “이 법”으로, “본 장”은 “이 장”으로 순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법은 과거 “본 법”으로 사용하던 것을 본문 조항에서는 모두 “이 법”으로 바꾸었다.²²⁾

(3) “處하다” 및 “命하다”

이들 용어들도 권위주의적인 용어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률용어순화정비편람”에서는 “명하다”는 “하게 한다”, “명령하다”, “시키다”로 병행사용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處하다”는 “과하다”, “매기다 또는 물리다”로 병행사용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거래법의 경우 “處한다”는 제11장 벌칙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제207조의2 제1항)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다”, “벌금을 매기다” 또는 “벌금을 물린다” 모두가 가능할 것을 보인다. 징역의 경우에도 ‘부과하다’라는 표현이 무리가 없으며, 이렇

19) 김동욱,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46면 참조.

20) 같은 견해, 이훈동, 이주일, 행정관련법령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4. 11) 25면 참조.

21) 김문오, 전개논문, 22면 참조.

22) 부칙을 보면 1963년 개정시부터 “이 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본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Ⅲ.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경우 벌금과 징역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부과하다’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處하다”의 순화안으로 “부과하다”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명하다”의 경우 거래법에서의 사용례를 보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55조 제2항)의 경우, “명령할 수 있다” 또는 “시킬 수 있다”로 순화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명령하다”로 순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키다”로 순화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4. 용어의 통일

거래법 제186조 제1항에서 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대칭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례는 제188조의2 제1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문 이외에서는 거의 모두 주권상장법인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제186조의2 제1항, 제188조 제1항·제2항·제6항, 특히 상장법인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189조 이하에서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법 제188조의4는 제목에서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로 표기하였고,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각 조항에서 시세조종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188조의4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188조의5에서는 제목을 “시세조작의 배상책임”으로 표기하고 있다. 시세조종이 보편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시세조작을 시세조종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 제53조 제3항에서 “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시 제200조의2 제6항에서 “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제206조의3 제1항에서는 “관계자”로 표기하고 있다. 이 둘 사이의 특별한 개념적 차이가 없다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²³⁾ 본 연구에서는 ‘관계인’으로 통일하였다.

23) 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자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용어의 사용

(1) 부정확한 용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벗어난 용어의 사용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다음의 것들이 있다.

- 제191조의11 (감사의 선임·해임등)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 - - 의결 하여야 한다.

→ 결의

일반적으로 “의결”한다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으며 “결의”가 맞다. 법 제191조의15에서는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191조의18 제3항에서는 다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²⁴⁾

- 제191조의11 (감사의 선임·해임등) ①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 - -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 - -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 - -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아니라 “주식수”의 합계가 맞다. 이외에도 이 조문에서는 “주식에 관하여는”은 “주식만큼”으로, “해임에 있어서는”은 “해임하는 경우”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지 못하게 사용한 경우들도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법 제2조 제8항 제8호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주식”과 “주권”의 사용례를 혼동하여 정확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다.

- 제2조 (정의) ⑧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 - - -.

1. - 7. 생략

-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 - -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대상으로 다음의 - - -.

24) 제191조의18 제3항은 최근인 2004.1.29에 개정된 조항인데도 용어의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

III.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여기서 주식은 주로 지분의 개념으로 이용되며, 주권은 거래대상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아래의 조문도 마찬가지이다.

- 제52조의2 (전자정보처리장치등) ③- - - 증권회사는 매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인 경우 각각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

거래법 제181조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맥상 “인가”가 맞는 것으로 본다.

- 제181조 (기타 증권관계기관의 허가·감독) ①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와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유가증권투자자·주권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

②제53조·제151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증권관계단체에 관하여 준용한다. → 인가

또한 기간을 나타내는 용어 중 “月”을 나타내는 용어가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간 개념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²⁵⁾ 그리고 아래 제186조의3에서처럼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45일내에”는 “45일 이내에”로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186조의2 (사업보고서등의 제출)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 - - 종료후 6月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개월 이내에

- 제186조의3 (반기보고서등의 제출) 제1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5) 법 제47조, 제54조의2 제2항, 제55조 제1항 2호, 3호 및 제4항, 제186조의2 제5항, 제186조의3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월간의 사업보고서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 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년도 시작일부터 6개월 동안의 사업보고서와 사업년도 시작일부터 3개월 및 9개월 동안의 사업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이 지난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에서 “문서로 통보”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순화안에서 “서면으로 통보”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서면은 ‘글씨를 쓴 지면’을 의미하며, 문서는 ‘글로써 일정한 사상을 적어 표시한 것의 총칭’을 의미한다.²⁶⁾ 따라서 “문서”나 “서면”은 동일한 한자어로 특별히 순화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향후 전자문서의 보편화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전자매체를 통한 통보’ 보다는 ‘전자문서로 통보’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 ‘문서’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제31조 (허가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3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文書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허가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불필요한 용어의 사용

다른 법령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거래법의 경우 불필요한 상황에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문맥상으로도 불필요하다.

26) 이희승 편저, 전계서 참조.

III.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 제23조의2 (정정신고·공고 등) ①공개매수자는 - - - 한다.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 - - - 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생략
- 제61조 (부당조사의 거부)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위반된 요구·질문 또는 조사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생략
- 제176조의2 (유가증권의 관리)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된 경우로서 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 - - - 전부 폐기될 때까지 이를 준용한다. → 생략
- 제178조 (임원·감독 등) 제59조 내지 제61조 - - - 제12조의 규정은 예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생략
- 외국법인 등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74조의11) → 생략

(3) 의미가 모호한 용어

거래법 제2조 제13항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코스닥상장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호에서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처럼 풀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등록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법인과 구분이 용이하였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도 상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약간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적절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206조의3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권을 기술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관계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막연하다.

5.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용어의 사용

- 제206조의3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그 위반 사항 등에 관계된 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게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1. 일본어투의 문장

거래법에는 다른 법령의 경우 못지 않게 일본어투의 문장들이 산재해 있다. 이는 다른 법령의 경우에서 지적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거래법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일본어투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1) “~에 대하여”

“~에 대하여”는 일본어인 “對シテ” 또는 “付”의 번역으로서 우리 거래법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 거래법이 일본거래법의 계수 수준을 넘어 번역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에게”로 순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의미전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제2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기타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시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발행인에게

- 제41조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증권회사는 지점 기타의 영업소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해자에게

- 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그 고객에 대하여 당해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의하는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고객에게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2) “~에 위반한”

일본어인 “違反する”나 “反する”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도 거래법 전체에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위반한”은 “~을 위반한”으로 순화하는 것이 문법에도 맞으며 자연스럽다고 본다.

- 제206조의3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 ⑦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위반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 규정을

위와 같은 용례는 특히 제11장 벌칙 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현상은 최근에 개정된 조항의 경우는 대부분 “규정에”를 “규정을”로 순화하였다는 사실이다. 법률용어의 순화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은 개정될 때마다 진행되고 있는 순화안을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동일한 조문 안에 “규정에”와 “규정을”이 동시에 혼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 제209조 (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주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 제1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생략)
 6.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003.10.4 개정)
 7. 제54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생략)

9. 제188조 제1항, - - 또는 제2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이중조사

한 개 이상의 다른 조사 뒤에 “~의”가 쓰이는 형은 일본어투로서 “~에 있어서의”, “~로서의”, “~로부터의”, “~에의”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의”는 대부분 불필요한 조사로 생략이 가능하다고 본다. 거래법의 경우 이러한 이중조사의 사용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몇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o 제206조의3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 - - 할 수 있다.

1.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 “사업장 출입”

이러한 이중조사를 사용하여 명사형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법조문의 제목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제85조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이중조사 “의”를 사용한 것은 명사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명사형 구성을 위한 이중조사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

o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에서의 매매거래 [→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4) “공중의 열람에 공여”

이 표현은 거래법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장인데, 이는 일본 증권거래법의 문장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일본 거래법에서 이러한 문장구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²⁷⁾ 이 문장구조는 일본어투의 문장구조인 점에서 순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말로도 매우 어색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장구조는 제5조에서 처음 등장한다.

- 제5조 (등록서류의 공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공여할 수 있다.

여기서 “공중의 열람에 공여할 수 있다”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법 제24조에서 이미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순화를 시도하였고(2004.1.29 개정), “열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법제처의 병행사용 권고안²⁸⁾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로 순화한다.²⁹⁾

- 제18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이하 “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 (사업설명서의 작성·공람)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 대표적으로 일본 증권거래법 제25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28) 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하), 261면 (2003).

29)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순화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보다 더 간결하게 문장을 줄이는 의미도 함께 있다.

(5) “~에 의하여” 및 “~에 의한”

이 표현도 일본어인 “による”나 “依り”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이 표현은 우리 법령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본형식이라 할 정도로 정착되어 있는데, 거래법에서도 수도 없이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에 따라” 또는 “~에 따른”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로 더욱 간결하게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불명확한 표현인 “~바에”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 제24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사용) ①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
→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 제24조의2 (공개매수의 철회등) ①공개매수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를 할 수 있게 된 - - - .
→ 규정에 따라
- 제46조 (매매거래등의 통지)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에 따라/ 주문에 따른

(6) “행함에 있어서” 또는 “행한”

여기서 “行”은 일본어에서 온 것으로 이를 생략해도 의미전달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제56조 (잔무의 종결) 증권회사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당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 증권회사가 한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 제58조 (임원의 책임) ①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사·감사 및 최대주주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하면서

2. 부자연스러운 문장구조

문법적으로나 문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측면에서 볼 때 전혀 불필요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일본어투의 문장구조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1) 불필요한 문장의 사용

의미전달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용어들이 불필요하게 사용된 경우들이 매우 많다.

- 제42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 급여액의 일정률을

-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

- 제13조 (정당한 사업설명서의 사용) ①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

→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제15조 (손해배상액)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

cf.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을 더 순화한다면 “변론을 마감할 때의 시장가격”

- 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그 고객에 대하여 당해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의하는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거래의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증권회사가 해당 매매의 상대방이 되는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는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54조의6 (감사위원회) 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되지 않는다

⑥상법 제40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준용된다

- 제27조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필요한 경우에는

이 경우도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하는’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간결하게 줄일 수 있다.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2) 불필요한 관용구의 사용

관용어인 “이” 또는 “그”가 거래법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분별하여 생략할 필요가 있다.

- 제53조 (검사) 증권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그의 생략
- 제54조의2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②증권회사는 매 분기의 말일 (이하 이 조에서는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규제비율을 산정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준일 이후 4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간 본점과 지점 기타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앞의 기준일은 “그”를 사용하고, 뒤의 기준일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앞의 “그”를 생략해도 의미전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제57조 (영업의 정지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 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그 고객에 대하여 당해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의하는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생략

부적절한 관용구의 사용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 받고 있는 명사를 다시 표기하는 것이 의미전달상 명확하다고 본다.

- 제8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당해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

당하는 이사는 당해 신고서의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 그 신고서/“이에”는 생략

(3) 명사구의 과도한 사용

명사구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상은 다른 법령들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거래법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도 일본 어투의 문장구조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의 거래법 제1조의 문장구조도 일본 증권거래법 제1조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 제1조 (목적) 이 법은 - - -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바지하는 것을
- 증권거래법에서 사용되는 중요 용어 중 18개의 사항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에서 18번 모두 “- 라 함은”이라는 문장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란”, “-이란” 또는 “-은”, “-는”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유가증권이란” 또는 “유가증권은”
- 제15조 (손해배상액)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취득할 때
- 제35조 (인가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결정할 때에는
- 제41조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증권회사는 지점 기타의 영업소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거래를 하면서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 제206조의3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서는 “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 - - ”라고 하고 표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위의 제4항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함에 있어”로 표기하고 있어 같은 조문 안에서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경우도 명사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풀어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조문들의 예이다.

- 제2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 - - 유가증권발행인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 그 밖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제41조) → 그 밖의 거래를 하면서
-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제54조의5 제3항)
→ 추천하는 경우에는
-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제85조 제1항)
→ 제1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 주권상장법인이 신고 또는 공시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제89조 제1항 제2호)
→ 신고 또는 공시를 할 때

(4)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

제96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서”는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써”가 맞다.

(5) 시제상 정확하지 않은 표현

과거에 발생한 상황을 정확하게 시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다음의 용례가 있다. 이러한 용례는 거래법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다음의 경우처럼 바꿀 필요가 있다.

- 제31조 (허가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3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수리하였을 때에는
- 제33조 (임원의 자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해당하게 된 때에는
- 제36조 (보고사항) 증권회사는 - - -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신설한 때 또는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 바꾸었거나/ 폐지한 경우

(6) 문장구조의 통일성의 결여

동일한 표현이 조문에 따라서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들은 순화하여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사례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제53조 (검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00조의2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이 경우 제200조의2 제6항은 1997년 1월에 개정된 조항으로서, “휴대”를 “지니고”로, 그리고 “제시하여야”를 “내보여야”로 순화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령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을 표현하는 문장들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 제194조 (장외시장) 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외에서의 매매 거래 및 - -

이들도 자연스러운 제21조 제1항의 표현인 “밖에서”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7) 정확성이 결여된 문장

법령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제8조 제4항, 제14조 제2항, 제206조의11 제3항에서 “중요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논쟁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논쟁이다. 따라서 “중요한”의 위치를 조정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도 수식할 수 있도록 하여 해석상 논쟁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 제8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④- - - -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 - - -

이는 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한 자”로 표기하고 있어, 이 문장에서 “중요한”은 고의로 누락한 행위와 허위로 기재 또는 표기한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법의 전체적 조화를 위해서도, 제8조의 취지에도 맞게 규제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의”를 뒤에 추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신고 당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라는 표현이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자를 규정하는 부분으로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신고할 때”로 순화하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 제14조 ①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
→ 신고할 때

(8) 기타 부자연스러운 문장

“정하는 바”라는 표현이 일본어식 문장구조이기도 하지만, 불명확한 표현으로서 이 문장 전체를 긍정문 형태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의결권을 - - - .
→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에 따라서만 상장주식 또는 - - - -

3. 간결성이 부족한 어구

일본어투의 잔재인 경우도 있고, 우리말의 고어체 형식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장의 의미전달에 문제가 없는 한 어구나 문장을 간결하게 순화할 필요가 있다.

(1)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장구조는 고어체로서 현재는 법령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어구로 보인다. 이 표현은 모든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 문장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하지 아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니하다”는 요즘 언어감각과 달리 너무 길다고 보이며, “그렇지 않다” 또는 “그럴 필요가 없다”처럼 간결하게 쓰는 것이 낫다고 본다.³⁰⁾

-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권에 한한다) 및 제5호의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발행인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가증권발행인은 그렇지 않다.

→ 그러나 이 문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화한다면 “유가증권발행인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의 순화방향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결과들 사이에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많은 용어와 문장구조를 순화시킨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도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로 순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³¹⁾ 물론 문맥에 따라서 앞 문장을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순화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럴 필요가 없다
- 아니하는 → 앓는

(2) 간결성이 부족한 어구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외에도 간결성이 부족한 표현들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있도록
-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 행사하지 않으면

30) 김문오, 전계논문, 180면 참조.

31) 맹수석, “보험·해상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상사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04. 6. 24) 209, 230, 231면 참조.

- 그 절차에 관하여는 → 그 절차는
- ~에 대하여는 → ~에게는
- 아니된다 → 안 된다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할 경우에는

또한 “~하여야 한다”에서 ‘하여야’도 ‘해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개정 민사소송법의 경우 ‘하여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민법의 순화방안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커다란 저항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본고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간결한 형태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

법조문은 그 의미가 정확해지고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문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거래법의 조문들이 일반적으로 긴 편은 아니지만, 일부 의미전달에 오해가 발생할 정도로 긴 문장들이 다수 있다. 이들은 문장을 분리하거나, 조문을 분리하는 것이 의미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대표적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9조 제1항을 들 수 있다.³²⁾

- 제19조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 ①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코스닥시장 또는 선물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종목 또는 선물거래의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거나 거래소의 업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

32) 이 조항은 증권거래법 제73조의2 제1항을 근간으로 하고 제2항의 업무의 일부를 통합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조항이다. 과거에도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를 법조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조문으로 알려져 있다.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에 대하여 그 거래와 관련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 이 문장은 둘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주식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조문은 보고의무와 변동보고의무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변동보고의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 혼란의 우려도 있는데, 이를 2개의 문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기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

(1) 조문의 표제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조문의 표제는 조문 내용을 압축하는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일부 조문의 경우 조문 내용과 표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 제101조 (위약매매의 금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반드시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증권회사가 위탁자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자신이 그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조항은 법이 증권회사에게 강제하는

것이지, 증권회사와 투자자간에 맺은 계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조의 표제로서 “위약매매의 금지”는 적절하지 않으며,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로 평이하게 순화하는 것이 조문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2)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

거래법에는 문법적으로 적절하거나 문장으로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 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그 고객에 대하여 당해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의하는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지 아니면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따르는지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3)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구조

유가증권의 발행신고를 규제하는 제8조는 발행시장 규제의 핵심 조항인데,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순화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 볼 수 있다.

- 제8조 (모집 또는 매출 신고) 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계산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해당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가 수리되어야만 해당 유가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IV.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기타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구조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 제8조 (모집 또는 매출 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발행인의 - - -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방법을 따라야 한다.

○ 제15조 (손해배상액) ①(생략)

1.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 소송이 제기되어 또는 소가 제기되어

○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⑤“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함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 - - 말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 증권회사이어야 한다.

○ 제23조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등) ②공개매수자는 - - -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주식 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 공개매수가 아니면

(4) “節”의 제목과 그 내용의 불일치

제112조부터 제117조까지 “제4절 회계와 감독”이라는 제목 아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조문들의 내용 중 어디에도 회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제4절의 제목을 “제4절 감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1章 總則</p>	<p>제1장 총칙</p>
<p>第1條 (目的) 이 법은 有價證券의 발행과 賣買 기타의 去來를 公正하게 하여 有價證券의 流通을 원활히 하고 投資者를 保護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有價證券”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債證券 2. 地方債證券 3. 特別한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한 債券 4. 社債券 5. 特別한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한 出資證券 6. 株券 또는 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 7. 外國法人등이 발행한 證券 또는 證書로서 第1號 내지 第6號의 證券이나 證書의 性質을 具備한 것 8. 外國法人등이 발행한 證券 또는 證書를 기초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발행한 有價證券預託證書 9. 第1號 내지 第8號의 證券 또는 證書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p>②第1項 各號의 有價證券에 표시되어야 할 權利는 그 有價證券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有價證券으로 본다.</p> <p>③이 법에서 “有價證券의 모집”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規로 발행되는 有價證券의 取得의 請約을 勸誘함을 말한다.</p>	<p>제1조 (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u>그 밖의</u>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u>이바지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u>따라</u>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u>따라</u>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u>가진 것</u>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p>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u>않은</u> 경우에도 <u>해당</u> 유가증권으로 본다.</p> <p>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에 <u>따라</u>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④이 法에서 “有價證券의 賣出”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有價證券의 賣渡의 請約을 하거나 買受의 請約을 勸誘함을 말한다.</p> <p>⑤이 法에서 “發行人”이라 함은 有價證券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第1項第8號의 有價證券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證券 또는 證書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p> <p>⑥이 法에서 “引受”라 함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有價證券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賣出할 目的으로 그 有價證券의 發行人으로부터 그 全部 또는 一部를 取得하는 것 2. 有價證券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取得하는 者가 없는 때에 그 殘餘分을 取得하는 契約을 하는 것 3. 手數料를 받고 發行人을 위하여 當해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을 周旋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間接으로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을 分擔하는 것 <p>⑦이 法에서 “引受人”이라 함은 第6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者를 말한다.</p> <p>⑧이 法에서 “證券業”이라 함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營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有價證券의 賣買 2. 有價證券의 委託賣買 3. 有價證券賣買의 중개 또는 대리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p>④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란 大統領령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p> <p>⑤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p> <p>⑥이 법에서 “인수”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p>⑦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p> <p>⑧이 법에서 “증권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營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행	순화안
<p>4. 有價證券市場·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市場으로서 外國에 있는 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의 仲介·周旋 또는 代理</p> <p>5. 有價證券의 引受</p> <p>6. 有價證券의 賣出</p> <p>7.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의 周旋</p> <p>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u>상장주식</u> 또는 <u>코스닥상장주식</u>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有價證券賣買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有價證券의 매매</p> <p>가.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p> <p>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p> <p>⑨이 법에서 “證券會社”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證券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p> <p>⑩및 ⑪삭 제</p> <p>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p> <p>⑬이 법에서 “上場法人”·“非上場法人”·“株券上場法人” 및 “株券非上場法人”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號의 者를 말한다.</p> <p>1. 上場法人 :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된 有價證券의 發行人</p>	<p>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u>시장에서</u>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p> <p>5. 유가증권의 인수</p> <p>6. 유가증권의 매출</p> <p>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p> <p>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u>따라</u>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u>상장주권</u> 또는 <u>코스닥상장주권</u>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u>어느 하나의</u>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u>그</u> 중개업무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p> <p>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주식의 최종시세가격</p> <p>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에 <u>따라</u> 정해지는 가격</p> <p>⑨이 법에서 “증권회사”<u>란</u> 이 법에 <u>따라</u>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⑩및 ⑪삭 제</p> <p>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u>이란</u>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u>따라</u>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u>같은</u>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p> <p>⑬이 법에서 “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u>이란</u>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p> <p>1.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2. 非上場法人 :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지 <u>아니한</u> 有價證券의 發行人</p> <p>3. 株券上場法人 :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된 株券을 발행한 法人</p> <p>4. 株券非上場法人 :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지 <u>아니한</u> 株券을 발행한 法人</p> <p>⑭이 법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u>의한</u> 코스닥시장을 말한다.</p> <p>⑮이 법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p> <p><16>이 法에서 “外國法人등”이라 함은 外國政府, 外國地方自治團體, 外國公共機關, 外國法令에 <u>의하여</u> 設立된 外國企業 및 條約에 <u>의하여</u> 設立된 國際金融機構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p> <p><17>이 法에서 “證券關係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p> <p>1. 이 法에 <u>의하여</u> 設立되거나 營業 또는 業務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p> <p>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u>의한</u>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p> <p>3. 삭제</p> <p><18>이 법에서 “우리社株組合”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u>의하여</u>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u>당해</u> 法人의 株式을 취득·관리함으로써 從業員의 福祉增進과 經濟的 地位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組織한 團體를 말한다.</p>	<p>2.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u>않은</u> 유가증권의 발행인</p> <p>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p> <p>4.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u>않은</u> 주권을 발행한 법인</p> <p>⑭이 법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코스닥시장을 말한다.</p> <p>⑮이 법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p> <p><16>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u>따라</u>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u>따라</u>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u>그 밖에</u>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p> <p><17>이 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p> <p>1. 이 법에 <u>따라</u>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p> <p>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u>따른</u>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p> <p>3. 삭제</p> <p><18>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u>따라</u>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u>해당</u> 법인의 株式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組織한 단체를 말한다.</p>

현행	순화안
<p><19>이 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p> <p>第 2 條의2 削除 [2002·12·29 선물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03호 부칙에 의한 삭제]</p> <p>第 2 章 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p> <p>第 3 條 (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 有價證券 발행의 公正과 企業의 公示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第4號(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券에 한한다) 및 第5號의 有價證券 <u>기타</u>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發行人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고자 하는 法人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u>경우의 당해</u> 법인 4. 삭제 5. 有價證券을 모집하고자 하는 設立중인 法人 6. 제189조의4의 규정에 <u>의하여</u>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p><19>이 법에서 “사외이사”<u>란</u> 회사의 <u>일상적인 업무에</u> 종사하지 <u>않는</u> 이사로써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u>따라</u>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p> <p>제 2 조의2 삭제 [2002·12·29 선물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03호 부칙에 의한 삭제]</p> <p>제 2 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p> <p>제 3 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u>기업내용의</u>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제1호<u>부터 제3호까지·제4호</u>(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권에 한한다) 및 제5호의 유가증권 <u>그 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발행인은 <u>등록할 필요가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 4. 삭제 5.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6. 제189조의4의 규정에 <u>따라</u>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 4 條 (登録書類) 第3條의 規定에 <u>의하여</u> 登録을 하는 발행인은 會社의 概況, 財産狀況등 金融監督委員會가 定하는 書類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書類중 重要한 內容이 變更된 <u>때에도</u> 또한 같다.</p> <p>第 5 條 (登録書類의 公示)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條의 規定에 <u>의하여</u> 제출된 書類를 <u>公衆의 閱覽에 供與</u>할 수 있다.</p> <p>第 6 條 (登録法人의 管理)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條의 規定에 <u>의하여</u> 登録된 法人(이하 “登録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資金調達·財務構造의 改善등 건전한 經營管理를 위한 登録法人의 管理基準을 定하고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p>	<p>제 4 조 (등록서류) 제3조의 규정에 <u>따라</u> 등록을 하는 발행인은 회사 의 개황, 재산상황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u>경우에도</u> 또한 같다.</p> <p>제 5 조 (등록서류의 公示)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u>따라</u> 제출된 서류를 <u>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u></p> <p>제 6 조 (등록법인의 관리)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u>따라</u>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조달·채무구조의 개선 등 건전한 경영관리를 위한 등록법인의 관리기준을 定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p>第 3 章 有價證券申告書</p>	<p>제 3 장 유가증권신고서</p>
<p>第 7 條 (適用範圍) 이 章의 規定은 第2條第1項第1號 <u>내지</u> 제3호(다른 법령에서 제3호의 규정에 <u>의한</u> 債券으로 보는 債券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定하는 債券을 제외한다)·第5號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有價證券에 <u>관하여</u>는 適用하지 <u>아니한다.</u></p>	<p>제 7 조 (적용범위) 이 章의 規정은 제2조제1항제1호<u>부터</u> 제3호(다른 법령에서 제3호의 규정에 <u>다른</u> 채권으로 보는 채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定하는 채권을 제외한다)<u>까지</u>·제5호 및 大統領령이 定하는 유가증권 <u>에는</u> 적용하지 <u>않는다.</u></p>
<p>第 8 條 (모집 또는 賣出의 申告) ①재정경제부령이 定하는 <u>바에</u> 따라 산정된 有價證券의 <u>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u> 財政經濟部令이 定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은 발행인이 당해 有價證券에 관하여 申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 受理되지 <u>아니하면</u> 이를 할 수 <u>없다.</u> 다만, 財政經濟部令이</p>	<p>제 8 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재정경제부령에 <u>따라</u> 계산된 유가증권의 <u>모집 또는 매출 총액이</u> 재정경제부령이 定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u>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해당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가 수리되어야만 해당 유가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u> 다만,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p>

현행	순화안
<p>정하는 <u>바에</u>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賣出할 예정인 有價證券에 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一括하여 申告書(이하 “一括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하여 受理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모집 또는 賣出하는 당해 有價證券에 관한 申告書를 따로 제출하지 <u>아니할</u>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申告書에는 發行人의 미래의 財務狀態나 營業實績 등에 대한 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各號의 사항(이하 “豫測情報”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豫測情報의 기재 또는 표시는 第14條第2項 第1號·第2號 및 第4號의 방법에 <u>의하여</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賣出規模·이익규모 등 發行人의 營業實績 <u>기타</u> 경영성과에 대한 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 2. 資本金規模·資金흐름 등 發行人의 財務狀態에 대한 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計劃의 수립으로 인한 發行人의 경영성과 또는 財務狀態의 변동 및 <u>一定時點에서의</u> 目標水準에 관한 사항 4. <u>기타</u> 發行人의 미래에 대한 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p>③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申告書를 제출하는 경우 申告書에 <u>기재하여야</u> 할 사항이나 그 添附書類에 이미 제출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u>적시하여</u>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書面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u>그</u>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u>않을</u>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신고서에는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4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u>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따라야</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규모·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u>그 밖의</u>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u>일정한 시점에서의</u>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u>그 밖에</u>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③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u>적어야</u>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u>경우에는</u> 그 부분을 <u>표시하여</u>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p>

현행	순화안
<p>④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당시 당해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u>누락이나 허위의 기재</u> 또는 표시가 있지 <u>아니하다</u>는 사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u>이에</u>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p> <p>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기재사항과 그 添附書類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p>第9條 (申告의 效力發生時期等) ①第8條第1項의 規定에 <u>따른</u> 申告(이하 “有價證券申告”라 한다)는 그 申告書(이하 “有價證券申告書”라 한다)를 金融監督委員會가 受理한 날로부터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期間이 경과한 날에 그 效力이 발생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效力의 발생은 그 申告書의 記載事項이 眞實 또는 正確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政府에서 그 有價證券의 價値를 保證 또는 承認하는 效力을 가지지 <u>아니한다</u>.</p> <p>③有價證券의 발행인이 有價證券申告書を 撤回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당해</u> 申告의 效力이 발생하기 전에 撤回申告書を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할 때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u>해당</u>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u>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u> 또는 표시가 있지 <u>않다</u>는 사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p> <p>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u>따른</u>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신고(이하 “유가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신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수리한 <u>날부터</u>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u>않는다</u>.</p> <p>③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해당</u>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第10條 (去來의 制限) ①第9條의 規定에 <u>의한</u> 申告의 效力이 발생하지 <u>아니한</u> 有價證券의 取得 또는 買收의 請約이 있는 경우에 <u>당해</u> 有價證券의 發行人·賣渡人과 그 代理人은 그 請約의 承諾을 하지 못한다.</p> <p>②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u>의한</u> 一括申告書를 제출한 발행인은 <u>당해</u>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시마다 大統領令이 <u>정하는 바에</u> 따라 一括申告追加書類를 제출하지 <u>아니하면</u> <u>당해</u> 有價證券에 <u>관한</u> 취득 또는 買受의 請約에 대한 승낙을 하지 못한다.</p>	<p>제10조 (거래의 제한) ①제9조의 規定에 <u>다른</u> 신고의 效力이 발생하지 <u>않은</u>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p> <p>②제8조제1항 단서의 規定에 <u>다른</u>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은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시마다 대통령령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지 <u>않으면</u> <u>그</u>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지 못한다.</p>
<p>第11條 (訂正申告書) ①金融監督委員會는 有價證券申告書에 形式上의 不備가 있거나 그 申告書에 記載할 중요한 事項의 記載가 不充分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理由를 제시하고 訂正申告書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命令이 있는 때에는 <u>당해</u> 有價證券申告書는 그 命令을 한 날로부터 受理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③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한 者는 당해 申告에 <u>의한</u> 請約日 開始전에 당해 有價證券申告書의 기재사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訂正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訂正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u>의한</u> 一括申告書를 제출한 者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전에 訂正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訂正할 수 없다.</p>	<p>제11조 (정정신고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신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規定에 <u>다른</u> 명령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명령을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p> <p>③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신고에 다른 청약일 시작 전에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8조제1항 단서의 規定에 <u>다른</u>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항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발행예정기간 종료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정정할 수 없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u>의하여</u> 訂正申告書가 제출된 때에는 그 訂正申告書가 受理된 날에 <u>당해</u> 有價證券申告書가 受理된 것으로 본다.</p> <p>第12條 (事業說明書의 作成·供覽) ① 第8條의 規定에 <u>의하여</u> 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때에는 그 發行人의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說明書를 作成하여 財政經濟部令이 定하는 場所에 備置하고 一般人에게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事業說明書에는 有價證券申告書(第10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一括申告追加書類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 記載된 內容과 相違한 內容을 표시하거나 그 記載事項을 漏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企業經營등 秘密維持와 投資者 保護와의 衡平등을 고려하여 一般人의 閱覽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13條 (정당한 事業說明書의 사용) ①누구든지 有價證券申告의 효력이 발생한 有價證券에 관하여 그 有價證券을 취득하고자 하는 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적합한 事業說明書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有價證券을 취득하게 하거나 賣渡하지 못한다. 이 경우 事業說明書가 第194條의2의 規定에 依한 電子文書의 방법에 依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要件을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p>	<p>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u>따라</u>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u>경우</u>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u>해당</u>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p> <p>제12조 (사업설명서의 작성·공람) ① 제8조의 규정에 <u>따라</u>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에는 <u>발행인</u>은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u>열람할 수 있도록</u>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 신고서(제10조제2항의 규정에 <u>다른</u>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u>적힌</u> 내용과 <u>다른</u>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u>빠뜨려서는 안 된다</u>. 다만, 기업 경영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u>알 필요</u>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u>그렇지 않다</u>.</p> <p>제13조 (정당한 사업설명서의 사용) ①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u>있을</u>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u>뒤가</u>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업설명서가 제194조의2의 규정에 <u>다른</u> 전자문서의 <u>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u> 다음 각호의 요건을 <u>충족할</u>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본다.</p>

현행	순화안
<p>1. 電子文書에 의하여 事業說明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는 것에 대하여 電子文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을 者(이하 “電子文書受信者”라 한다)의 同意가 있을 것</p> <p>2. 電子文書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을 電子傳達媒體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p> <p>3. 電子文書受信者가 당해 電子文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p> <p>4. 電子文書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事業說明書의 내용과 동일할 것</p> <p>②누구든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대상이 되는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 기타의 去來를 위하여 請約의 勸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p> <p>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의 효력이 발생한 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說明書를 사용하는 방법</p> <p>2. 發行人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가 受理된 후 申告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豫備事業說明書(申告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附記한 事業說明書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p> <p>3. 發行人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가 受理된 후 新聞·放送·雜誌 등을 이용한 廣告,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電子傳達媒體를 통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簡易事業說明書(事業說明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p>	<p>1. 전자문서로 사업설명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의 동의가 있을 것</p> <p>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p> <p>3. 전자문서수신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p> <p>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사업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p> <p>②누구든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p> <p>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p> <p>2. 발행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대통령령에 따라 작성된 예비사업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사실을 덧붙여 적은 사업설명서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p> <p>3. 발행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작성된 간이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표시한 文書, 電子文書 기타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p> <p>第14條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賠償責任) ①有價證券申告書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說明書(豫備事業說明書 및 簡易事業說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有價證券의 取得者가 損害를 입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者는 그 損害에 관하여 賠償의 責任을 진다. 다만, 賠償의 責任을 질 者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有價證券의 取得者가 취득의 請約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有價證券申告書상의 申告者와 申告 당시의 당해 法人의 理事(法人의 設立전에 申告된 때에는 그 發起人) 1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2의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p>문서 <u>그 밖에</u>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p> <p>제14조 (허위기재 등으로 말미암은 배상책임)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u>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u>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u>않아서</u>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u>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u>적절한</u>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 시에 그 사실을 <u>알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할 때 해당 법인의 이사(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 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 1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2.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2의2.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을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현행	순화안
<p>3. 당해 發行人과 당해 有價證券의 引受契約을 체결한 者</p> <p>4. 당해 事業說明書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者</p> <p>5. 賣出의 방법에 의한 경우 賣出申告당시의 당해 賣出되는 有價證券의 所有者</p> <p>②豫測情報가 다음 各號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 各號의 者는 그 損害에 관하여 賠償의 責任을 지지 <u>아니한다</u>. 다만,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者가 취득의 請約시에 豫測情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u>아니한</u>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第1項 各號의 者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었음을 證明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豫測情報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p> <p>2. 豫測 또는 展望과 관련된 假定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p> <p>3.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假定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p> <p>4.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豫測値와 실제 結果値가 다를 수 있다는 注意文句가 명시되어 있을 것</p> <p>③第2項의 規定은 株券上場法人 및 코스닥 상장법인외의 法人이 최초로 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기 위하여 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3. 발행인과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p> <p>4.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p> <p>5. 매출의 경우 매출신고를 할 때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p> <p>②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u>않는다</u>. 다만,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 시에 예측정보에 <u>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u>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u>않은</u>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證明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1.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p> <p>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p> <p>3.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p> <p>4.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p> <p>③제2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외의 법인이 최초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적용되지 않는다</u>.</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第15條 (損害賠償額) ①第14條의 規定에 <u>의하여</u> 賠償할 金額은 請求權者가 <u>당해</u> 有價證券을 取得함에 있어서 실지로 支給한 額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額을 <u>控除</u>한 金額으로 한다.</p> <p>1. <u>당해</u> 有價證券에 관하여 <u>訴訟</u>提起되어 있는 때에는 <u>辯論終結時</u>에 있어서의 市場價格(市場價格이 없는 경우에는 推定處分價格)</p> <p>2. 第1號의 <u>辯論終結前</u>에 <u>당해</u> 有價證券을 <u>處分</u>한 때에는 그 處分價格</p> <p>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의 規定에 <u>의하여</u> 賠償責任을 질者가 請求權者가입은 損害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u>중요한 사항</u>을 기재·표시하지 <u>안</u>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u>立證</u>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지지 <u>아니</u>한다.</p> <p>第16條 (賠償請求權의 消滅) 第14條의 規定에 <u>의한</u> 賠償의 責任은 그 請求權者가 <u>당해</u> 事實을 <u>안</u> 날로부터 1年内 또는 <u>당해</u> 有價證券에 관하여 有價證券申告書의 效力이 발생한 <u>날</u>로부터 3年内에 請求權을 行使하지 <u>아니</u>한 때에는 消滅한다.</p> <p>第17條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 有價證券申告書의 效力이 발생한 有價證券의 發行人은 金融監督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u>의하여</u> 그 發行實績에 관한 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 (손해배상액) ①제14조의 規定에 <u>따라</u>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유가증권을 취득할 <u>때</u>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액을 <u>뺀</u> 금액으로 한다.</p> <p>1. <u>그</u> 유가증권에 관하여 <u>소송이 제</u>기되어 있을 때에는 변론을 <u>마감</u>할 <u>때의</u>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p> <p>2. 변론을 <u>마감</u>하기 전에 <u>그</u> 유가증권을 <u>처분</u>했을 때에는 그 처분가격</p> <p>②제1항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規定에 <u>따라</u> 배상책임을 질者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중요한 사항</u>을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기재·표시하지 <u>않</u>아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u>증명</u>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u>배상의 책</u>임을 지지 <u>않</u>는다.</p> <p>제16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4조의 規定에 <u>따른</u>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u>그</u> 사실을 <u>알</u>았던 <u>날부</u>터 1년 이내 또는 <u>해당</u>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 이 발생한 <u>날부</u>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u>않으면</u> 소멸된다.</p> <p>제17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定하는 바에 <u>따라</u>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第18條 (申告書와 報告書의 公示) 有價證券申告書와 第17條의 規定에 <u>의한</u> 報告書(이하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라 한다)는 <u>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金融監督委員會에 備置하고 <u>公衆의 閱覽에 供與</u>하여야 한다. 다만, 企業經營등 秘密維持와 投資者保護와의 衡平등을 고려하여 一般人的 閱覽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u>그러하지</u> 아니하다.</p> <p>第18條의2 (申告書を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賣出) 第9條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申告書を 제출하지 <u>아니하고</u> 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發行人은 投資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發行人의 財務狀態에 관한 사항의 公示 <u>기타</u>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第19條 (보고와 調査)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u>필요한 때에는</u> 有價證券申告의 申告人, 有價證券의 發行人·引受人 <u>기타 關係人에 대하여</u> 參考가 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u>命하거나</u> 金融監督機構의 設置등에 관한 法律에 <u>의하여</u> 設立된 金融監督院(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 院長으로 하여금 그 帳簿·書類 <u>기타의 物件을</u> 調査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u>携帶하여</u> 關係인에게 <u>提示</u>하여야 한다.</p>	<p>제18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7조의 규정에 <u>따른</u> 보고서(이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는 <u>대통령령에 따라</u> 금융감독위원회에 비치하고 <u>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기업경영등 비밀유지와 투자자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u>일반인이 열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u>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u>그렇지 않다</u>.</p> <p>제18조의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집·매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신고서를 제출하지 <u>않고</u>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u>그 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9조 (보고와 조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u>경우에는</u> 유가증권신고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인수인 <u>그 밖의 관계인에게</u>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u>명령하거나</u>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u>따라</u>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u>그 밖의</u>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u>지니고</u> 관계인에게 <u>내보여야</u> 한다.</p>

현행	순화안
<p>第20條 (金融監督委員會의 處分權)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有價證券의 發行人에 대하여 理由를 提示한 후 그 事實을 公告하고 訂正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有價證券의 발행·모집·賣出 기타 去來를 정지 또는 금지시키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는 有價證券의 發行人에 대한 措置를 함에 있어 필요한 節次·措置基準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有價證券申告書 또는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때 2. 事業說明書에 관하여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3. 豫備事業說明書 또는 簡易事業說明書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賣出 기타의 去來에 관하여 第13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1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때 <p>第 4 章 有價證券의 公開買受</p>	<p>제2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시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조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을 때 2. 사업설명서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3. 예비사업설명서 또는 간이사업설명서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4.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p>제 4 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p>
<p>第21條 (公開買受의 적용대상) ①議決權있는 株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有價證券市場 및 코스닥시장밖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者로부터 買受·交換·入札 기타 有價讓受(이하 이章에서 “買受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買受등을 한 후에 本人과 그 特別關係者(大統領令이</p>	<p>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의 결권이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자로부터 매수·교환·입찰 그 밖의 유상양수(이하 이 장에서 “매수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p>

현행	순화안
<p>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所有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第200條의2에서 같다)하게 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の 5이상이 되는 경우(本人과 그 特別關係자가 보유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の 5이상인 자가 당해 株式등의 買受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公開買受하여야 한다. 다만, 그 類型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買受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削除</p> <p>③이 장에서 “公開買受”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株式등의 買受(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請約을 하거나 賣渡(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請約을 勸誘하고 有價證券市場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당해 株式등을 買受하는 것을 말한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등의 數와 株式등의 總數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算定한 數로 한다.</p> <p>⑤“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함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 등을 할 주식 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有價證券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에 한한다.</p>	<p>(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200조의2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해당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해당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은 그렇지 않다.</p> <p>②삭제</p> <p>③이 장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주식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해당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p> <p>⑤“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 등을 할 주식 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이어야 한다.</p>

현 행	순 화 안
<p>제21조의2 (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공개매수를 <u>하고자</u> 하는 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매수를 <u>하고자</u> 하는 자 2. 공개매수 할 주식 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 할 주식 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②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u>당해</u> 공개 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u>공개매수</u> 할 주식 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u>공개매수</u> 할 주식 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u>의하지 아니하고</u>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u>당해</u> 계약의 내용 	<p>제21조의2 (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공개매수를 하는 자는 <u>대통령령에 따라</u>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매수를 하는 자 2. 공개매수 할 주식 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 할 주식 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②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u>대통령령에 따라</u>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적은</u>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u>공개매수의 공고</u>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될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u>공개매수</u> 할 주식 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u>공개매수</u> 할 주식 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 <u>이외의 방법으로</u>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u>그</u> 계약의 내용

현행	순화안
<p>7.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이어야 한다.</p> <p>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第21條의3 (議決權 제한 등) 제21조 제1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등의 買受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株式(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에 대한 議決權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당해 株式등(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p> <p>제22조 (신고서사본의 송부 등)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u>지체없이</u>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고,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第23條 (公開買受者の 買受의 제한 등) ①삭 제 ②公開買受者(그 特別關係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1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株式등을 公開買受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買受등을 하지 못한다.</p>	<p>7.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다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이어야 한다.</p> <p>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에 준용된다.</p> <p>제21조의3 (의결권 제한 등) 제21조 제1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해당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주식 등(당해 주식 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p> <p>제22조 (신고서사본의 송부 등)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바로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고,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 등) ①삭 제 ②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해당 주식 등을 공개매수의 방법이 아니면 매수 등을 하지 못한다.</p>

현행	순화안
<p>③삭 제 ④삭 제</p> <p>第23條의2 (정정신고·공고 등) ①公開買受者は 買受條件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開買受期間이 종료하는 날까지 訂正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買受價格의 引下, 買受豫定株式등의 數의 감소, 買受代金 지급기간의 연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買受條件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p> <p>②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u>지체 없이</u> 그 사실과 변경한 내용(공개매수공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u>공고</u>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공고</u>의 방법은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u>의한다</u>.</p> <p>③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공개매수</u> 정정신고를 한 경우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에 <u>의하여</u>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당해</u>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 2제1항 제5호의 규정에 <u>의하여</u>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p> <p>2. <u>당해</u>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 2제1항 제5호의 규정에 <u>의하여</u>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u>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p> <p>④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의 規定은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③삭 제 ④삭 제</p> <p>제23조의2 (정정신고·공고 등) ①공개매수자는 매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에정주식 등의 수의 감소, 매수대금지급기간의 연장 <u>그 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p> <p>②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정정신고서를 <u>제출</u>할 때에는 <u>바로</u> 그 사실과 변경한 내용(공개매수공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u>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u>. 이 경우 <u>알리는</u> 방법은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u>따른다</u>.</p> <p>③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u>공개매수</u>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에 <u>따라</u>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해당</u>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 2제1항 제5호의 규정에 <u>따라</u>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p> <p>2. <u>해당</u>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 2제1항 제5호의 규정에 <u>따라</u>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u>않는</u>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p> <p>④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의 規定은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현행	순화안
<p>第24條 (公開買受說明書の作成과 사용) ①公開買受者(공개매수 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公開買受를 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公開買受에 관한 說明書(이하 “公開買受 說明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場所에 비치하고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第13條의 規定은 公開買受說明書의 사용에 관하여 準用한다.</p> <p>第24條의2 (公開買受의 撤回등) ①公開買受者는 제21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公開買受期間의 末日까지 撤回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撤回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撤回申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申告하여야 한다.</p> <p>③公開買受對象 株式등의 買受의 請約에 대한 승낙 또는 賣渡의 請約(이하 “應募”라 한다)을 한 者(이하 “應募株主”라 한다)는 公開買受期間 중에는 언제든지 應募를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公開買受者는 應募株主에 대하여 當해 應募의 取消에 따른 損害賠償 또는 違約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없다.</p> <p>第25條 (公開買受에 관한 意見表示) 公開買受申告書가 제출된 株式등의 發行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公開買受에 관한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內容을 記載한 文書を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4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사용) ①공개매수자(공개매수 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제13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설명서의 사용에 준용된다.</p> <p>제24조의2 (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공개매수자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공개매수대상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응모”라 한다)을 한 자(이하 “응모주주”라 한다)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게 해당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p> <p>제25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 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바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第25條의2 (公開買受의 조건과 방법) ①公開買受者는 公開買受申告書에 <u>기재한</u> 買受條件 및 방법에 따라 應募한 당해 株式등의 전부를 公開買受期間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 이후 <u>지체없이</u> 買受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公開買受價格은 <u>均一</u>하여야 한다.</p> <p>第25條의3 (公開買受者의 賠償責任) ①第14條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者가 公開買受申告書 및 그 公告, 第23條의2의 規定에 <u>의한</u> 訂正申告書 및 그 公告와 公開買受說明書와 關連하여 應募株主에게 끼친 損害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1. 公開買受申告書 및 그 訂正申告書상의 申告者(申告者의 特別關係者를 포함하며, 申告者가 法人인 경우 그 理事를 포함한다)와 그 代理人 2. 公開買受說明書의 作成者와 그 代理人 ②第1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賠償責任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26條 (申告書등의 公示)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출받은 公開買受申告書, 第23條의2의 規定에 <u>의한</u> 訂正申告書, 第24條의2第2項의 規定에 <u>의한</u> 撤回申告書 및 第25條의 規定에 <u>의한</u> 文書를 그 接受日부터 <u>3년</u>간 비치하고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第27條 (申告人에 대한 資料要求) 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u>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u>에는 公開買受者 및 그 關係者와 當해 有價證券의 發行人에 <u>대하여</u> 參考가 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u>命할</u> 수 있다.</p>	<p>제25조의2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u>적혀있는</u> 매수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모한 <u>해당</u> 주식 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 이후 <u>바로</u>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②공개매수가격은 <u>같아야</u> 한다.</p> <p>제25조의3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공고, 제23조의2의 규정에 <u>따른</u> 정정신고서 및 그 공고와 공개매수설명서와 關連하여 응모주주에게 끼친 손해에 <u>준용된다</u>. 1.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상의 신고자(신고자의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며,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를 포함한다)와 그 대리인 2.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와 그 대리인 ②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배상책임에 <u>준용된다</u>.</p> <p>제26조 (신고서등의 공시)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출받은 공개매수신고서, 제23조의2의 규정에 <u>따른</u> 정정신고서,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철회신고서 및 제25조의 규정에 <u>따른</u> 문서를 그 접수일부터 <u>3년 동안</u>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7조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u>필요한 경우에는</u> 공개매수자 및 그 관계자와 <u>해당</u>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u>참고</u>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u>명령</u>할 수 있다.</p>

현행	순화안
<p>第27條의2 (準用規定) 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公開買受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7條중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5章 證券業</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節 許可</p> <p>第28條 (許可) ①證券業을 營爲할 수 있는 者는 營業의 種類別로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株式會社이어야 한다.</p> <p>②第1項의 營業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2條第8項第1號의 營業 2. 第2條第8項第2號 <u>내지</u> 第4號의 營業 3. 第2條第8項第5號 <u>내지</u> 第7號의 營業 4. 제2조제8항 제8호의 영업 <p>③證券會社의 資本金은 10億원 이상으로서 營業의 범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④削 除</p> <p>⑤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⑥削 除</p> <p>⑦削 除</p> <p>第28條의2 (外國證券業者의 營業) ①外國證券業者(外國法令에 의하여 外國에서 證券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國內에서 證券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支店 <u>기타</u> 營業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28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種類別로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p>	<p>제27조의2 (준용규정)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에 준용된다. 이 경우 제17조중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증권업</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허 가</p> <p>제28조 (허가) ①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8항제1호의 영업 2. 제2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 3. 제2조제8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 4. 제2조제8항 제8호의 영업 <p>③증권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④삭 제</p> <p>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⑥삭 제</p> <p>⑦삭 제</p> <p>제28조의2 (외국증권업자의 영업) ①외국증권업자(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할 때에는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店 기타 營業所의 營業基金은 10億원 이상으로서 營業의 범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店등의 設置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證券業者는 國內居住者를 상대로 하여 證券業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支店 기타 營業所는 第28條第3項의 規定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證券會社로 본다.</p> <p>⑤外國證券業者의 國內支店 기타 營業所가 清算 또는 破産하는 때에는 그 國內保有 資産은 證券去來行爲의 상대방으로서 그 去來 당시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가 있는 者에 대한 債權辨濟에 우선 應當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內保有資産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⑥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證券業者의 國內支店 기타 營業所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外國法令에 위반하여 證券業務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許可取消·營業停止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外國證券業者가 外國法令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外國證券業者의 國內支店 기타 營業所의 證券業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⑦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⑧外國證券業者의 證券業의 營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점 그 밖에 영업소의 영업기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증권업자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증권업을 영위할 수 없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증권회사로 본다.</p> <p>⑤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보유자산은 증권거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그 거래 당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우선하여 應當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에 영업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외국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취소·영업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증권업자가 외국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에 영업소의 증권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같다.</p> <p>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⑧외국증권업자의 증권업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순화안
<p>第29條 (證券業을 兼營하는 者 등에 대한 適用規定) ①削 除 ②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業許可를 받아 證券業을 兼營하는 者에게는 그 許可받은 營業의 범위 안에서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第28條 第3項, 第33條, 第47條 및 第62條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p>	<p>제29조 (증권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 대한 적용규정) ①삭 제 ②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권업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그 허가받은 영업의 범위 안에서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28조 제3항, 제33조, 제47조 및 제6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p>
<p>第30條 (許可申請) ①第28條第1項 및 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申請書를 金融監督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제출받은 申請書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申請書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申請書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第31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p>	<p>제30조 (허가신청) ①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 가를 받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 라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 되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p>
<p>第31條 (許可節次) ①金融監督委員會 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를 受理한 때에는 30日내에 그 許可與 否를 決定하고 이를 지체없이 申請人 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削 除</p>	<p>제31조 (허가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 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허 가할 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신청 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삭 제</p>
<p>第32條 (許可의 요건) ①第28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한 證券業의 許可를 받 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1.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 을 충족할 것 2. 投資者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 위하고자 하는 證券業을 수행하기 에 충분한 人力과 電算設備 기타 物的 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p>	<p>제32조 (허가의 요건) ①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증권업의 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충족할 것 2.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 하고자 하는 증권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3. 事業計劃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p> <p>4.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出資者(出資자가 法人인 경우에는 <u>당해</u> 法人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出資能力, 건전한 財務狀態 및 社會的 信用을 갖추고 있을 것</p> <p>②제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店 기타 營業所의 設置許可를 받고자 하는 外國 證券業者는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p> <p>1. 第28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件을 충족할 것</p> <p>2. 財産狀況·財務健全性 및 營業健全性이 國內에서 證券業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國際的 信認度가 높을 것</p> <p>3.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要件을 갖추어 줄 것</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2條의2 (許可의 公告)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8條第1項 및 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때에는 <u>지체없이</u> 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p> <p>第2節 건전영업秩序의 유지</p> <p>第33條 (任員의 資格) ①削除</p> <p>②다음 各號의 <u>1</u>에 해당하는 者는 證券社의 任員이 되지 못하며, 任員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u>되</u>는 때에는 그 職을 喪失한다.</p>	<p>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p> <p>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u>해당</u>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p> <p>②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지점 <u>그 밖의</u>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 증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u>다른</u> 요건을 충족할 것</p> <p>2. 재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p> <p>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줄 것</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u>다른</u>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의2 (허가의 <u>알림</u>)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허가를 한 <u>경우에는 바로</u> 그 내용을 <u>관보 및</u>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절 건전영업질서의 유지</p> <p>제33조 (임원의 자격) ①삭제</p> <p>②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u>될</u> 때에는 그 직을 <u>잃</u>는다.</p>

현행	순화안
<p>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p> <p>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u>아니한</u> 者</p> <p>3.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法令(이하 “外國證券法令”이라 한다) <u>기타</u>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u>의하여</u> 罰金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u>종료</u> (執行이 <u>종료된</u>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免除된 후 <u>5</u> 年을 경과하지 <u>아니한</u> 者</p> <p>3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p> <p>4. 이 법 또는 外國證券法令 <u>기타</u>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u>의하여</u> 營業의 許可·認可 등이 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の 任·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u>관하여</u> 직접 또는 <u>이에</u>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u>당해</u> 法人 또는 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u>아니한</u> 者</p> <p>5. 이 법 또는 外國證券法令 <u>기타</u>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u>의하여</u> 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u>5</u> 年을 경과하지 <u>아니한</u> 者</p> <p>第33條의2 및 第34條 削除</p> <p>第35條 (認可事項) ①證券會社는 會社를 合併하거나 營業의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讓渡하거나 讓受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u>않은</u> 자</p> <p>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법령(이하 “외국증권법령”이라 한다) <u>그 밖에</u> 大統領령이 정하는 金融관련법령에 <u>따라</u>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u>끝나</u> <u>거나</u>(집행이 <u>끝난</u>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u>5년</u>이 <u>경과되지 않은</u> 자</p> <p>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4.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u>그 밖에</u> 大統領령이 정하는 金融관련법령에 <u>따라</u>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u>그에</u>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u>해당</u>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u>않은</u> 자</p> <p>5.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u>그 밖에</u> 大統領령이 정하는 金融관련법령에 <u>따라</u>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u>5년</u>이 <u>경과되지 않은</u> 자</p> <p>제33조의2 및 제34조 삭제</p> <p>제35조 (인가사항) ①증권회사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감독위원회 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3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②金融監督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그 認可與否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第36條 (報告事項) 證券會社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지체없이</u> 그 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任員을 選任 또는 解任한 때 2. 支店 <u>기타의</u> 營業所를 新設한 때 또는 本店·支店 <u>기타의</u> 營業所의 位置를 변경하거나 그 營業을 중지·再開 또는 廢止한 때 3. 本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 <u>기타</u>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所有하는 株式의 數가 가장 많은 者가 변경된 때 4. 商號를 변경한 때 4의2. 會社의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5. 第1號 내지 第4號의2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p>第37條 (證券業廢止의 公告) 證券會社가 證券業 또는 支店 <u>기타</u> 營業所의 營業을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廢止 30日전에 2이상의 日刊新聞紙에 3회이상 公告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는 個別로 통지하여야 한다.</p> <p>第38條 削除</p> <p>第39條 削除</p> <p>第40條 삭제</p> <p>第41條 (支店 <u>기타의</u> 營業所에 대한 責任) 證券會社는 支店 <u>기타의</u> 營業所가 有價證券의 賣買 <u>기타의</u> 去來를</p>	<p>②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그 인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36조 (보고사항) 증권회사는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u>바로</u>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u>경우</u> 2. 지점 <u>그 밖의</u> 영업소를 신설한 <u>경우</u> 또는 본점·지점 <u>그 밖의</u> 영업소의 위치를 <u>바꾸거나</u> 그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u>경우</u> 3. 본인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친족 <u>그 밖에</u>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가 변경된 <u>경우</u> 4. 상호를 변경한 <u>경우</u> 4의2.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u>경우</u> 5. <u>제1호부터 제4호의2까지 외에</u>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p>제37조 (증권업폐지의 공고) 증권회사가 증권업 또는 지점 <u>그 밖의</u> 영업소의 영업을 <u>폐지할</u> 때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전에 2이상의 일간신문지에 3회 이상 <u>공고하고</u>,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8조 삭제</p> <p>제39조 삭제</p> <p>제40조 삭제</p> <p>제41조 (지점 <u>그 밖의</u> 영업소의 책임) 증권회사는 지점 <u>그 밖의</u> 영업소가 유가증권의 매매 <u>그 밖의</u> 거래를 <u>하</u></p>

현행	순화안
<p><u>함에 있어서 他人에게 損害를 끼친 때에는 被害者에 대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u></p> <p>第42條 (任員등의 賣買去來의 制限) 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은 <u>給與額에 대한 一定率을 證券貯蓄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本人의 計算으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을 하지 못한다.</u></p> <p>第43條 (去來形態의 明示) 證券會社는 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去來에 관한 注文을 받은 때에는 事前에 <u>그 顧客에 대하여 당해 賣買에 있어서 자기가 相對方이 되는가 仲介나 代理 또는 委託賣買의 方法에 의하는가의 區別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u></p> <p>第44條 (自己契約의 禁止) 證券會社는 有價證券에 관한 同一한 賣買에 있어서 <u>그 本人이 될과 동시에 相對方의 委託賣買人·仲介人 또는 代理人이 되지 못한다.</u></p> <p>第44條의2 삭제</p> <p>第44條의3 (顧客預託金の 別途預置 등) ①증권회사는 顧客預託金(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預託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기 소유의 財産과 구분하여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金融會社(이하 “預置機關”이라한다)에 <u>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u> ②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置機關에 顧客預託金を 預置하는 경우에는 그 顧客預託금이 顧客의 財産이라는 뜻을 <u>명시하여야 한다.</u></p>	<p><u>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u></p> <p>제42조 (임원 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u>급여액의 일정률을 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그 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p> <p>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u>거래의</u> 주문을 받은 <u>경우에는</u> 사전에 자기가 상대방이 <u>되는지 아니면</u>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u>따르는지를 명확히 구별하여야</u> 한다.</p> <p>제44조 (자기계약의 금지)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한 동일한 <u>매매에</u> 서 본인이 될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p> <p>제44조의2 삭제</p> <p>제44조의3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①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u>예탁을</u> 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기 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u>다른</u> 증권금융회사(이하 “예치기관”이라한다)에 <u>맡겨야</u>(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다. ②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예치기관에 고객예탁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고객예탁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u>밝혀야</u> 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顧客預託金을 預置한 證券會社(이하 “預置證券會社”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預置機關에 預置한 顧客預託金을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相計·押留(假押留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p> <p>④預置證券會社は 당해 證券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預置機關에 預置한 顧客預託金을 引出하여 顧客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顧客預託金の 支給時期·場所 기타 顧客預託金の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2이상의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營業의 中止決議를 한 때 2. 營業의 停止命令을 받은 때 3. 許可의 取消를 받은 때 4. 解散의 決議를 한 때 5. 破産宣告를 받은 때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p>⑤預置機關은 당해 預置機關이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預置證券會社에 대하여 預置한 顧客預託金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p> <p>⑥預置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顧客預託金을 運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債·地方債의 買入 2. 政府·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지급을 보증한 債券의 買入 3. 기타 顧客預託金の 안전한 運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예치한 증권회사(이하 “예치증권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p> <p>④예치증권회사는 해당 증권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인출하여 고객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고객예탁금의 지급시기·장소 그 밖의 고객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2이상의 일간신문을 통해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의 중지결의를 한 경우 2.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허가의 취소를 받은 경우 4.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5.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⑤예치기관이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예치증권회사에게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p> <p>⑥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지방채의 매입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고객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현행	순화안
<p>⑦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證券會社가 預置機關에 預置하여야 하는 顧客預託金の 범위, 預置比率, 預置된 顧客預託金の 引出에 관한 사항, 預置機關의 顧客預託金 관리에 관한 사항 <u>기타</u> 顧客預託金の 預置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預置比率은 證券會社의 財務狀況 등을 고려하여 證券會社別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第44條의4 (顧客預託有價證券 등의 預託) ①證券會社は 賣買去來의 受託 <u>기타의</u> 去來에 따라 保有하게 되는 顧客의 有價證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 또는 證書를 第173條의 規定에 <u>의하여</u> 設立된 증권예탁결제원 (이하 이 條에서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u>지체없이</u> 預託하여야 한다. ②證券會社は 保有자산을 運用함에 따라 保有하게 되는 有價證券·證券 및 證書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증권예탁결제원에 <u>지체없이</u> 預託하여야 한다.</p> <p>第45條 削除</p> <p>第46條 (賣買去來등의 通知) 證券會社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u>바에 따라</u> 顧客의 注文에 <u>의한</u> 賣買 <u>기타</u> 去來內容등을 당해 顧客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第46條의2 (自己株式의 예외취득) 證券會社は 顧客의 委託을 받은 경우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의 賣買數量單位미만의 自己株式을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自己株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p>	<p>⑦제1항의 規定에 <u>따라</u> 증권회사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고객예탁금의 범위, 예치비율, 예치된 고객예탁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예치기관의 고객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u>그 밖에</u> 고객예탁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비율은 증권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44조의4 (고객예탁유가증권 등의 예탁) ①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수탁 <u>그 밖의</u> 거래에 따라 保有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제173조의 規定에 <u>따라</u>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 (이하 이 조에서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u>바로</u> 예탁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保有자산을 운용하면<u>선</u> 保有하게 되는 유가증권·증권 및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증권예탁결제원에 <u>바로</u> 예탁하여야 한다.</p> <p>제45조 삭제</p> <p>제46조 (매매거래 등의 通知)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에 <u>따라</u> 고객의 주문에 <u>따른</u> 매매 <u>그 밖의</u> 거래내용 등을 고객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제46조의2 (자기주식의 예외취득) 증권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매매수량단위미만의 자기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第47條 (營業報告書) ①證券會社는 事業年度 <u>開始日부터 3月間·6月間·9月間 및 12月間의 營業實績·財務狀態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營業報告書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證券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는 날부터 1年間 本店과 支店 기타 營業所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一般人的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報告書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p> <p>第48條 (任員의 兼職) 證券會社의 常勤任員은 顧客과의 利害가 相衝되거나 <u>당해 證券會社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常務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u></p> <p>第49條 (信用供與) ①證券會社는 有價證券에 관련하여 顧客에게 金錢의 融資 또는 有價證券의 貸付의 方法으로 信用을 供與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信用供與의 方法과 內容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信用供與에 대하여 <u>그 限度와 擔保의 比率 및 徵收方法등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야 한다.</u></p> <p>④證券會社는 <u>그 引受한 有價證券을 賣却하는 경우에 引受한 날로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有價證券에 대한 買受代金の 貸付 기타 信用供與를 하지 못한다.</u></p>	<p>제47조 (영업보고서) ①증권회사는 事業연도 <u>시작일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 동안의</u> 영업실적·재무상태 <u>그 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u>적은</u>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이 <u>지난 뒤</u>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1년 <u>동안</u> 본점과 지점 <u>그 밖의</u>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u>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u>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p> <p>제48조 (임원의 겸직)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은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u>해당</u>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u>일상적인 업무에</u>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p> <p>제49조 (신용공여) ①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u>제공할</u> 수 있다.</p> <p>②제1항의 <u>신용제공의</u> 방법과 <u>내용</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u>신용제공의</u>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p> <p>④증권회사는 인수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인수한 날로부터 <u>3개월이</u> 되는 날까지는 <u>그</u> 유가증권에 대한 매수대금의 대부 <u>그 밖의 신용제공을</u> 하지 못한다.</p>

현행	순화안
<p>第50條 (證券貯蓄業務) ①證券會社は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規程에 <u>의하여</u> 證券貯蓄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證券貯蓄業務의 方法과 <u>內容</u>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1條 (兼業의 제한) ①證券會社は 다음 各號의 <u>業務외의</u> 다른 業務를 兼營하지 못한다. 1. 金融業(이 法 또는 金融關聯法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業務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法令에서 證券會社가 營위할 수 있도록 한 業務 2.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業으로서 그 業務의 성격상 證券會社가 兼業하는 것이 可能하다고 金融監督委員會가 認可한 業務 3. 다음 各目的의 <u>1에</u>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隨業務 가. 證券業과 관련된 業務 나. 證券會社가 소유하고 있는 人力·資産 또는 設備 등을 活用하는 業務 다. <u>기타</u> 다른 法令에 <u>의하여</u> 許可·認可·승인 또는 登錄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 ②證券會社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u>의한</u> 金融業으로서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u>의하여</u>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거나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을 한 業務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u>의한</u>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第52條 (不當勸誘行爲등의 禁止) 證券會社 또는 그 任·職員은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제50조 (증권저축업무) ①증권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規程에 <u>따라</u> 증권저축업무를 營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권저축업무를 方法과 <u>내용</u>은 大總統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 (겸업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다음 각 호의 <u>업무 이외의</u> 다른 業務를 <u>같이 하지</u> 못한다. 1. 금융업(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規定하고 있는 業務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증권회사가 營위할 수 있도록 한 業務 2. 大總統령이 정하는 金融業으로서 그 業務의 성격상 증권회사가 <u>같이 하는</u> 것이 可能하다고 金融감독위원회가 인가한 業務 3. 다음 각목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總統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증권업과 관련된 業務 나.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人力·資産 또는 설비 등을 活用하는 業務 다. <u>그 밖에</u> 다른 법령에 <u>따라</u> 허가·인가·승인 또는 登錄 <u>등이 필요하지 않는</u> 業務 ②증권회사가 제1항제2호의 規定에 <u>따른</u> 金融業으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u>따라서</u> 金融감독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金融감독위원회에 登錄을 한 業務는 제1항제2호의 規定에 <u>따른</u> 金融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2조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行爲를 하여서는 <u>안 된다</u>.</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1.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있어서 顧客에 대하여 당해 去來에서 發生하는 損失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할 것을 約束하고 勸誘하는 行爲</p> <p>2. 有價證券의 發行業務와 관련하여 顧客을 誘致하기 위하여 顧客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顧客의 事業活動을 제한하는 行爲</p> <p>3. 第1號 및 第2號의 行爲 이외에 有價證券의 발행 또는 賣買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投資者의 보호 또는 去來의 公正을 沮害하거나 證券業의 信用을 墜落시키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爲</p> <p>제52조의2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제한 등) ①제2조 제8항 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및 결제방법, 결제책임 등 결제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의 위탁증거금 등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 발행인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거래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매매의 중개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p>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고객에 게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p> <p>2.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p> <p>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제52조의2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제한 등) ①제2조 제8항 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및 결제방법, 결제책임 등 결제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의 위탁증거금 등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 발행인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거래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매매의 중개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현행	순화안
<p>8. 그 밖에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②제2조제8항 제8호의 증권업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제49조·제50조 및 제5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p> <p>③제2조제8항 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u>상장주식</u> 또는 <u>코스닥상장주식인</u> 경우 각각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p> <p>④제117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 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u>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p>⑤제43조·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 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u>당해</u>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第52條의3 (任意賣買의 금지) 證券會社 任·職員은 顧客 또는 그 代理人으로부터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를 받지 <u>아니하고는</u> 顧客으로부터 預託받은 財産으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할 수 없다.</p> <p>第52條의4 (證券會社등에 대한 不當要求 금지) 누구든지 證券會社가 영위하는 業務와 관련한 手數料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證券會社 또는 그 任·職員으로부터 金錢·서비스 <u>기타</u>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第三者에게 <u>이를</u>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p> <p>第53條 (檢査) ①證券會社는 <u>그</u> 業務와 財産에 관하여 金融監督院 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p>	<p>8. 그 밖에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②제2조제8항 제8호의 증권업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제49조·제50조 및 제5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p> <p>③제2조제8항 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u>상장주권</u> 또는 <u>코스닥상장주권인</u> 경우 각각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p> <p>④제117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 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u>준용된다.</u></p> <p>⑤제43조·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 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u>해당</u>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제52조의3 (임의매매의 금지)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u>않고</u>는 고객으로부터 <u>예탁</u>을 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p> <p>제52조의4 (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서비스 <u>그 밖에</u>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p> <p>제53조 (검사) ①증권회사는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②金融監督院長은 檢査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券會社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證人의 출석, 證言 및 의견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p> <p>④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그 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법 기타 證券에 관한 法令, 이 법에 의한 處分 또는 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機構의 設置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 및 거래소의 規程에 違反한 事實이 있는 때에는 그 處리에 관한 意見書를 添附하여야 한다.</p> <p>⑤金融監督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와 意見書를 審議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1. 證券會社가 第5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業의 許可取消</p> <p>2.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하고 證券會社가 그 業務執行上 違法 또는 不當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當해 證券會社에 대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命令, 任員의 解任要求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措置</p> <p>⑥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2조의 규정에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회사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했을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법 그 밖의 증권에 관한 법령,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 및 거래소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와 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증권회사가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업의 허가취소</p> <p>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를 하면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해당 증권회사에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p> <p>⑥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현행	순화안
<p>⑦金融監督委員會는 檢査의 方法·節次, 檢査結果에 對한 措置基準 기타 檢査業務와 關連하여 必要한 사항을 定할 수 있다.</p> <p>第54條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權)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過度한 投機去來의 防止와 公益 또는 投資者의 保護를 爲하여 證券會社에 對하여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p> <p>第54條의2 (自己資本規制比率의 유지) ①證券會社는 第1號 및 第2號의 金額을 合計한 金額에서 第3號의 金額을 差減하여 算定한 金額을 總危險額 (당해 證券會社의 資産 및 負債에 內재하거나 業務에 手入되는 위험을 金額으로 換算하여 合計한 金額을 말한다)으로 なる 比率(이하 “自己資本規制比率”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 以上으로 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差減한 金額 2. 流動資産에 設定한 貸損充當金, 後順位借入金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3. 固定資産의 評價額, 先給金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p>②證券會社는 毎 分期의 末日(이하 이條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基準으로 自己資本規制比率을 算定하여 그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기준일 이후 45일이 경과한 날부터 3月間 本店과 支店 기타 營業所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方法으로 一般人의 覽람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⑦금융감독위원회는 檢査의 方法·절차, 檢査結果에 對한 조치기준 그 밖의 檢査업무와 關連하여 必要한 사항을 定할 수 있다.</p> <p>제5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對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p> <p>제54조의2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①증권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金額을 合計한 金額에서 第3호의 金額을 차감하여 算定한 金額을 총위험액(당해 증권회사의 資産 및 부채에 內재하거나 업무에 手入되는 위험을 金額으로 換算하여 合計한 金額을 말한다)으로 なる 비율(이하 “자기자본 규제비율”이라 한다)을 大統領령이 定하는 비율 以上으로 維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資産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金額 2. 유동자산에 設定한 대손충당금, 後순위차입금 그 밖에 大統領령이 定하는 金額 3. 고정자산의 평가액, 선급금 그 밖에 大統領령이 定하는 金額 <p>②증권회사는 毎 분기의 말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基準으로 자기자본규제비율을 算定하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報告하여야 하며, 기준일 이후 45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동안 본점과 지점 그 밖의 營業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方法으로 일반인이 覽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③自己資本規制比率을 <u>算定</u>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p> <p>第54條의3 (資産運用의 건전성) ①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당해</u> 會社의 最大株主(第54條의5 第4項第2號의 規定에 <u>의한</u> 最大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 主要株主(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主要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발행한 有價證券을 所有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u>자</u>에 대하여 金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供與하는 행위 가. <u>당해</u> 會社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중 大統領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u>당해</u> 會社의 주요주주 다. <u>당해</u> 會社의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자 3. <u>他人</u>을 위하여 債務의 履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 4. <u>당해</u> 會社의 最大株主 또는 主要株主가 발행한 株式·債券 및 기업어음(企業이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초과하여 所有하는 행위 5. 第1號 <u>내지</u> 第4號외에 證券會社의 건전한 資産運用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p>③자기자본규제비율을 <u>계산</u>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金融감독위원회가 정한다.</p> <p>제54조의3 (자산운용의 건전성) ①증권회사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해당</u> 會社의 최대주주(제54조의5 제4항제2호의 規定에 <u>따른</u>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제188조제1항의 規定에 <u>따른</u>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u>자에게</u> 金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u>제공</u>하는 행위 가. <u>해당</u> 會社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중 大統領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u>해당</u> 會社의 주요주주 다. <u>해당</u> 會社의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자 3. <u>다른 사람</u>을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 4. <u>해당</u> 會社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大統領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u>제4호까지 이외</u>에 증권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행위

현행	순화안
<p>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사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第54條의4 (內部統制基準) ①證券會社는 法令을 준수하고, 資産運用을 건전하게 하며, 顧客을 보호하기 위하여 任·職員이 그 職務를 <u>수행함에 있어서</u>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條에서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p> <p>②證券會社는 內部統制基準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內部統制基準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調査하며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에 보고하는 者(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p> <p>③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경우에는 <u>그리하지 아니하다.</u></p> <p>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p> <p>가. 한국은행 또는 金融監督機構의 設置등에관한法律 제38조의 규정에 <u>의한</u>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u>당해</u>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u>따른</u>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54조의4 (내부통제기준) ①증권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u>수행하면서</u>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p> <p>②증권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p> <p>③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경우에는 <u>그럴 필요가 없다.</u></p> <p>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p> <p>1. 다음 각목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p> <p>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u>따른</u> 검사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u>해당</u>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u>당해</u>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p> <p>2.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u>해당하지</u> 않을 것</p> <p>3. 최근 5년<u>간</u>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54條의5 (社外理事의 選任) ①證券會社(資産規模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社外理事가 理事 總數의 2分の 1 이상이 되도록 理事會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社外理事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證券會社는 社外理事候補를 추천하기 위하여 商法 第393條의2의 規定에 <u>의한</u> 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는 社外理事가 總 委員의 2分の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證券會社의 경우 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를 選任하고자 <u>하는</u> 때에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者 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主權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증권회사</p>	<p>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u>해당</u>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자</p> <p>2. 제33조제2항 각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되지</u> 않을 것</p> <p>3. 최근 5년 <u>동안</u>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4조의5 (사외이사의 선임) ①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u>따른</u>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증권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u>할</u>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증권회사의</p>

현행	순화안
<p>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u>추천함에 있어서는</u>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한다.</p> <p>④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證券會社의 社外理事가 되지 못하며 社外理事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u>때에는</u> 그 職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91條의12第3項第1號 <u>내지</u> 第4號에 해당하는 者 2. <u>당해</u> 會社의 株主로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를 기준으로 本人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이 所有하는 株式의 數가 가장 많은 경우 <u>당해</u> 本人(이하 “最大株主”라 한다) 3. 最大株主의 특수관계인 4. <u>당해</u> 會社의 主要株主(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 및 그의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5. <u>당해</u> 會社 또는 系列會社(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u>의한</u>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任·職員(常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任·職員이었던 者 6. <u>당해</u> 會社의 任員의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 7. <u>당해</u> 會社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去來關係가 있거나 사업상 競爭關係 또는 協力關係에 있는 法人의 任·職員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任·職員이었던 者 8. <u>당해</u> 會社의 任·職員이 非常任理事로 있는 會社의 任·職員 	<p>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u>추천하는 경우에는</u>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한다.</p> <p>④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u>경우에는</u> 그 직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1조의12제3항제1호<u>부터</u> 제4호<u>까지</u>에 해당하는 자 2. <u>해당</u>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u>그</u>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u>해당</u> 회사의 주요주주(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 <u>해당</u>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u>다른</u>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임·직원(<u>일상적인 업무에</u>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6. <u>해당</u>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7. <u>해당</u>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8. <u>해당</u>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9. 기타 社外理事로서의 職務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會社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p> <p>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는 社外理事의 辭任·死亡 등의 사유로 인하여 社外理事의 數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株主總會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第54條의6 (監査委員會) ①證券會社(資産規模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商法 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이하 “監査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p> <p>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p>③社外理事가 아닌 監査委員會의 委員은 第191條의12第3項 各號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191條의1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常勤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在任중인 者는 第191條의12第3項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이 될 수 있다.</p>	<p>9. <u>그 밖에</u>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u>해당</u>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p> <p>⑤제1항의 規定에 <u>다른</u> 證券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規定에 <u>다른</u> 이사회 構成요건에 미달하게 된 <u>경우에는</u> 그 사유가 발생한 <u>뒤</u> <u>맨 처음</u>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規定에 <u>다른</u>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54조의6 (감사위원회) ①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의 規定에 <u>다른</u>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p>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되어서는 <u>안 된다</u>. 다만, 제191조의12제3항의 規定에 <u>다른</u>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u>규정에도</u>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p>

현행	순화안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는 社外理事의 辭任·死亡 등의 사유로 인하여 社外理事의 數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株主總會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商法 第415條의2第2項 但書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商法 第409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은 監査위원회 的 委員이 되는 사외이사 的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第55條 (許可의 取消)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理由를 提示하고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證券業의 許可를 받은 때 2. 許可內容 또는 許可條件에 위반하거나 許可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營業을 開시하지 아니한 때 3. 業務에 관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他人으로부터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交付를 받거나 他人에게 交付할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取得한 때 4.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정지의 命을 받은 者가 그 命을 받은 날로부터 1월(營業停止의 命을 하면서 1월을 초과하는 補正期間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當해 條件을 補正하지 아니한 때 	<p>④제1항의 規定에 따른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의 規定에 따른 監査위원회 的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株主總會에서 제2항의 規定에 따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상법 第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規定에 따른 監査위원회 的 구성에 적용되지 않는다.</p> <p>⑥상법 第409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은 監査위원회 的 委員이 되는 사외이사 的 선임에 준용된다.</p> <p>제55조 (허가의 취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營業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업무에 관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金전 또는 유가증권의 交부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交부할 金전 또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4. 제57조의 規定에 따라 營業정지의 命령을 받은 사람이 그 命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營業정지의 命령을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바로잡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바로잡지 않은 경우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5. 有價證券市場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賣買 기타의 去來에 관하여 契約에 違反하거나 受渡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p> <p>6. 第35條第1項·第54條의2第1項·第54條의3·第54條의5·第54條의6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p> <p>7.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p> <p>8. 第1號 내지 第7號 이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하여 證券會社로서의 業務遂行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p> <p>②證券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業의 許可가 取消된 때에는 解散한다.</p> <p>③제32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56條 (殘務의 終結) 證券會社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의 取消(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스스로 營業을 廢止하는 때에는 그 證券會社가 행한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의 去來를 終結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證券會社 또는 그 承繼人은 그 賣買 기타의 去來를 終結시키는 범위 안에서 證券會社로 본다.</p> <p>第57條 (營業의 停止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p>	<p>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매매 <u>그 밖의</u> 거래에 관하여 <u>계약을 위반하거나</u> 수도를 이행하지 <u>않은 경우</u></p> <p>6. 제35조제1항·제54조의2제1항·제54조의3·제54조의5·제54조의6 또는 제63조의 <u>규정을 위반한 경우</u></p> <p>7. 제54조의 規定에 <u>다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p> <p>8. <u>제1호부터 제7호까지</u> 이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u>다른</u> 명령이나 <u>처분을 위반하여 증권회사로서</u>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u>경우</u></p> <p>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規定에 <u>따라</u>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u>경우에는</u> 해산한다.</p> <p>③제32조의2의 規定은 제1항의 規定에 <u>다른</u> 허가취소에 準용된다.</p> <p>제56조 (잔무의 종결) 증권회사가 제55조의 規定에 <u>따라</u> 허가의 취소(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허가의 취소를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스스로 營業을 <u>폐지할</u> 때에는 그 증권회사가 <u>한</u> 유가증권의 매매 <u>그 밖의</u>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u>해당</u> 증권회사 또는 그 승계인은 그 매매 <u>그 밖의</u>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 안에서 증권회사로 본다.</p> <p>제57조 (영업의 停止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各 號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u>명령할</u> 수 있다.</p>

현행	순화안
<p>1. 제42조·第44條·제44조의3·제44조의4·제47조·제49조 내지 제52조·제52조의2 또는 第54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p> <p>2.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命숨에 위반한 경우</p> <p>3. 제188조제1항·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第3項 또는 第53條第5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任員解任의 요구에 응하지 <u>아니한</u> 경우</p> <p>5. 營業의 중지 또는 解散을 決議한 경우로서 公益과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第5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정지의 경우에 準用한다.</p> <p>③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會社가 第36條·第43條·第44條·第4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52條의 規定에 違反한 任員에 대하여는 理由를 提示하고 그 任員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58條 (任員의 責任) ①證券會社의 理事 또는 監事(監査委員會가 設置된 경우에는 監査委員會 委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故意 또는 過失로 그 任務를 懈怠하거나 會社의 業務를 <u>행함에 있어서</u> 第3者에게 損害를 <u>끼친</u> 때에는 理事·監事 및 最大株主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第3者에게 損害를 끼친 行爲가 最大株主의 要求 또는 同意에 의한 것이 아님을 證明하는 最大株主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第1項의 規定은 <u>당해</u> 證券會社의 賠償責任에 영향을 미치지 <u>아니한다.</u></p>	<p>1. 제42조·제44조·제44조의3·제44조의4·제47조·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제52조의2 또는 제54조의4의 <u>규정을</u> 위반한 경우</p> <p>2. 제54조의 규정에 <u>다른 명령을</u> 위반한 경우</p> <p>3. 제188조제1항·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5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u>다른</u> 임원해임의 요구에 응하지 <u>않은</u> 경우</p> <p>5. 營業의 중지 또는 해산을 결의한 경우로서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제5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영업정지의 경우에 <u>준용된다.</u></p>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36조·제43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u>규정을</u> 위반하거나 제52조의 <u>규정을</u> 위반한 임원에게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58조 (임원의 책임) ①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u>게을리</u>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u>하면서</u> 제3자에게 손해를 <u>끼쳤을</u> 때에는 이사·감사 및 최대주주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최대주주의 요구 또는 동의에 <u>다른</u>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대주주는 <u>배상의 책임이 없다.</u></p> <p>②제1항의 규정은 <u>해당</u> 증권회사의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u>않는다.</u></p>

현행	순화안
<p>③第1項의 경우에는 商法 第399條 第2項·第3項 및 第414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第59條 (정보의 제공 또는 漏泄의 禁止) ①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은 證券會社를 통하여 有價證券을 賣買하거나 賣買하고자 하는 委託者(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貯蓄을 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書面에 의한 要求나 同意를 받지 <u>아니하고는 他人에게 당해 委託者의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의 去來와 그 預託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內容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거나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u> 다만, 監督機關의 業務上 필요에 의하여 檢査를 받는 경우 또는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要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監督機關의 業務上 필요에 의하여 情報를 知得한 者는 그 知得한 情報를 他人에게 제공 또는 漏泄하거나 그 目的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60條 (정보提供要求의 禁止) ①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發付한 令狀이 있는 경우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에 대하여 第59條第1項에 規定하는 情報의 제공을 要求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情報의 제공을 要求할 수 있는 때에도 그 質問 또는 調査의 內容은 필요한 범위 內에 局限하여야 한다.</p> <p>第61條 (不當調査의 拒否) 證券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은 第60條의 規定에 違反된 要求·質問 또는 調査에 대하여는 그 理由를 들어 이를 拒否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①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u>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u>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u>그 밖의</u> 거래와 그 예약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안 된다.</u> 다만,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u>따라</u>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u>따른</u>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u>허용된다.</u></p> <p>②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u>따라</u> 정보를 <u>알게 된</u> 자는 그 정보를 <u>다른 사람</u>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u>안 된다.</u></p> <p>제60조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와 <u>그 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 제59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u>안 된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 해당</u>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u>경우에도</u> 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은 필요한 <u>범위 이내이어야</u> 한다.</p> <p>제61조 (부당조사의 거부)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제60조의 <u>규정을 위반한</u> 요구·질문 또는 조사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들어 거부하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第62條 (商號) ①증권회사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호</u> 중에 증권·증권중개 또는 債券仲介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②證券會社가 아닌 者는 證券業을 표시하는 文字를 그 商號에 사용하지 못한다.</p>	<p>제62조 (상호) ①증권회사는 <u>대통령령에 따라 그 상호</u> 중에 증권·증권중개 또는 채권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p> <p>②증권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하지 못한다.</p>
<p>第63條 (名義貸與의 禁止) 證券會社는 자기의 名義를 貸與하여 他人으로 하여금 證券業을 經營하게 하지 못한다.</p>	<p>제63조 (명의대여의 금지) 증권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u>빌려주어 다른 사람이</u> 증권업을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p>
<p>第64條 (證券會社의 少數株主權 등의 행사) ①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주주의 少數株主權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u>준용한다</u>. 이 경우 제191조의13제1항 중 “1萬分の 1이상”은 “10만분의 5 이상”으로, <u>동조</u> 제2항 중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은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으로, <u>동조</u> 제3항 중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은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으로, <u>동조</u> 제4항 중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은 “1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으로, <u>동조</u> 제5항 중 “1千分の 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の 15)이상”은 “1만분의 1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으로 본다.</p>	<p>제64조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 ①제191조의13제1항부터 <u>제6항까지의</u> 규정은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등에 <u>준용된다</u>. 이 경우 제191조의13제1항 중 “1만분의 1이상”은 “10만분의 5 이상”으로, <u>같은 조</u> 제2항 중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은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으로, <u>같은 조</u> 제3항 중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은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으로, <u>같은 조</u> 제4항 중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은 “1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으로, <u>같은 조</u> 제5항 중 “1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이상”은 “1만분의 1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으로 본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②第191條의14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證券會社 株主의 株主提案의 行사요건 등에 <u>관하여 이를 準用한다.</u> 이 경우 第191條의14第1項중 “1千分の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の 5)이상”은 “1萬分の 5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萬分の 25)이상”으로 본다.</p> <p>第65條 내지 第69條 削除</p> <p>第3節 削除</p> <p>第69條의2 내지 第69條의5 削除</p> <p>第69條의6 削除</p> <p>第70條 削除</p> <p>第5章의2 (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 삭제</p> <p>第6章 한국증권선물거래소</p> <p>第1節 設立과 組織 삭제</p> <p>第2節 유가증권시장 및 <u>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u></p> <p>第84條 削除</p> <p>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u>의한</u>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p>	<p>②제19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권회사 주주의 주주제안의 행사요건 등에 <u>준용된다.</u> 이 경우 제191조의14제1항중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이상”은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이상”으로 본다.</p> <p>제65조 내지 제69조 삭제</p> <p>제3절 삭제</p> <p>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삭제</p> <p>제69조의6 삭제</p> <p>제70조 삭제</p> <p>제5장의2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11까지) 삭제</p> <p>제6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p> <p>제1절 설립과 조직 삭제</p> <p>제2절 유가증권시장 및 <u>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u></p> <p>제84조 삭제</p> <p>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자의 제한) 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u>에서</u>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다른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p>

현행	순화안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u>의하여</u>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87조·제94조제2항제5호·제95조내지 제97조·제99조·제100조·제206조의3제6항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6조제6호·제16조·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p> <p>第86條 削除</p> <p>第87條 (去來의 終結) ①會員이 去來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거래소는 그 會員 또는 다른 會員으로 하여금 당해 有價證券市場에서 행한 賣買去來를 終結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資格을 喪失한 會員은 賣買去來를 終結시키는 범위 안에서 會員의 資格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거래소가 다른 會員으로 하여금 당해 賣買去來를 終結시키는 때에는 당해 會員과 다른 會員과의 사이에 委任契約이 成立된 것으로 본다.</p> <p>第88條 (上場規程) ①削除 ②거래소는 有價證券市場에 上場할 有價證券의 審査 및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어 있는 有價證券(이하 “上場有價證券”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有價證券上場規程(이하 “上場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한다. ③第2項의 上場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有價證券의 上場基準·上場審査 및 上場廢止에 관한 事項 2.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정지와 그 解除에 관한 事項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에 上場有價證券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87조·제94조제2항제5호·제95조부터 제97조·제99조·제100조·제206조의3제6항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6조제6호·제16조·제1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p> <p>제86조 삭제</p> <p>제87조 (거래의 종결) ①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거래소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 안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과 다른 회원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p> <p>제88조 (상장규정) ①삭제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제89조 (공시규정)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내용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코스닥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제18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고 또는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상장법인이 신고 또는 <u>공시</u>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u>아니한</u> 주권상장법인의 결정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제89조 (공시규정)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내용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코스닥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제18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고 또는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상장법인이 신고 또는 <u>공시할 때 지켜야</u>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u>않은</u> 주권상장법인의 결정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제90조 내지 제93조 削除</p>	<p>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삭제</p>
<p>제94조 (業務規程) ①유가증권시장에 <u>서</u>의 매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p> <p>②第1項의 業務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賣買去來의 종류 및 受託에 관한 사항 2. 有價證券市場의 開閉·정지 또는 休場에 관한 사항 3. 賣買去來契約의 체결 및 決濟方法 	<p>제94조 (업무규정) ①<u>유가증권시장에 서</u> 매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p> <p>②제1항의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시장의 <u>시작과 끝</u>·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방법

현행	순화안
<p>4. 證據金の 납부 등 賣買去來의 規制에 관한 사항</p> <p>5. 삭 제</p> <p>5의2. 삭 제</p> <p>6. 삭 제</p> <p>7. 第1號 내지 제4호외에 賣買去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第95條 (違約損害賠償共同基金) ①會員은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를 賠償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違約損害賠償共同基金(이하 “賠償基金”이라 한다)을 積立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거래에 대한 結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회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제외한다)은 第1項의 賠償基金의 범위 안에서 會員의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賠償에 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p> <p>③第1項의 賠償基金의 積立率·積立限度·사용·管理·還付 기타 그 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96條 (證據金과 身元保證金の 債務辨濟에의 충당) 會員이 거래소 또는 다른 會員에 대하여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한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소는 당해 會員의 證據金과 身元保證金으로서 그 債務의 辨濟에 충당할 수 있다.</p> <p>第97條 (거래소의 損害賠償責任) ①거래소는 會員의 賣買去來의 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에 관하여 賠償의 責任을 진다.</p>	<p>4. 증거금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p> <p>5. 삭 제</p> <p>5의2. 삭 제</p> <p>6. 삭 제</p> <p>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①회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배상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거래에 대한 結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회원(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의 배상기금의 범위 안에서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p> <p>③제1항의 배상기금의 적립률·적립한도·사용·관리·환급 그 밖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6조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래소는 해당 회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써 그 채무의 변제에 充당할 수 있다.</p> <p>제97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거래소는 회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p>

현행	순화안
<p>②거래소가 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損害를 賠償하는 때에는 第95條의 規定에 <u>의하여</u> 積立된 賠償基金에서 <u>優先</u> 충당한다.</p> <p>③거래소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u>의하여</u> 損害를 賠償할 때에는 違約한 會員에 대하여 그 賠償한 金額과 이에 所要된 費用에 關하여 求償權을 가진다.</p> <p>④거래소는 第3項의 規定에 <u>의하여</u> 推尋된 金額에서 거래소가 賠償한 金額과 이에 所要된 費用에 <u>우선</u> 充당하고 殘額은 賠償基金에 補填한다.</p> <p>⑤第3項의 求償權의 행사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98條 削除</p> <p>第99條 (거래소의 다른 債權者에 대한 優先權) ①거래소는 證據金·身元保證金과 受渡決濟를 위하여 納入된 代金 및 有價證券에 關하여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p> <p>②거래소가 會員에게 受渡決濟完了전에 受渡證券을 引渡한 경우에 당해 會員이 그 受渡決濟를 履行하지 아니 함으로써 거래소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거래소는 그 會員의 財産에 關하여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다만, 당해 受渡決濟의 履行期限이 到來하기 전에 設定된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에 <u>의하여</u> 擔保된 債權에는 優先하지 못한다.</p> <p>第100條 (受託者의 違約으로 인한 委託者의 優先權과 거래소의 委託者에 대한 優先權) ①有價證券市場에서의</p>	<p>②거래소가 제1항의 規定에 <u>따라</u>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제95조의 規定에 <u>따라</u> 積립된 배상기금에서 <u>우선하여</u> 充당한다.</p> <p>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u>따라</u>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關하여 구상권을 가진다.</p> <p>④거래소는 제3항의 規定에 <u>따라</u> 추심된 금액에서 거래소가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u>우선하여</u> 充당하고 잔액은 배상기금에 보전한다.</p> <p>⑤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定한다.</p> <p>제98조 삭제</p> <p>제99조 (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①거래소는 증거금·신원보증금과 수도결제를 위하여 납입된 대금 및 유가증권에 關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p> <p>②거래소가 회원에게 <u>수도결제를 완료하기 전에</u> 수도증권을 인도한 경우에 해당 회원이 그 수도결제를 이행하지 않아서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거래소는 그 회원의 재산에 關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당해 수도결제의 이행 기한이 <u>이르기 전에</u>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u>따라</u>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p> <p>제100조 (수탁자의 위약으로 <u>말미암은</u> 위탁자의 우선권과 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①유가증권시장</p>

현행	순화안
<p>賣買去來를 委託한 者는 그 委託을 받은 會員이 委託契約을 違反한 때에 그 違反으로 인한 債權에 관하여 그 違約한 會員의 證據金과 身元保證金에 관하여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p> <p>②第99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에 優先하는 效力을 가진다.</p> <p>第101條 (<u>違約賣買의 禁止</u>)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委託을 받은 證券會社는 반드시 有價證券市場을 통하여 <u>賣買去來가 이루어지도록</u>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4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u>아니한다</u>.</p> <p>第102條 削 除</p> <p>第103條 (時勢公表) 거래소는 <u>大統領令</u>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價證券市場에서의 有價證券의 每日의 賣買去來量 및 그 成立價格과 最高·最低 및 最終價格을 표시하는 時勢를 公表하여야 한다.</p> <p>第104條 削 除</p> <p>第105條 및 第106條 削 除</p> <p>第107條 (一任賣買去來의 제한) ①證券會社는 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을 받은 경우 그 數量·價格 및 賣買의 時期에 한하여 그 決定을 一任 받아 賣買去來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有價證券의 종류·種目 및 賣買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顧客의 決定이 있어야 한다.</p>	<p><u>에서</u> 매매거래를 위탁한 자는 그 위탁을 받은 회원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u>경우에</u> 그 위반으로 <u>말미암은</u> 채권에 관하여 그 위약한 회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p> <p>②제99조의 규정에 <u>따른</u> 우선권은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우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p> <p>제101조 (<u>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매매거래</u>)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반드시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u>매매거래를</u>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u>않는다</u>.</p> <p>제102조 삭 제</p> <p>제103조 (시세공표) 거래소는 <u>대통령령에 따라</u>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04조 삭 제</p> <p>제105조 및 제106조 삭 제</p> <p>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 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은 <u>고객이 결정하여야</u> 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②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하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p> <p>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u>일임받아 이를</u>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자기 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 받는 행위 2.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p>③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하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p> <p>第108條 削除</p> <p>第3節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受託</p> <p>第109條 (受託場所의 제한 등) ①削除 ②證券會社는 電子通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賣買去來를 受託할 수 있다.</p> <p>第110條 및 第111條 削除</p>	<p>②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에 따라야 한다.</p> <p>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을 받아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자기 판단과 자기책임에 다른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 받는 행위 2.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p>③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에 따라야 한다.</p> <p>제108조 삭제</p> <p>제3절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수탁</p> <p>제109조 (수탁장소의 제한 등) ①삭제 ②증권회사는 전자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수탁할 수 있다.</p> <p>제110조 및 제111조 삭제</p>

현행	순화안
<p>第4節 會計와 監督</p> <p>第112條 (報告와 檢査)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業務 및 財産에 관한 報告 또는 參考가 될 資料의 제출을 命하고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그 業務·財産狀況·帳簿·書類 <u>기타</u>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5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檢査에 關하여 準用한다. ③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그 結果를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第113條 削 除</p> <p>第114條 削 除</p> <p>第115條 (規程의 承認) ①거래소가 有價證券市場을 管理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規程·上場規程 및 公示規程 <u>기타</u> 業務에 關한 規程(規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制定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財政 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p> <p>第116條 削 除</p> <p>第117條 (緊急事態에 대한 처분) ① 削 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天災·地變·戰時·事變·經濟事情의 急激한 變動 <u>기타</u> 이에 準하는 事態의 발생으로</p>	<p>제 4 절 회계와 감독</p> <p>제112조 (보고와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경우에</u>는 거래소<u>에게</u>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u>그 밖</u>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5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u>준용된다</u>.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u>따</u>라 검사를 <u>했</u>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13조 삭 제</p> <p>제114조 삭 제</p> <p>제115조 (규정의 승인) ①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u>그 밖</u>의 업무에 관한 규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u>제정</u>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 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16조 삭 제</p> <p>제117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삭 제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u>그</u> <u>밖</u>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u>인하여</u> 賣買去來가 正常的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u>때에는</u> 有價證券市場의 休場을 <u>순하거나 기타</u>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p> <p>第7章 (第118條 내지 第144條) 削除</p> <p>第8章 證券關係團體</p> <p>第1節 證券金融會社</p> <p>第145條 (設立) ①第147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行할 수 있는 者(이하 “證券金融會社”라 한다)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株式會社이어야 한다.</p> <p>②第1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 財政經濟 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名稱 2. 營業所의 所在地 3. 資本金과 資産에 관한 事項 <p>③第1項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定款과 業務에 관한 規程 2. 發起人의 履歷書와 身元證明書 3. 設立後 2年間의 事業計劃書와 收支豫算書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財政經濟部長官이 定하는 書類 <p>第146條 (資本金) 證券金融會社의 資本金은 20億원 이상이어야 한다.</p> <p>第147條 (業務) ①證券金融會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有價證券市場造成資金과 引受人에 대한 證券引受資金의 貸出業務 	<p>으로 <u>말미암아</u>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u>경우에는</u> 有價證券市場의 休장을 <u>명령하거나 그 밖의</u>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7장 (제118조 내지 제144조) 삭제</p> <p>제8장 증권관계단체</p> <p>제1절 증권금융회사</p> <p>제145조 (설립) ①제147조에서 規定하는 業務를 行할 수 있는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株式회사이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적은</u> 申請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 칭 2. 營業소의 소재지 3. 자본금과 자산에 관한 사항 <p>③제1항의 申請서에는 다음 各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과 업무에 관한 규정 2. 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3. 설립 <u>뒤 2년 동안의</u>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4. 제1호부터 <u>제3호까지</u>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定하는 서류 <p>제146조 (자본금) 증권금융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p> <p>제147조 (업무) ①증권금융회사는 다음 各호의 業務를 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시장조성자금과 인수인에 대한증권인수자금의 대출업무

현행	순화안
<p>2. 유가증권시장 및 <u>코스닥시장에서</u>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부하는 업무</p> <p>3. 有價證券을 擔保로 하는 貸出 및 有價證券貸與業務</p> <p>4. 一般投資者에 대한 請約資金을 引受人을 통하여 貸出하는 業務</p> <p>5. 大統領令이 정하는 <u>범위 안에서</u>의 債券賣買業務</p> <p>6. 有價證券과 관련된 保護預受業務</p> <p>7.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p> <p>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u>의한</u> 수탁회사 업무</p> <p>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u>의한</u> 자산보관회사 업무</p> <p>10. 제1호 내지 <u>제9호의</u> 業務 이외에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業務</p> <p>②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u>의하여</u> 신탁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신탁업법상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며, 신탁업법 제7조 제1항·제8조의2·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第148條 削除</p> <p>第149條 (任員의 制限) ①證券金融會社の 常務에 종사하는 任員(事實上 任員의 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證券會社の 任員 및 職員 이외의 者이어야 한다. ②제33條第2項 및 第80條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の 任員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常務에 종사하지 아</p>	<p>2. 유가증권시장 및 <u>코스닥시장에서</u>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부하는 업무</p> <p>3.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및 유가증권대여업무</p> <p>4.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자금을 인수인을 통하여 대출하는 업무</p> <p>5. 대통령령이 정하는 <u>범위 안에서</u> 채권매매업무</p> <p>6. 유가증권과 관련된 보호예수업무</p> <p>7.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p> <p>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u>따른</u> 수탁회사 업무</p> <p>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u>따른</u> 자산보관회사 업무</p> <p>10. 제1호부터 <u>제9호까지의</u> 업무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p> <p>②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u>따라</u> 신탁업을 영위할 때에는 신탁업법상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며, 신탁업법 제7조제1항·제8조의2·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u>적용되지 않는다</u>.</p> <p>제148조 삭제</p> <p>제149조 (임원의 제한) ①증권금융회사의 <u>일상적인 업무에</u> 종사하는 임원(사실상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 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80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u>준용된다</u>. 다만, <u>일상적인 업무에</u> 종사하지 <u>않는</u></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u>이하</u>는 任員에 한하여는 第80條第1號에 해당하는 者도 任員으로 選任될 수 있다.</p> <p>②제33조제2항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の 任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150條 削除</p> <p>第151條 (定款·規程의 보고) ①證券金融會社は 定款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證券金融會社は 그 業務에 관한 規程을 정하거나 變更 또는 廢止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削除</p> <p>第152條 削除</p> <p>第153條 (任員解任의 요구) 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金融會社の 任員이 不正한 方法에 의하여 選任되었거나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證券金融會社の 定款에 違反한 때에는 그 任員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154條 (任員등의 責任) 第58條와 韓國증권선물거래소법 第11조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 다만, 常勤하지 아니하는 任員에게는 同법 第11조제3항의 規定은 準用하지 아니한다.</p> <p>第155條 (法令違反 등에 대한 처분) ①第55條(同條第1項第5號 내지 第7號를 제외한다)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에 대한 證券金融業許可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는 “財政經濟部長官”으로 본다.</p>	<p>임원의 경우에는 第8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p> <p>②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준용된다.</p> <p>제150조 삭제</p> <p>제151조 (정관·규정의 보고) ①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삭제</p> <p>제152조 삭제</p> <p>제153조 (임원해임의 요구)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부정한 방법에 따라 선임되었거나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54조 (임원 등의 책임) 제58조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1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준용된다. 다만, <u>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u> 임원에게는 <u>같은 법</u>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p> <p>제155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제55조(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증권금융업허가의 취소에 준용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p>

현행	순화안
<p>②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金融會社가 다음 各號의 <u>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p> <p>1. 제147조제1항 제10호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u>아니하고</u> 業務를 행한 경우</p> <p>2. 正當한 사유 없이 第153條의 規定에 의한 任員解任要求에 응하지 <u>아니한</u> 경우</p> <p>3. 第154條의 <u>規定</u>에 위반한 경우</p> <p>第156條 削除</p> <p>第157條 (檢査) 第53條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에 <u>관하여 準用한다.</u> 이 경우 第53條第5項第1號중 “證券業의 許可取消”은 “財政經濟部長官에 대한 許可取消의 요청”으로 본다.</p> <p>第158條 (業務의 廢止와 解散) 證券金融會社의 業務의 廢止 또는 解散의 決議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p> <p>第159條 削除</p> <p>第160條 (社債의 發行) ①證券金融會社는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資本金과 準備金의 合計額의 20 배를 초과하지 <u>아니하는</u> 범위 안에서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證券金融會社가 發行하는 社債는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u>의한</u> 債券으로 본다.</p> <p>③證券金融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發生한 社債의 償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이 경우 發行 후 1月 이내에 이미 發行한 社債를 償還하여야 한다.</p>	<p>②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u>6개월 이내의</u>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147조제1항 제10호의 規定에 <u>따른</u> 승인을 얻지 <u>않고</u> 業務를 행한 경우</p> <p>2. 正當한 사유 없이 제153조의 規定에 <u>따른</u> 임원해임요구에 응하지 <u>않은</u> 경우</p> <p>3. 제154조의 <u>규정</u>을 위반한 경우</p> <p>제156조 삭제</p> <p>제157조 (검사) 제53조의 規定은 증권금융회사에 <u>준용된다.</u> 이 경우 제53조제5항제1호중 “증권업의 허가취소”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허가취소의 요청”으로 본다.</p> <p>제158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증권금융회사의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결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59조 삭제</p> <p>제160조 (사채의 발행) ①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規定에<u>도</u> 불구하고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 배를 초과하지 <u>않는</u> 범위 안에서 사채를 發行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規定에 <u>따라</u> 증권금융회사가 發行하는 사채는 제2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u>따른</u> 채권으로 본다.</p> <p>③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規定에 <u>따라</u> 發生한 사채의 償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發行할 수 있다. 이 경우 發行 후 <u>1개월</u> 이내에 이미 發行한 사채를 償還하여야 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④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證券金融會社의 社債 發行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61條 (證券會社資金의 預託等) ① 證券金融會社는 거래소·證券會社 <u>기타</u> 證券關係機關과 財政經濟部令이 定하는 者로부터 資金의 預託을 받을 수 있다.</p> <p>②證券金融會社는 第1項의 業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財政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u>의하여</u> 債務證書를 發行할 수 있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는 韓國銀行法과 銀行法을 適用하지 <u>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節 韓國證券業協會</p> <p style="text-align: center;">第1款 設立 및 監督</p> <p>第162條 (設立) ①證券會社 상호간의 業務秩序를 유지하고 有價證券의 公정한 買賣去來 및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韓國證券業協會를 設立한다.</p> <p>②協會는 <u>會員組織으로서의</u> 法人으로 한다.</p> <p>③協會는 <u>그</u> 주된 事務所를 서울특별시 에 두고 필요한 곳에 支會를 둘 수 있다.</p> <p>④協會는 <u>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u>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 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p> <p>第162條의2 (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會員간의 건전한 營業秩序 유지 및 投資者保護를 위한 業務 2. 회원의 營業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關한 업무 	<p>④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發行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령령으로 定한다.</p> <p>제161조 (증권회사자금의 예탁 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거래소·증권회사 <u>그 밖에</u> 증권관계기관과 재정경제부령이 定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p> <p>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u>에 따라</u> 채무증서를 發行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 行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u>않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한국증권업협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관 설립 및 감독</p> <p>제162조 (설립) ①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公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를 설립한다.</p> <p>②협회는 <u>회원조직인</u> 법인으로 한다.</p> <p>③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p> <p>④협회는 大統령령에 <u>따라</u>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u>할 때</u> 설립된다.</p> <p>제162조의2 (업무) 협회는 다음 各호의 업무를 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 2. 회원의 營業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關한 업무

현행	순화안
<p>2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시행일부칙 제1조 참조>></p> <p>3. 第28條第2項第2號의 營業의 健全한 營業秩序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p> <p>4. 證券關聯制度的 調査·研究</p> <p>5. 證券研修業務</p> <p>6. 第1號 내지 第5號에 附隨되는 業務</p> <p>7. 第1號 내지 第6號외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p> <p>제162조의3 삭제</p> <p>第163條 (定款의 記載事項) 協會의 定款에 記載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64條 (規程의 申告 등) ①協會가 業務에 관한 規程을 定하거나 變更 또는 廢止한 때에는 10日이내에 그 內容을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p> <p>②協會는 定款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第165條 (會費) 協會는 會員으로부터 定款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會費를 徵收할 수 있다.</p> <p>第166條 削除</p> <p>第167條 削除</p> <p>第168條 (業務의 停止등의 命令)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p>	<p>2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p> <p>3.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의 健全한 營業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p> <p>4. 증권관련제도의 조사·연구</p> <p>5. 증권연수업무</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에 대통령령이 定하는 업무</p> <p>제162조의3 삭제</p> <p>제163조 (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4조 (규정의 신고 등) ①협회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65조 (회비)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66조 삭제</p> <p>제167조 삭제</p> <p>제168조 (업무의 停止등의 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益 또는</p>

현행	순화안
<p>보호를 위하여 <u>協會에 대하여 그 業務의 停止를 命하거나 당해 任員의 解任을 要求할 수 있다.</u></p> <p>1. <u>協會가 法令 또는 法令에 의한 行政官廳의 處分에 違反한 때</u></p> <p>2. <u>協會의 任員이 協會의 定款 또는 業務에 관한 規程에 違反하거나 職權을 濫用한 때</u></p> <p>第169條 (任員·監督等) 第33條·第42條·第53條 및 第117條의 規定은 <u>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u></p> <p>第170條 (民法의 準用) <u>協會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대하여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u></p> <p>第171條 (類似名稱 사용의 금지) 韓國 證券業協會가 아닌 者는 證券業協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p> <p>第172條 (證券研修院) 協會는 證券業務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을 向上시키고 證券에 관한 專門의인 知識을 普及하기 위하여 證券研修院을 둘 수 있다.</p> <p>第2款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및 매매 거래</p> <p>第3節 證券預託院</p> <p>第173條 (設立) ①有價證券의 集中預託과 計座間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하 “<u>預託院</u>”이라 한다)을 設立한다.</p>	<p>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u>협회에게</u> 업무의 정지를 <u>명령하거나 해당</u>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p> <p>1. 협회가 법령 또는 법령에 <u>따른</u> 행정관청의 <u>처분</u>을 위반한 <u>경우</u></p> <p>2.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에 관한 <u>규정</u>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u>경우</u></p> <p>제169조 (임원·감독 등) 제33조·제42조·제53조 및 제117조의 규정은 <u>협회에 준용된다.</u></p> <p>제170조 (민법의 준용) <u>민법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에 준용된다.</u></p> <p>제17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한 국증권업협회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172조 (증권연수원) 협회는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증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증권연수원을 둘 수 있다.</p> <p>제2관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및 매매 거래</p> <p>제3절 증권예탁원</p> <p>제173조 (설립) ①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하 “<u>예탁원</u>”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현행	순화안
<p>②預託院은 法人으로 한다.</p> <p>③預託院은 <u>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第173條의2 (業務) ①預託院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有價證券의 集中預託業務 2. 有價證券의 計座間對替業務 3. 預託院과 유사한 業務를 영위하는 外國法人(이하 “外國預託機關”이라 한다)과의 計座設定을 통한 有價證券預託 및 計座間對替業務 4. 有價證券의 名義改書代行業務(有價證券에 대한 配當, 利子 및 償還金の 支給代行業務와 有價證券의 發行代行業務를 포함한다) 5. 有價證券의 保護預受業務 6. 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외에 이 법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부여된 業務 7.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부수되는 業務 8. 第1號 내지 第7號외에 定款에서 정하는 業務 <p>②削 除</p> <p>第173條의3 (預託業務營爲등의 금지) 預託院이 아닌 者는 有價證券을 預託받아 그 有價證券의 授受에 갈음하여 計座간의 대체로 決濟하는 業務를 영위할 수 없다.</p> <p>第173條의4 (定款의 기재사항) 預託院의 定款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②예탁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예탁원은 <u>대통령령에 따라</u>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때 설립된다.</p> <p>제173조의2 (업무) ①예탁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 2. 유가증권의 계좌간대체업무 3. 예탁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예탁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유가증권예탁 및 계좌간대체업무 4.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유가증권에 대한 배당, 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대행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대행업무를 포함한다) 5.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6. 제1호부터 <u>제5호까지의 업무 이외에</u>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업무 7. 제1호부터 <u>제6호까지의</u>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8. 제1호부터 <u>제7호까지 이외에</u>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p>②삭 제</p> <p>제173조의3 (예탁업무영위등의 금지) 예탁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p> <p>제173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 예탁원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1. 目的 2. 명칭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株式 및 資本金에 관한 사항 4의2. 주식의 취득자격 및 보유한도에 관한 사항 5. 株主總會 및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任員에 관한 사항 7. 會計에 관한 사항 8. 公告의 방법</p> <p>第173條의5 (商法の 準用) 預託院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u>의한</u> 命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第173條의6 (任員) ①預託院의 任員은 社長·專務理事·理事 및 監事로 한다. ②社長은 株主總會에서 選出하되,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常任監事는 株主總會에서 選出한다.</p> <p>第173條의7 (預託對象有價證券의 지정) ①預託院에 預託할 수 있는 有價證券(이하 “預託對象有價證券”이라 한다)은 預託院이 지정한다. ②削 除</p> <p>第173條의8 (發行內譯 및 事故有價證券內譯 通告 등) ①預託對象有價證券의 發行人은 새로이 有價證券을 발행하는 경우 그 有價證券의 종류 <u>기타</u>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預託院에 <u>지체없이</u> 通告하여야 한다. ②預託對象有價證券의 發行人은 有價證券의 押留·假押留 또는 假處分の 命令에 관한 通告를 받거나 도난·</p>	<p>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4의2. 주식의 취득자격 및 보유한도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p> <p>제173조의5 (상법의 준용) 예탁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u>따른</u>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u>없는 한</u>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73조의6 (임원) ①예탁원의 임원은 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상임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p> <p>제173조의7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①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예탁대상유가증권”이라 한다)은 예탁원이 지정한다. ②삭 제</p> <p>제173조의8 (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通告 등) ①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새로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u>그 밖에</u>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u>바로</u> 通告하여야 한다. ②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通告를 받거나 도난·</p>

현행	순화안
<p>분실 또는 멸실된 有價證券에 대한 事故申告(民事訴訟法에 의한 公示催告 및 除權判決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有價證券의 종류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預託院에 <u>지체없이</u> 통지하여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u>의하여</u> 통지를 받은 預託院은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한다.</p> <p>第174條 (預託院에의 預託등) ①預託院에 有價證券을 預託하고자 하는 자는 預託院에 計座를 開設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計座를 開設한 자(이하 “<u>預託者</u>”라 한다)는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有價證券과 顧客으로부터 <u>預託받은</u> 有價證券을 顧客의 同意를 얻어 預託院에 預託할 수 있다.</p> <p>③預託院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u>기제하여</u> 預託者計座簿를 작성·비치하되, 預託者의 自己所有分과 顧客預託分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預託者의 名稱 및 住所 2. <u>預託받은</u> 有價證券(이하 “<u>預託有價證券</u>”이라 한다)의 종류 및 數와 그 發行人의 명칭 3. <u>기타는</u>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 <p>④預託院은 預託有價證券을 종류·種目別로 混合하여 보관할 수 있다.</p> <p>⑤預託者 또는 그 顧客이 有價證券을 引受 또는 請約하거나 <u>기타의</u> 사유로 새로이 有價證券의 발행을 請求하는 경우에 <u>당해</u> 有價證券의 발행인은 預託者 또는 그 顧客의 申請</p>	<p>분실 또는 멸실된 有價證券에 대한 事故申告(民事訴訟法에 의한 公示催告 및 除權判決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有價證券의 종류 <u>그 밖의</u>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預託院에 <u>바로</u>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u>따라</u> 통지를 받은 預託院은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한다.</p> <p>제174조 (예탁원에의 예탁 등) ①예탁원에 有價證券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規定에 <u>따라</u>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u>예탁자</u>”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有價證券과 고객으로부터 <u>예탁을</u> 받은 有價證券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다.</p> <p>③예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적은</u>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고객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u>예탁을</u> 받은 有價證券(이하 “<u>예탁유가증권</u>”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u>그 밖에</u>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p>④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p> <p>⑤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有價證券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u>그 밖의</u> 사유로 새로이 有價證券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u>해당</u> 有價證券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의 신청에</p>

현행	순화안
<p>에 <u>의하여</u> 이들에 갈음하여 預託院을 名義人으로 하여 <u>당해</u> 有價證券을 발행 또는 登錄(國債法 또는 公社債登錄法에 의한 登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p> <p>第174條의2 (顧客의 預託者에의 預託등) ①顧客으로부터 <u>預託받은</u> 有價證券을 預託院에 다시 預託하는 預託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u>기재하여</u> 顧客計座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顧客의 姓名 및 住所 預託有價證券의 종류 및 數와 그 發行人의 명칭 <u>기타</u>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 <p>②預託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한 <u>때에는 당해</u> 有價證券이 顧客預託分이라는 것을 <u>명시하여</u> 지체 없이 預託院에 預託하여야 한다.</p> <p>③預託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한 <u>때에는</u> 第2項의 規定에 <u>의하여 당해</u> 有價證券을 預託院에 預託하기 전까지는 <u>이를</u> 自己所有分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顧客計座簿에 기재된 有價證券은 그 기재 시에 預託院에 預託된 것으로 본다.</p> <p>第174條의3 (計座簿記載의 效力) ①顧客計座簿와 預託者計座簿에 <u>기재된</u> 者는 각각 그 有價證券을 占有하는 것으로 본다.</p> <p>②顧客計座簿와 預託者計座簿에의 對替의 기재가 有價證券의 讓渡 또는 <u>質權設定</u>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有價證券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p>	<p><u>따라</u> 이들에 갈음하여 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u>해당</u>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p> <p>제174조의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①고객으로부터 <u>예탁을</u> 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적은</u>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성명 및 주소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u>그 밖에</u>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p>②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기재를 한 <u>경우에는 해당</u>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u>밝히고 바로</u>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p> <p>③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기재를 한 <u>경우에는</u> 제2항의 규정에 <u>따라 해당</u>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고객계좌부에 <u>적힌</u> 유가증권은 <u>이를 적을 때</u>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p> <p>제174조의3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u>적힌</u>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p> <p>②고객계좌부와 <u>예탁자계좌부에</u>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u>질권의</u>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效力이 있다.</p>

현행	순화안
<p>③預託有價證券의 信託은 信託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預託者 計座簿 또는 顧客計座簿에 信託財産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p> <p>④株券發行전에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賣買去來를 顧客計座簿 또는 預託者計座簿상 計座間 對替의 방법으로 決濟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335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發行會社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p> <p>第174條의4 (權利推定등) ①預託者의 顧客과 預託者는 각각 顧客計座簿와 預託者計座簿에 기재된 有價證券의 종류·種目 및 數量에 따라 預託有價證券에 대한 共有持分을 가지는 것으로 推定한다.</p> <p>②預託者의 顧客이나 그 質權者는 預託者에 대하여 預託者는 預託院에 대하여 언제든지 公有持分에 해당하는 預託有價證券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質權의 目的으로 되어 있는 預託有價證券에 대하여는 質權者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p> <p>③預託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預託有價證券중 顧客預託分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p> <p>第174條의5 (補填義務) ①預託有價證券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預託院 및 第174條의2第1項에 規定된 預託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및 節次에 따라 이를 補填하여야 한다. 이 경우 預託院 및 預託者는 그 부족에</p>	<p>③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적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p> <p>④주권발행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p> <p>제174조의4 (권리추정 등) ①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적힌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예탁자의 고객이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게, 예탁자는 예탁원에게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유가증권은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p> <p>③예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예탁유가증권 중 고객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174조의5 (보전의무) ①예탁유가증권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탁원 및 제17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원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p>

현행	순화안
<p>대한 責任이 있는 <u>者に 대하여</u>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預託者は 第1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座를 閉鎖한 때 이후에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填責任을 부담한다. 다만, 計座를 閉鎖한 때로부터 5年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責任은 消滅한다.</p> <p>第174條의6 (預託有價證券의 權利行使)</p> <p>①預託院은 預託者 또는 顧客의 申請에 의하여 預託有價證券에 관한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顧客의 申請은 預託者를 거쳐야 한다.</p> <p>②預託院은 預託有價證券에 대하여 自己名義로 名義改書 또는 登錄을 請求할 수 있다.</p> <p>③預託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己名義로 名義改書된 株式에 대하여는 預託者의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商法 第358條의2에 規定된 사항과 株主名簿의 기재 및 株券에 관하여 株主로서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p> <p>④株券의 發行會社가 株主總會 召集의 통지 또는 <u>公告</u>를 하는 경우에 預託院의 名義로 名義改書된 株券을 소유하고 있는 株主에 대하여는 第5項에 規定된 預託院의 議決權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u>公告</u>하여야 한다.</p> <p>⑤預託院의 名義로 名義改書된 株券을 소유하고 있는 株主가 株主總會 會日の 5日전까지 預託院에 그 議決權을 직접행사·代理行使 또는 不行使의 뜻을 표시하지 <u>아니하는</u> 경우에는 預託院이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p>	<p>책임이 있는 <u>자에게</u>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예탁자는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계좌를 <u>폐쇄했을 때 그 뒤에도</u>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보전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u>때부터 5년이 경과되면</u> 그 책임은 <u>소멸된다.</u></p> <p>제174조의6 (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p> <p>①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고객의 <u>신청에 따라</u>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p> <p>②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예탁원은 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④주권의 발행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u>널리 알리는</u> 경우에 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5항에 규정된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u>널리 알려야</u> 한다.</p> <p>⑤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예탁원에 그 의결권을 직접행사·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u>않는</u> 경우에는 예탁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현행	순화안
<p>있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株券의 發行會社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預託院의 議決權行使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u>공고하지 아니한 경우</u> 2. 당해 株券의 發行會社가 預託院으로 하여금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하게 할 것을 金融監督委員會에 요청하는 경우 3. 당해 株主總會의 會議目的 사항이 商法 제360조의3·제360조의16·제374조·第438條·第518條·第519條·第522條·第530條의3 및 第604條에 規定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당해 株主가 株主總會에서 議決權을 직접행사 또는 <u>代理行使하는 경우</u> <p>⑥제1항의 規定에 의한 預託院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행회사가 預託院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제5항의 規定에 의한 預託院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제3항의 規定은 預託有價證券중 記名式有價證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第174條의7 (實質株主의 權利行使등)</p> <p>①預託有價證券중 株券의 共有者(이하 “<u>實質株主</u>”라 한다)는 <u>株主로서의 權利行使에 있어서는</u> 각각 第17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有持分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②實質株主는 第174條의6第3項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행사할 수 없다.</p>	<p>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주권의 발행회사가 제4항의 規定에 따른 예탁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u>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u> 2. 해당 주권의 발행회사가 예탁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金融감독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16·제374조·제438조·제518조·제519조·제522조·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規定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해당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u>대리행사를 하는 경우</u> <p>⑥제1항의 規定에 따른 예탁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행회사가 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제5항의 規定에 따른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제3항의 規定은 예탁유가증권 중 기명식유가증권에 <u>준용된다.</u></p> <p>제174조의7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p> <p>①예탁유가증권 중 주권의 공유자(이하 “<u>실질주주</u>”라 한다)는 <u>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u> 각각 제174조의4제1항의 規定에 따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②실질주주는 제174조의6제3항의 規定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다만, 會社의 株主에 대한 통지 및 商法 第396條第2項의 規定에 <u>의한</u> 株主名簿의 閱覽 또는 謄寫에 대하여는 <u>그렇지 않다</u>.</p> <p>③預託有價證券중 株券의 發行會社가 商法 第354條의 規定에 <u>의하여</u>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預託院에 이를 <u>지체없이</u> 통지하여야 하며, 預託院은 그 期間의 初日 또는 그날(이하 이 條에서 “株主名簿閉鎖基準日”이라 한다)의 實質株主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u>지체없이</u> 당해 株券의 發行會社 또는 名義改書를 代理하는 會社에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姓名 및 住所 2.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株式의 종류 및 數 <p>④預託院은 第174條의2第1項에 規定된 預託者에게 株主名簿閉鎖基準日의 實質株主에 관하여 第3項 各號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預託者는 <u>지체없이</u>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公開買受申告書가 제출된 株式등의 發行人이 株式의 所有狀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預託院에 實質株主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第174條의8 (實質株主名簿의 작성 등)</p> <p>①第174條의7第3項의 規定에 <u>의하여</u> 통지받은 發行會社 또는 名義改書를 代理하는 會社는 통지받은 사항과 <u>通知年月日</u>을 기재하여 實質株主名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는 <u>그렇지 않다</u>.</p> <p>③예탁유가증권 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u>따라</u>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u>경우에는</u> 예탁원에 이를 <u>바로</u>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원은 그 기간의 <u>첫날</u> 또는 그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바로 해당</u>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주식의 종류 및 수 <p>④예탁원은 제17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u>바로</u>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공개매수 신고서가 제출된 주식 등의 발행인이 주식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u>준용된다</u>.</p> <p>제174조의8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p> <p>①제174조의7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u>통지날짜를 적은</u>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②預託院에 預託된 株券의 株式에 관한 實質株主名簿에의 기재는 株主名簿에의 기재와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行會社 또는 名義改書를 代理하는 會社는 株主名簿에 株主로 기재된 者와 實質株主名簿에 實質株主로 기재된 者가 同一人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株主로서의 權利行使에 있어서 株主名簿의 株式數와 實質株主名簿의 株式數를 合算하여야 한다.</p> <p>第174條의9 (民事執行) 預託有價證券에 관한 強制執行·假押留 및 假處分の 執行 또는 競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p> <p>第174條의10 (實質株主證明書) ①預託院은 預託者 또는 그 顧客이 株主로서의 權利를 행사하기 위하여 有價證券의 預託을 증명하는 文書(이하 “<u>實質株主證明書</u>”라 한다)의 발행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顧客의 申請은 預託者를 거쳐야 한다.</p> <p>②預託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質株主證明書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發行會社에 대하여 그 사실을 <u>지체없이</u> 통지하여야 한다.</p> <p>③預託者 또는 그 顧客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實質株主證明書를 發行會社에 제출한 경우에는 商法 第33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發行會社에 대하여 對抗할 수 있다.</p> <p>第174條의11 (外國預託機關 및 外國법인 등의 預託등에 관한 特例) ①第174</p>	<p>②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다른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p> <p>제174조의9 (민사집행)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4조의10 (실질주주증명서) ①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u>실질주주증명서</u>”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p> <p>②예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다.</p> <p>제174조의11 (외국예탁기관 및 외국법인 등의 예탁등에 관한 특례) ①제174</p>

현행	순화안
<p>조의2, 第174條의5, 第174條의6第4項 내지 第6項, 第174條의7 및 第174條의8第3項의 規定은 外國預託機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外國預託機關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74조제5항, 제174조의6제4항 내지 제6항, 제174조의7, 제174조의8 및 제174조의10의 규정은 預託有價證券의 발행인이 외국법인 등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 등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174條의12 (보고 및 확인 등) 預託院은 預託者에 대하여 預託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關聯帳簿의 閱覽 또는 預託者 自體保管 有價證券의 保管狀況등을 확인할 수 있다.</p> <p>第175條 (規程의 보고) 預託院은 預託 기타 業務에 관한 規程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廢止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第176條 削除</p> <p>第176條의2 (有價證券의 관리) ①上場法人·코스닥상장법인 및 名義改書代行業社(第180條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有價證券의 用紙·발행·消却·교체발행·폐기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預託院이 정하는 有價證券取扱規程에 따라야 한다.</p> <p>②預託院은 上場法人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有價證券의 발행을 위하여 예</p>	<p>조의2, 제174조의5, 제174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4조의7 및 제174조의8제3항의 규정은 외국예탁기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예탁기관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제174조제5항, 제174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4조의7, 제174조의8 및 제174조의10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외국법인 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 등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174조의12 (보고 및 확인 등) 예탁원은 <u>예탁자에게</u>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關聯帳簿의 閱覽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유가증권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p> <p>제175조 (규정의 보고) 예탁원은 예탁 <u>그 밖의</u>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u>경우에는</u>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76조 삭제</p> <p>제176조의2 (유가증권의 관리) ①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제18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유가증권의 용지·발행·소각·교체발행·폐기 <u>그 밖의</u> 관리에 관하여 예탁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p> <p>②예탁원은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예</p>

현행	순화안
<p>비로 보관하고 있는 有價證券用紙(이하 “豫備證券”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p> <p>③預託院은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u> 上場法人·코스닥상장법인 및 名義改書代行會社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有價證券의 事務取扱節次와 豫備證券의 관리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④非上場法人이 발행하는 有價證券에 관하여 預託院의 有價證券取扱規程에 <u>의한</u> 用紙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預託院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上場法人이 非上場法人으로 된 경우로서 預託院의 有價證券取扱規程에 의한 用紙와 그 用紙에 <u>의하여</u> 발행한 有價證券이 전부 폐기될 때까지 이를 準用한다.</p> <p>第177條 削除</p> <p>제178조 (임원·감독 등) 제59조 내지 제61조·제117조·제157조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5조제2항·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u>예탁원에 관하여</u> 이를 준용한다.</p> <p>第4節 仲介會社·名義改書代行會社等</p> <p>第179條 (仲介會社) ①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仲介業務를 營爲할 수 있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株式會社이어야 한다.</p>	<p>비로 보관하고 있는 有價증권용지(이하 “예비증권”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p> <p>③예탁원은 <u>필요한 경우에는</u>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유가증권의 사무취급절차와 예비증권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④비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u>다른</u>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된 경우로서 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용지와 그 용지에 <u>따라</u> 발행한 유가증권이 전부 폐기될 때까지 <u>준용된다</u>.</p> <p>제177조 삭제</p> <p>제178조 (임원·감독 등)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제117조·제157조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5조제2항·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u>예탁원에 준용된다</u>.</p> <p>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등</p> <p>제179조 (중개회사) ①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以下 “<u>仲介會社</u>”라 한다)는 <u>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仲介業務를 수행함에 필요한 有價證券의 賣買業務를 할 수 있다.</u></p> <p>③<u>仲介會社는 그 業務와 財産에 관하여 거래소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u></p> <p>④第53條·第149條·第151條第1項·第153條·第154條·第155條 및 第158條의 規定은 <u>仲介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u></p> <p>第180條 (名義改書代行會社) ①有價證券의 名義改書を 代行하는 業務를 營爲할 수 있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한 株式會社이어야 한다.</p> <p>②名義改書代行會社는 有價證券의 配當·利子 및 償還金의 支給을 代行하는 業務와 有價證券의 발행을 代行하는 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p> <p>③제53조·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2항·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u>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p>第181條 (기타 證券關係團體의 許可·監督) ①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와 有價證券市場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有價證券投資者·株券上場法人 <u>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構成되는 團體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u></p> <p>②第53條·第151條第1項 및 第16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證券關係團體에 <u>관하여 準用한다.</u></p>	<p>②제1항의 規定에 <u>따른</u>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개회사”라 한다)는 <u>유가증권시장에서</u> 매매거래의 <u>중개업무에</u>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있다.</p> <p>③중개회사는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거래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제53조·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 및 제158조의 규정은 <u>중개회사에 준용된다.</u></p> <p>제180조 (명의개서대행회사) ①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p> <p>②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p> <p>③제53조·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2항·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u>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된다.</u></p> <p>제181조 (<u>그 밖에</u> 증권관계단체의 허가·감독) ①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와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유가증권투자자·주권상장법인 <u>그 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u>대통령령에 따라</u> 재정경제부장관의 <u>인가를</u> 받아야 한다.</p> <p>②제53조·제151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은 제1항의 <u>인가를</u> 받아 설립한 증권관계단체에 <u>준용된다.</u></p>

현행	순화안
<p>第9章 上場法人등의 관리</p> <p>第1節 上場法人등의 公示</p> <p>第182條 削除</p> <p>第183條 내지 第185條 削除</p> <p>第186條 (上場法人 등의 申告·公示義務 등) ①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事實 또는 理事會의 決議內容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지체없이</u>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에 申告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행한 어음 또는 手票가 不渡로 되거나 銀行과의 去來가 정지 또는 금지된 <u>때</u> 2. 營業活動의 一部 또는 全部가 정지된 <u>때</u> 3. 法律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整理節次開始의 申請이 있거나 事實上 整理를 開始한 <u>때</u>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는 <u>때</u> 5. 災害로 인하여 莫大한 損害를 입은 <u>때</u> 6. 上場有價證券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訴訟이 提起된 <u>때</u> 7. 商法 第374條·第522條·第527條의2·第527條의3 및 第530條의2에서 規定한 事實이 발생한 <u>때</u> 8. 法律에 의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u>때</u> 9. 增資, 減資 또는 주식의 消却에 관한 理事會의 決議가 있는 <u>때</u> 	<p>제9장 상장법인등의 관리</p> <p>제1절 상장법인등의 공시</p> <p>제182조 삭제 <97·1·13></p> <p>제183조부터 제185조까지 삭제</p> <p>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등)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u>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 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u>바로</u>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u>경우</u>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u>경우</u> 3. 법률의 규정에 <u>다른</u> 법인의 <u>정리 절차시작</u>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u>시작한 경우</u>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는 <u>경우</u> 5. 재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u>경우</u> 6.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u>경우</u> 7.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u>경우</u> 8. 법률에 <u>다른</u> 해산사유가 발생한 <u>경우</u>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 의 결의가 있는 <u>경우</u>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操業을 중단하거나 操業을 계속할 수 없는 때</p> <p>11. 去來銀行에서 당해 法人의 管理를 開始한 때</p> <p>12. 自己株式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理事會의 決議 또는 代表理事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의 결정이 있을 때</p> <p>13. 第1號 내지 第12號외에 法人의 경영·財産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p> <p>②거래소는 有價證券의 공정한 去來와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한 風聞 및 報道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法人이 발행한 有價證券의 價格이나 去來量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第188條의2의 規定에 의한 중요한 情報의 유무에 대한 公示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法令·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公示하기가 곤란한 경우 외에는 당해 法人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거래소는 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또는 公示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 第193條에 規定하는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第8條第2項·第14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p>	<p>10. 특별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p> <p>11. 거래은행에서 해당 법인의 관리를 시작한 경우</p> <p>12.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을 경우</p> <p>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p> <p>②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8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해당 법인은 바로 응하여야 한다.</p> <p>③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또는 공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제19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8조제2항·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p>

현행	순화안
<p> 告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1·13, 99·2·1> ⑤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는 第1項 第1號·第3號·第6號·第8號 및 第11號의 사항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또는 公示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投資者의 投資判斷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u>있다고 인정되는</u>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情報의 제공 또는 交換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第186條의2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株券上場法人,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事業年度 經過 후 90日내에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第1項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會社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제189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u>기재하여야</u> 한다. ③法人이 최초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 제출대상 法人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u>지체없이</u>(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의 제출기간 중에 事業報告書 제출대상 法人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提出期限까지) 직전 事業年度의 事業報告書를 </p>	<p> 신고의 경우에 <u>준용된다.</u> <신설 97·1·13, 99·2·1> ⑤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u>다른</u> 확인 또는 공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u>있는</u> 경우에는 大統領令에 따라 행정기관 <u>그 밖의</u>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p> <p> 제186조의2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u>그 밖에</u> 大統領令이 정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가 <u>지난 뒤</u> 90일 <u>이내에</u>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제189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u>적어야</u> 한다. ③법인이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u>될</u> 때에는 <u>바로</u>(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u>될</u> 때에는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 </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당해</u> 法人이 有價證券申告書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事業年度の 事業報告書에 준하는 사항을 公示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사업보고서는 金融監督委員會가 業種別·事業部門別로 정하는 기재방법 및 書式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p>⑤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事業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하는 法人이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法律 第1條의3의 規定에 <u>의하여</u>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하는 企業集團의 所屬會社인 경우에는 <u>同法</u> 第1條의2 第3號의 規定에 <u>의한</u>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를 事業年度 종료 후 <u>6개월 이내</u>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第186條의3 (半期報告書 등의 제출) 第186條의2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法人은 그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u>6개월</u>의 사업보고서(이하 “半期報告書”라 한다)와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u>3개월</u> 및 <u>9개월</u>의 사업보고서(이하 “分期報告書”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u>경과 후 45일내에</u>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第186條의4 (外國法人등에 대한 特例) 第186條의2 및 第186條의3의 規定에 <u>불구하고</u> 外國法人등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u>바에 따라</u> 提出期限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p>	<p>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해당</u> 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④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업종별·사업부문별로 정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3의 규정에 <u>따라</u>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u>같은 법</u>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u>따른</u>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u>6개월 이내</u>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6조의3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u>시작일</u> 부터 <u>6개월 동안</u>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u>시작일</u>부터 <u>3개월</u> 및 <u>9개월 동안</u>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이 <u>지난 뒤</u> 45일 <u>이내에</u>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6조의4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u>도 불구하고</u>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u>따라</u>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p>

현행	순화안
<p>第186條의5 (準用規定) 제8조제2항·제4항, 第1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4條 내지 第16條, 第18條,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사업보고서, 半期報告書 및 分期報告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第187條 削除</p> <p>第2節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등</p> <p>第188條 (內部者の 短期賣買差益 반환 등)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분의 10이상의 株式 또는 出資證券을 소유한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었거나 協會에 登錄된 당해 法人의 株券(出資證券을 포함한다)·轉換社債券·新株引受權附社債券·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賣渡하지 못한다.</p> <p>②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가 그 法人의 株券등을 買受한 후 6月이내에 賣渡하거나 그 法人의 株券등을 賣渡한 후 6月이내에 買受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法人은 그 이익을 그 法人에게 제공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算定基準·返還節次 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186조의5 (준용규정) 제8조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準용된다.</p> <p>제187조 삭제</p> <p>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p> <p>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u>의결권이 있는</u>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u>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을 매도하지 못한다.</u></p>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u>6개월 이내에</u>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u>6개월 이내에</u>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계산기준·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③<u>당해</u> 法人의 株主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그 法人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u>당해</u> 法人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月내에 그 請求를 하지 <u>아니하는 때에는</u> 그 株主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u>당해</u> 法人을 代位하여 그 請求를 할 수 있다.</p> <p>④第3項의 規定에 <u>의하여</u> 訴를提起한 株主 또는 證券先物委員會가 勝訴한 때에는 證券先物委員會 또는 그 株主는 <u>會社에 대하여</u> 訴訟費用과 訴訟수행에 <u>필요로 한 實費額</u>을 請求할 수 있다.</p> <p>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u>의한</u> 權利는 利益의 取得이 <u>있은 날로부터 2年내에</u> 行使하지 <u>아니한 때에는</u> 消滅한다.</p> <p>⑥株主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 또는 主要株主는 任員 또는 主要株主가 된 날부터 10日이내에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소유하고 있는 <u>당해</u> 法人의 株式所有狀況을, 그 所有株式數에 변동이 있는 <u>때에는</u>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그 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證券先物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證券先物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第6項의 報告書를 備置하고 一般人에게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p> <p>⑧第2項의 規定은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로서 행한 賣渡 또는 買受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 및 主要株主가 賣渡·買受를 한 時期중 어느 한 時期</p>	<p>③<u>해당</u>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게 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u>해당</u>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u>2개월 이내에</u> 그 청구를 하지 <u>않은 경우에는</u>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u>해당</u>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소를 제기한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소한 <u>경우에는</u>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그 주주는 <u>회사에게</u>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u>사용된 실제 비용</u>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u>따른</u>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u>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u> 행사하지 <u>않으면 소멸된다</u>.</p> <p>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u>해당</u>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u>경우에는</u> 그 변동이 <u>있었던</u>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u>따라</u>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6항의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u>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⑧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u>그 밖의</u>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를 한 시기 중 어느</p>

현행	순화안
<p>에 있어서 主要株主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u>아니한다</u>.</p> <p>⑨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발행한 株式의 모집·賣出을 周旋 또는 引受한 證券會社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準用한다.</p> <p>第188條의2 (未公開情報 이용행위의 금지)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第1號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上場法人또는 協會登錄法人(6개월내에 上場 또는 協會登錄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의 業務등과 관련하여 一般人에게 公開되지 아니한 중요한 情報을 職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者와 이들로부터 당해 情報을 받은 者는 당해 法人이 발행한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그 情報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法人 및 그의 任員·職員·代理人 2. 당해 法人의 主要株主 3. 당해 法人에 대하여 法令에 의한 許可·認可·指導·監督 기타의 權限을 가지는 者 4. 당해 法人과 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者 5. 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任員·職員 및 代理人) 	<p>한 시기에 있어서 主要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u>않는다</u>.</p> <p>⑨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모집·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u>준용된다</u>.</p> <p>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지 <u>않게</u>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u>않은</u>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u>않은</u>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u>해당</u> 정보를 받은 자는 <u>그 밖의</u>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해당</u> 법인 및 그의 임원·직원·대리인 2. <u>해당</u> 법인의 주요주주 3. <u>해당</u>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u>따른</u> 허가·인가·지도·감독 <u>그 밖의</u> 권한을 가지는 자 4. <u>해당</u>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 <u>그 밖의</u>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및 대리인)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②第1項에서 “一般인에게 公開되지 <u>아니한</u> 중요한 情報”라 함은 第18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情報중 投資者의 投資判斷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u>당해 法人이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多數人</u>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公開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21條의 規定에 <u>의한</u> 公開買受를 하는 경우에 <u>이를 準用한다</u>. 이 경우 第1項 本文중 “<u>당해 法人</u>”은 “<u>公開買受對象 有價證券의 발행인</u>”으로, “<u>중요한 情報</u>”는 “<u>公開買受의 실시 또는 중지</u>에 관한 情報”로 보며, 第1項 各號중 “<u>당해 法人</u>”은 각각 “<u>公開買受人</u>”으로 본다.</p> <p>第188條의3 (未公開情報 이용행위의 賠償責任) ①第18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u>당해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u>를 한 者가 그 <u>賣買 기타 去來</u>와 관련하여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損害賠償請求權은 請求權者가 第188條의2의 規定에 <u>위반된</u> 行위가 있었던 사실을 <u>안</u> 날부터 1年 또는 그 行위가 있었던 날부터 3年間 <u>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u>.</p> <p>第188條의4 (時勢操縱 등 不公正去來의 금지) ①누구든지 <u>上場有價證券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賣買去來</u>에 관하여 그 <u>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他人</u>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p>	<p>②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u>않은</u> 중요한 정보”란 제186조제1항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u>해당</u>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에 <u>따라 여러 사람으로</u>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u>따른</u>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 <u>준용된다</u>. 이 경우 제1항 본문중 “<u>그 법인</u>”은 “<u>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u>”으로, “<u>중요한 정보</u>”는 “<u>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u>에 관한 정보”로 보며, 제1항 각호 중 “<u>해당 법인</u>”은 각각 “<u>공개매수인</u>”으로 본다.</p> <p>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제188조의2의 <u>규정을</u> 위반한 자는 <u>해당</u> 유가증권의 매매 <u>그 밖의</u>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u>그 밖의</u>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2의 <u>규정을 위반한</u>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u>알았던</u>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u>3년 동안</u> 행사하지 <u>않으면</u> 시효로 <u>소멸된다</u>.</p> <p>제188조의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누구든지 <u>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u>에 관하여 그 거래가 <u>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u>에 <u>다른 사람이</u> 그릇된 판단을 하</p>

현행	순화안
<p>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가 賣渡하는 같은 時期에 <u>그와 같은 가격으로 他人이</u> 그 有價證券을 買受할것을 사전에 그 者와 通情한 후 賣渡하는 행위 2. 자기가 買受하는 같은 時期에 <u>그와 같은 가격으로 他人이</u> 그 有價證券을 賣渡할 것을 사전에 그 者와 通情한 후 買受하는 행위 3.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있어서 <u>그權利의 移轉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u> · 裝된 賣買去來를 하는 행위 4. 第1號 내지 第3號의 행위의 委託 또는 受託을 하는 행위 <p>②누구든지 有價證券市場 또는 <u>코스닥시장에서의 賣買去來를 誘引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單獨으로 또는 <u>他人과 共謀</u>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時勢를 변동시키는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이나 受託을 하는 행위 2. <u>당해</u> 有價證券의 時勢가 자기 또는 <u>他人의 市場操作에 의하여</u> 변동한다는 말을 流布하는 행위 3. <u>당해</u> 有價證券의 賣買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故意로 허위의 표시 또는 誤解를 誘發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p>③누구든지 單獨 또는 공동으로 <u>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u> 위반하여 有價證券의 時勢를 固定시키거나 안정시킬 目的으로 有價證券市場 또는</p>	<p>게 할 目的으로 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u>다른 사람이</u>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u>다른 사람이</u>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u>하면서</u>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u>않는</u>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u>제3호까지의</u>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 <p>②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u>코스닥시장에서</u> 매매거래를 유인할 目的으로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으로 또는 <u>다른 사람과</u>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u>해당</u>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u>다른 사람의</u> 시장조작에 <u>따라</u>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u>해당</u>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p>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u>대통령령을</u>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目的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u>코스닥시장에서</u></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u>코스닥시장에서의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이나 受託을 하지 못한다.</u></p> <p>④누구든지 有價證券의 賣買 <u>기타</u> 去來와 관련하여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利得을 얻기 위하여 故意로 허위의 時勢 또는 허위의 사실 <u>기타</u> 風說을 流布하거나 僞計를 쓰는 행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漏落된 文書를 이용하여 <u>他人</u>에게 誤解를 誘發하게 <u>함으로써</u> 金錢 <u>기타</u> 財産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p>第188條의5 (時勢操作의 賠償責任) ①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그 위반행위로 <u>인하여</u> 形成된 가격에 <u>의하여</u>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u>당해</u> 有價證券의 賣買去來 또는 委託을 한 者가 그 賣買去來 또는 委託에 관하여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損害賠償請求權은 請求權者가 第188條의4의 規定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u>안</u> 때부터 1年,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p> <p>제188조의6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①이 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u>제의받은</u>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p>	<p>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p> <p>④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u>그 밖</u>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u>그 밖</u>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u>다른 사람</u>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u>하여</u> 금전 <u>그 밖</u>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p>제188조의5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188조의4의 <u>규정</u>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u>말미암아</u> 형성된 가격에 <u>따라</u>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u>해당</u>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u>위탁으로</u>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u>알았던</u>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u>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u></p> <p>제188조의6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①이 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u>제의를 받은</u> 자가 대통령령에 <u>따라</u>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p>

현행	순화안
<p>이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②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및 소속회사는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③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第3節 上場法人등에 대한 特例등</p> <p>제189조 (주식의 소각)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u>당해</u>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p>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②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및 소속회사는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u>안 된다</u>.</p> <p>③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3절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등</p> <p>제189조 (주식의 소각)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u>따르는</u>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u>따른 결의로</u>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u>해당</u>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u>의할</u> 것. 이 경우 동항 제1호의 방법에 <u>의한</u>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u>당해</u>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u>의한</u>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p> <p>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u>의한 한도</u>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에 관하여 <u>이사회 결의에</u> 찬성한 이사는 <u>당해 법인에 대하여</u>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 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u>하였음에도 불구하고</u>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u>그러하지</u> 아니하다.</p> <p>第189條의2 (自己株式의 취득)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u>당해</u> 法人의 名義와 計算으로 자기의 株式를 취득(商法 第341條의 規定에</p>	<p>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u>따를</u> 것. 이 경우 동항 제1호의 방법에 <u>따를</u>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u>해당</u>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p> <p>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주식을 소각한 <u>경우에는</u> 그 소각의 결의 <u>뒤</u>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u>다른 한도</u>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u>경우에는</u> 그 소각에 관하여 <u>이사회 결의에</u> 찬성한 이사는 <u>해당 법인에게</u>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 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u>하였지만</u>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u>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제189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u>해당</u> 법인의 명義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규</p>

현행	순화안
<p>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號의 방법에 <u>의하여</u>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商法 第462條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利益配當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이어야 한다.</p> <p>1.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p> <p>2. 第4章의 規定에 <u>의한</u> 公開買受의 방법</p> <p>②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錢의 信託契約 등에 <u>의하여</u> 자기의 株式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u>따라</u> 算定한 금액을 第1項 後段의 規定에 <u>의한</u> 취득금액으로 본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u>의하여</u>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節次等 기준에 따라 自己株式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p> <p>④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利益配當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u>인하여</u>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범위를 초과하여 自己株式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p> <p>⑤第14條 第1項, 第15條, 第16條,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自己株</p>	<p>정에 <u>따른</u>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u>따라야</u>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이어야 한다.</p> <p>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p> <p>2. 제4장의 규정에 <u>따른</u> 공개매수의 방법</p>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u>따라</u>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u>따라 계산한</u>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u>따른</u> 취득금액으로 본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 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u>말미암아</u>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p> <p>⑤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자기주</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u>準用한다</u>.</p> <p>⑥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자기의 株式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341條의2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u>아니</u> 한다.</p> <p>第189條의3 (一般公募増資)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定款이 정하는 <u>바에 따라</u> 理事會의 決議로써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般公募増資方式에 <u>의하여</u> 新株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一般公募増資方式에 <u>의하여</u>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 그 發行 價格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u>방법에 따라</u> 算定한 가격이상이어야 한다.</p> <p>第189條의4 (株式買受選擇權)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340條의2내지 第340條의5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定款이 정하는 <u>바에 따라</u> 商法 第434條의規定에 <u>의한</u> 決議(이하 이 條에서 “特別決議”라 한다)에 <u>의하여</u>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u>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u>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u>당해</u> 법인의 관계회사의 任·職員(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新株를 교부하거나 <u>기타</u> 大統領令이 정하는 <u>방법에 따라</u> 당해 法人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이 條의 規定에 <u>따라</u> 부여하여야 한다.</p>	<p>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u>準용된다</u>.</p> <p>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자기의 株式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第341條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u>않는다</u>.</p> <p>제189조의3 (일반공모증자)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정관 <u>에 따라</u>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u>으로</u>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일반공모증자방식<u>으로</u>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에 <u>따라 계산한</u> 가격이상이어야 한다.</p> <p>제189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第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정관에 따라</u> 상법 第434조의 규정에 <u>다른</u>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u>로 해당</u>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u>이바지하거나 이바지</u>할 수 있는 <u>해당</u>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u>해당</u>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u>그 밖에</u> 대통령령에 <u>따라 해당</u> 법인의 株式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이 조의 규정에 <u>따라</u> 부여하여야 한다.</p>

현행	순화안
<p>②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자 하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이라 한다)은 定款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總數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資格要件 4.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取消할 수 있다는 뜻 <p>③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u>때에는</u>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u>규정에</u> 불구하고 정관이 <u>정하는 바에 따라</u>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u>대하여</u>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p>④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u>의한</u> 결의일부터</p>	<p>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p>③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u>경우에는</u>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u>규정에도</u> 불구하고 정관에 <u>따라</u>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u>에서</u>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u>게</u>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p>④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u>따른</u> 결의일부터</p>

현행	순화안
<p>당해 법인의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u>그 효력을 가진다</u>.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u>의한</u> 결의일부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p> <p>⑤株式買受選擇權은 <u>他人</u>에게 讓渡할 수 없다. 다만,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 자가 <u>死亡한 때에는</u> 그 相續人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p> <p>⑥商法 第340條의3第3項, 第350條第2項, 第350條第3項 後段, 第351條, 第516條의8 第1項·第3項·第4項 및 第516條의9 前段의 規定은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인하여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⑦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⑧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決議를 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에 이를 申告하여야 하며,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는 申告日부부터 株式買受選擇權存續期限까지 이를 비치하고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⑨第1項 내지 第8項에 規定된 것 외에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90條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p>	<p>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의일부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p> <p>⑤주식매수선택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죽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p> <p>⑥상법 제340조의3제3항,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준용된다.</p> <p>⑦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⑧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부터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 비치하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0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p>

현행	순화안
<p>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하는 경우에 商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u>당해</u> 법인이 第3條의 規定에 <u>의하여</u> 登錄을 한 <u>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u>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p> <p>第190條의2 (合併 등)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法人과 <u>合併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合併要件·節次 등 合併基準에 따라 合併關聯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p>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u>하고자 하는</u>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u>하고자 하는</u>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u>하고자 하는</u> 경우 <p>③第8條第2項, 第14條 내지 第16條,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경우에 <u>이를 準用한다.</u></p> <p>第191條 (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商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第522條·第527條의2 및 第530條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併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規定하는 議決事</p>	<p>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u>다른</u> 주주총회의 승인은 <u>해당</u>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u>따라</u> 登錄을 한 <u>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u> 效力이 없다.</p> <p>제190조의2 (합병 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u>합병하는</u>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의</u>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p>③제8조제2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u>준용된다.</u></p> <p>제191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동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u>다른</u>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項에 관하여 理事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는 그 決議에 반대하는 株主(商法 第3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主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商法 제360조의9의 規定에 의한 完全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規定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法人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決議에 反對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당해 法人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商法 제360조의9의 規定에 의한 完全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規定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日 이내에 株式의 種類와 數를 記載한 書面으로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請求에 대하여 당해 法人은 買受의 請求期間이 종료하는 날부터 1月이내에 당해 株式을 買受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買受價格은 株主와 당해 法人間의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다만,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買受價格은 理事會의 決議日 이전에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去來된 당해 株式의 去來價格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p>	<p>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의 規定에 다른 完全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의 規定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規定에 다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해당 법인에게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의 規定에 다른 完全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의 規定에 다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規定에 다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日 이내에 株式의 種類와 數를 적은 서면으로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請求에 대하여 해당 法人은 買受의 請求期間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株式을 買受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買受價格은 주주와 해당 法人과의 協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買受價格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株式의 去來價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된 금</p>

현행	순화안
<p>방법에 따라 算定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 法人이나 買受를 청구한 株式數의 100分の 30이상이 그 買受價格에 反對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그 買受價格을 調整할 수 있다. 이 경우 買受價格의 調整의 申請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買受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日전까지 하여야 한다.</p> <p>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株式을 買受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株式을 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株式을 消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의 규정(동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p> <p>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商法 第363條의 規定에 依하여 동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第522條 및 第530條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依한 分割合併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規定하는 議決事項에 관한 株主總會의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를 하거나 동법</p>	<p>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조정의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p> <p>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株式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株式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株式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의 규정(같은 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p> <p>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널리 알리거나 같은 법</p>

현행	순화안
<p>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規定에 <u>의한</u> 통지 또는 <u>공고</u>를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株式買受請求權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u>명시</u>하여야 한다. 이 경우 同法 第370條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議決權 없는 株主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第191條의2 (議決權없는 株式의 特例) ①商法 第370條 第2項의 規定에 <u>의한</u> 議決權없는 株式 數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株券上場法人(株式을 新規로 上場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株式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議決權없는 株式은 그 한도의 計算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에서 株式을 발행하거나 外國에서 발행한轉換社債·新株引受權附社債 기타 株式과 관련된 證券 또는 證書의 權利行使로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2. 國家基幹産業등 國民經濟상 중요한 産業을 영위하는 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法人으로서 金融監督 委員會가 公益을 위하여 議決權없는 株式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法人이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p>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議決權없는 株式과 商法 第370條 第2</p>	<p>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規定에 <u>다른</u> 통지 또는 <u>널리 알리는 경우에는</u> 제1항의 規定에 <u>다른</u> 株式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u>밝혀야</u> 한다. 이 경우 <u>같은 법</u> 제370조 제1항의 規定에 <u>다른 의결권 이</u>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u>널리 알려야</u> 한다.</p> <p>제191조의2 (의결권이 없는 株式의 特례) ①상법 第370조제2항의 規定에 <u>다른 의결권이</u> 없는 주식수의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株式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株式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各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u>의결권이 없는</u> 주식은 그 한도의 계산에 <u>포함하지 않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外國에서 株式을 발행하거나 外國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u>그 밖의</u>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産業을 영위하는 법인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金融감독위원회가 公益을 위하여 <u>의결권이 없는</u>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p>②제1항 각호의 規定에 해당하는 <u>의결권이 없는</u> 주식과 상법 第370조</p>

현행	순화안
<p>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없는 株式을 합한 議決權없는 株式의 總數는 發行株式總數의 2分の 1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議決權없는 株式 總數의 發行株式 總數에 대한 비율이 4分の 1을 초과하는 法人은 그 비율이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株引受權의 행사, 準備金の 資本轉入 또는 株式配當등의 방법으로 議決權없는 株式을 발행할 수 있다.</p> <p>第191條의3 (株式配當의 特例) ① 株式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商法 第462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익의 配當을 利益配當總額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株式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株式의 時價가 額面額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時價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91條의4 (新種社債의 발행)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商法 第513條 第1項 및 同法 第516條의2 第1項에 規定된 社債와 다른 종류의 社債로서 利益配當에 참가할 수 있는 社債, 株式 기타 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부여된 社債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하는 社債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2항의 規定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株式을 합한 의결권이 없는 株式의 총수는 발행株式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의결권이 없는 株式 총수의 발행 株式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은 그 비율 이내에서 大統領령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이 없는 株式을 발행할 수 있다.</p> <p>제191조의3 (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식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배당을 이익 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株式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株式의 시가가 권면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제1항 단서의 規定에 따른 株式의 시가의 계산방법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p>제191조의4 (신종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5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1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 밖에 大統領령이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規定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현행	순화안
<p>第191條의5 (社債發行의 特例) 株券 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중 <u>株式으로의 轉換 또는 新株引受權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 의한 社債發行限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u></p> <p>第191條의6 (公共的 法人의 配當등의 特例) ①公共的 法人(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的 法人을 말한다)은 이익이나 利子를 <u>配當함에 있어 政府에게 지급할 配當金の 전부 또는 일부를 商法 第46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의 株主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지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의 우리 社株組合에 가입한 從業員 2. 年間所得水準 및 所有財産規模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 <p>②公共的 法人은 準備金の 전부 또는 일부를 資本에 轉入함에 있어 政府에게 발행 할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를 商法 第461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共的 法人이 發行株式을 일정기간 所有하는 株主에게 발행할 수 있다.</p> <p>第191條의7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優先配定)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株式의 新規로 上場하고자 하는 法人이 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경우에 당해 法人의 우리社株組合員은 모집 또는 賣出하는 株式總數의 100分の 2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株式의</p>	<p>제191조의5 (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u>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따른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u></p> <p>제191조의6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공공적 법인(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u>다른</u> 공공적 법인을 말한다)은 이익이나 이자를 <u>배당할 때</u> 정부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u>규정에도</u>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u>따라 해당</u>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해당</u> 株式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 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p>②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u>경우</u> 정부에게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의 <u>규정에도</u>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u>따라</u>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p> <p>제191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u>주식</u>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株式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u>해당</u>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株式의</p>

현행	순화안
<p>配定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아니하다.</u></p> <p>1.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p> <p>2. 기타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優先配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p> <p>②第1項의 規定은 우리社株組合員이 所有하는 株式數가 新規로 발행되는 株式과 이미 발행한 株式의 總數의 100分の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株式의 配定과 그株式의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第191條의8 (保證金등의 대신납부)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の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에 납부할 保證金 또는 供託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證金 또는 供託金은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p> <p>②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上場有價證券에 의한 대신납부를 거부하지 못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上場有價證券 및 당해 證券의 대신 납부하는 價額의 評價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 만, 各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1. 外國人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大統領령이 정하는 법인이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p> <p>2.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株式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株式과 이미 발행한 株式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적용되지 않는다</u></p> <p>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株式의 배정과 그 株式의 처분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191조의8 (보증금등의 대신납부) ① 國家·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規定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중 大統領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은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規定에 따른 상장유가증권으로 대신납부를 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p> <p>③제1항의 規定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및 해당 증권 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현행	순화안
<p>第191條의9 削除</p> <p>第191條의10 (株主總會의 召集公告)</p> <p>①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株主總會를 召集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하의 株式을 所有하는 株主에 대하여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議日을 정하여 그 2週전에 總會를 召集하는 뜻과 會議의 目的事項을 2이상의 日刊新聞에 각각 2회이상 公告함으로써 商法 第363條 第1項의 召集通知에 같음할 수 있다.</p>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商法 第36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召集통지 또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함에 있어 회의의 目的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大統領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p> <p>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주주총회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公告에 같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제191조의19의 規定에 의한 최대 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大統領령이 정하는 사항 	<p>제191조의9 삭제</p> <p>제191조의10 (주주총회의 소집공고)</p> <p>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이상의 일간신문을 통해 각각 2회 이상 널리 알림으로써 상법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에 같음할 수 있다.</p>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제1항의 規定에 따른 召集통지 또는 제1항의 規定에 따라 널리 알리고자 할 때 회의의 目的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成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大統領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널리 알려야 한다.</p> <p>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주주총회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公告에 같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제191조의19의 規定에 따른 최대 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大統領령이 정하는 사항

현행	순화안
<p>3.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p> <p>第191條의11 (監事の 選任·解任 등) ①最大株主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が 所有하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議決權있는 株式의 合計가 當해 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3 (定款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株主는 그 초과하는 株式에 관하여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에 한한다)의 選任 및 解任에 있어서는 議決權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②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監事の 選任 또는 監事の 報酬決定을 위한 議案을 上程하는 경우에는 理事의 選任 또는 理事의 報酬決定을 위한 議案과는 별도로 上程하여 議決하여야 한다.</p> <p>③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는 商法 第447條의4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理事에 대하여 監査報告書를 株主總會日의 1週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p> <p>第191條의12 (監事の 資格 등)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1인 이상의 常勤監事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한 경우에는 <u>그리하지 아니하다.</u></p> <p>②削 除</p>	<p>3.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p> <p>제191조의11 (감사의 선임·해임 등) ①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u>그 밖에</u> 大統領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u>의결권이 있는 주식수의</u> 합계가 해당법인의 <u>의결권이 있는</u>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한다)의 선임 및 해임의 <u>경우에는</u>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u>결의</u>하여야 한다.</p> <p>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제1항의 <u>규정에도</u> 불구하고 <u>이 사에게</u>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p> <p>제191조의12 (감사의 자격 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u>따라</u>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②삭 제</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③다음 각號의 <u>1</u>에 해당하는 者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常勤監事가 되지 못하며, 常勤監事가 된 <u>후</u>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職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u>아니한</u>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u>아니하기</u>로 確定된 후 2年을 경과하지 <u>아니한</u> 者 4. 이 법에 <u>의하여</u> 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2年을 경과하지 <u>아니한</u> 者 5. <u>당해</u> 會社의 主要株主 6. <u>당해</u> 會社의 常勤任·職員 또는 最近 2年 이내에 常勤任·職員이었던 者 7. 第5號 및 第6號외에 당해 會社의 經營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p>第191條의13 (少數株主權의 행사) ① <u>6</u>월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の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보유한 者는 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p> <p>②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령이</p>	<p>③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상근감사가 된 <u>뒤</u>에 이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u>않은</u>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u>않기로</u> 確定된 후 2年을 경과하지 <u>않은</u> 자 4. 이 법에 <u>따라</u>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年을 경과하지 <u>않은</u> 자 5. <u>해당</u> 회사의 주요주주 6. <u>해당</u>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最近 2年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7. 제5호 및 제6호외에 당해 회사의 經營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자 <p>제191조의13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u>6개월</u>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령에 <u>따라</u>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②<u>6개월</u>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령에</p>

현행	순화안
<p>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③6월 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發行株式總數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4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p> <p>④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385조(商法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⑤6월 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發行株式總數의 1千 分の 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 分の 1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66條 및 第467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3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때에는 議決權 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p> <p>⑥第1項의 株主가 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規定하는 訴訟을 제기하여 勝訴한 때에는 會社에 대하여 訴訟費用 기타 訴訟으로</p>	<p>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③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④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⑤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이 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p> <p>⑥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p>

현행	순화안
<p><u>인한 모든 費用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u></p> <p>第191條의14 (株主提案) ①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u>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의 1千 分の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の 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하는 者는 理事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u></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 株主提案을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株主總會의 目的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議案의 要領을 商法 第363條의規定에 의한 통지와 公告에 기재할 것을 理事에게 청구할 수 있다.</u></p> <p>③理事會는 株主提案의 내용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되는 경우 <u>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上程하여야 하며, 株主提案한 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에서 당해 議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第191條의15 (額面未達發行에 대한 特例)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商法 第417條의 <u>規定에</u> 불구하고 商法 第434條의 <u>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만으로 法院의 認可를 얻지 아니하고도 株式을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발행할 수 있다.</u> 다만, 당해 法人이 商法 第455條 第2項의</p>	<p><u>송으로 말미암은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u></p> <p>제191조의14 (주주제안) ①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u>의결권이 있는</u>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에 <u>따라</u> 보유하는 자는 <u>이사에게</u> 대통령령에 <u>따라</u>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u>따라</u>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u>따른</u> 통지와 공고에 <u>적어 놓을</u> 것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u>그 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u>해당</u>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91조의15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의 <u>규정에도</u>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u>따른</u>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u>않고도</u>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u>해당</u> 법인이 상법 제455조제2항의 규</p>

현행	순화안
<p>規定에 의한 償却을 완료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u>그러하지</u> 아니하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에서는 株式의 最低發行價額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最低發行價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算定한 價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은 株主總會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株主總會의 決議日부터 1月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p> <p>第191條의16 (社外理事의 選任)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은 社外理事를 理事 總數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社外理事는 3人 이상으로 하되, 理事 總數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u>기타</u>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u>아니한다</u>.</p> <p>③第54條의5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은 規定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社外理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고, 第54條의5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④公企業의 經營構造改善 및 民營化에 관한法律, 銀行法 <u>기타</u> 法律에 의하여 選任된 非常任理事 또는 社外理</p>	<p>정에 <u>따른</u> 상각을 완료하지 <u>않은</u>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주주총회에서 <u>결의를 할 때</u>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에 <u>따라 계산한</u>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부터 <u>1개 월</u>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p> <p>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증권투자회사법에 <u>따른</u> 증권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u>그 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u>경우에는</u>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u>않는다</u>.</p> <p>③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은 규정에 <u>따른</u>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u>준용되고</u>,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u>따른</u>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u>준용된다</u>.</p> <p>④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u>그 밖의</u> 법률에 <u>따라</u>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事は 이 법에 <u>의하여</u> 選任된 社外理事로 본다.</p> <p>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이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u>조력</u>을 구할 수 있다.</p> <p>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社外理事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社外理事가 任期滿了의외 사유로 退任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選任·解任 또는 退任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申告하여야 한다.</p> <p>第191條의17 (監査委員會)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p> <p>②제54조의6제2항 내지 제6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 이를 <u>準用</u>한다.</p> <p>제191조의18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u>때에는</u> 상법 제382조의2제1항의 <u>규정에</u> 불구하고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u>의한</u>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u>의결권</u>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당해 법인에 대하여</u>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의한</u>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p>	<p>이사는 이 법에 <u>따라</u>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p> <p>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이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u>도움</u>을 구할 수 있다.</p> <p>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社外理事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社外理事가 任期滿了의외 사유로 退任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選任·解任 또는 退任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申告하여야 한다.</p> <p>제191조의17 (감사위원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제54조의6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u>준용된다</u>.</p> <p>제191조의18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u>경우에는</u> 상법 제382조의2제1항의 <u>규정에</u>도 불구하고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u>다른</u>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u>의결권이</u>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해당 법인에게</u>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p>

현행	순화안
<p>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u>의결권</u>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u>관하여</u>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u>의한</u>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u>의한</u> 집중투표의 배제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그 밖의 사항의</u> 정관의 변경에 관한 다른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u>의결하여야</u> 한다.</p> <p>제191조의19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u>당해</u>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u>1</u>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호 각목의 <u>1</u>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 된다</u>. 다만, 제2호 각목의 <u>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금지행위</p> <p>가. 금전·유가증권·실물자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p> <p>나. 부동산·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p> <p>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p>	<p>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u>의결권이</u>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u>주식의</u>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집중투표의 배제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다른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u>결의하여야</u> 한다.</p> <p>제191조의19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u>해당</u>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호 각목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안 된다</u>. 다만, 제2호 각목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1. 금지행위</p> <p>가. 금전·유가증권·실물자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p> <p>나. 부동산·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p> <p>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2. 금지행위의 예외</p> <p>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p> <p>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u>협회등록법인</u>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u>당해</u> 법인의 최대주주(그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 관계인과 다음 각호의 <u>1</u>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 <u>후</u>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u>당해</u>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1.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거래</p> <p>2. <u>당해</u>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u>당해</u>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u>당해</u> 거래</p> <p>③제2항의 <u>규정에</u> 불구하고 <u>당해</u>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 각호의 <u>1</u>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지 <u>아니하고 이를</u>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u>거래에 대해서는</u>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u>아니할</u> 수 있다.</p>	<p>2. 금지행위의 예외</p> <p>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p> <p>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u>코스닥 상장법인</u>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u>해당</u> 법인의 최대주주(그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 관계인과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거래(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 <u>뒤</u>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u>해당</u>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1.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거래</p> <p>2. <u>해당</u>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u>해당</u>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u>해당</u> 거래</p> <p>③제2항의 <u>규정에도</u> 불구하고 <u>해당</u>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지 <u>않고</u>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u>거래는</u>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u>않을</u> 수 있다.</p>

현행	순화안
<p>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p> <p>2.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p> <p>第192條 (株券上場法人 등의 財務管理基準) ①金融監督委員會는 投資者를 보호하고 공정한 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號의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財務處理를 위한 財務管理基準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有價增資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財務構造의 개선을 위한 적립금에 관한 사항 3. 配當에 관한 사항 4.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證券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第1號 내지 第4號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務管理基準에 따라야 한다.</p> <p>第192條의2 削除</p> <p>第192條의3 (配當에 대한 特例) ①年1회의 決算期를 정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年度중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p>	<p>1.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에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p> <p>2.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p> <p>제192조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기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적립금에 관한 사항 3. 배당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p> <p>제192조의2 삭제</p> <p>제192조의3 (배당에 대한 특례) ①연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理事會決議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말일로부터 45日내에 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분기배당금은 理事會決議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定款에서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분기배당은 直前 決算期の 貸借對照表上의 純財産額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 공제한 額을 限度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直前 決算期の 資本의 額 2. 直前 決算期까지 積立된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の 合計額 3. 直前 決算期の 定期總會에서 利益配當하기로 정한 金額 4.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決算期에 積立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合計액 <p>⑤당해 決算期の 貸借對照表上의 純財産額이 商法 第462條 第1項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⑥당해 決算期の 貸借對照表上의 純財産額이 商法 第462條 第1項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기배당에 관하여 理事會決議에 贊成한 理事는 당해 法人에 대하여 連帶하여 그 差額(분기배당액의 合計액이 그 差額보다 작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合計액)을 賠償할 責任이 있다. 다만, 그 理事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第5項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p>	<p>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이사회결의는 제1항의 규정에 다른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다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④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p>⑤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안 된다.</p> <p>⑥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기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게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 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분기 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p>

현행	순화안
<p>없었음을 <u>證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⑦商法 第340條 第1項, 第344條 第1項, 第350條 第3項(商法 第423條 第1項, 第516條 第2項 및 第516條 第9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第354條 第1項, 第370條 第1項, 第457條 第2項, 第458條, 第464條 및 第625條 第3號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商法 第46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益의 配當으로, 商法 第350條 第3項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第1項의 말일을 營業年度末로, 商法 第635條 第1項 第22號의2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第3項의 기간을 商法 第464條의2 第1項의 기간으로 본다.</p> <p>⑧商法 第399條 第3項 및 第400條의 規定은 第6項의 規定에 따라 理事가 連帶責任을 지는 경우에, 商法 第462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p> <p>第193條 (上場法人등에 대한 措置) 金融監督委員會는 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命令이나 規程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法人의 株主總會에 대하여 任員의 解任을 勸告하거나 일정기간 有價證券의 발행제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10章 補則</p> <p>第194條 (場外去來) ①有價證券市場 및 <u>코스닥시장외에서의</u> 賣買去來 및 決</p>	<p>증명한 <u>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⑦상법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0조 제3항(상법 제423조 제1항, 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제457조 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상법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말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의2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p> <p>⑧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기 배당을 한 경우에 각각 준용된다.</p> <p>제193조 (상장법인 등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칙</p> <p>제194조 (장외거래) 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매매거래 및 결</p>

현행	순화안
<p>濟의 方法 <u>기타</u>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②削除</p> <p>第194條의2 (電子文書에 의한 申告등) 이 法에 <u>의하여</u> 金融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申告書·보고서 <u>기타</u> 書類 또는 資料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電子文書의 方法에 의할 수 있다.</p> <p>第194條의3 (監査인에 의한 監査證明) ①이 法에 <u>의하여</u> 金融監督委員會와 거래소에 財務에 관한 書類를 제출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는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u>의하여</u> 會計監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u> 第1項의 規定에 <u>의하여</u> 會計監査를 한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u>의한</u> 監査人(이하 “監査人”이라 한다) 또는 會計監査를 받는 法人에 <u>대하여</u> 資料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u>기타</u>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p> <p>③外國法人등이 外國證券法에 따라 會計監査를 받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u>의한</u> 會計監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第195條 및 第196條 削除</p> <p>第197條 (監査인의 損害賠償責任) ①善意的 投資者에 대한 監査인의 損害賠</p>	<p>제의 方法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定한다.</p> <p>②삭제</p> <p>제194조의2 (전자문서로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u>따라</u> 金融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서·보고서 <u>그 밖의</u>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大統領령에 <u>따라</u> 전자문서의 <u>방법으로 할 수</u> 있다.</p> <p>제194조의3 (감사인의 감사증명) ① 이 법에 <u>따라</u> 金融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중 大統領령이 定하는 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u>따라</u>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령이 定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u>필요한 경우에는</u>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회계감사를 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u>다른</u>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또는 회계감사를 받는 <u>법인에게</u>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u>그 밖에</u>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외국법인등이 외국증권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로서 大統領령이 定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u>다른</u>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95조 및 제196조 삭제</p> <p>제197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p>

현행	순화안
<p>價責任은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 第17條 第2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額의 算定에 관하여는 第1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③削 除</p> <p>第198條 削 除</p> <p>第199條 (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의 제한) ①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上場株式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議決權의 行使를 자기 또는 他人에게 代理하게 할 것을 勸誘하지 못한다.</p> <p>②國家基幹産業등 國民經濟상 중요한 産業을 영위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上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하 “公共的 法人”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公共的 法人만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株式의 議決權의 代理行使를 勸誘할 수 있다.</p> <p>第200條 (公共的 法人이 발행한 株式의 所有제한등) ①누구든지 公共的 法人이 발행한 株式은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所有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議決權이 없는 株式은 總發行株式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名義로 所有하는 때에는 자기의 計算으로 取得한 것으로 본다.</p> <p>1. 당해 有價證券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된 당시에 總發 行株式의 100분의 10</p>	<p>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規定을 준용한다.</p> <p>②제1항의 規定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의 規定을 준용한다.</p> <p>③삭 제</p> <p>제198조 삭 제</p> <p>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에 따라서만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p> <p>②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적 법인만이 대통령령에 따라 그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p> <p>제200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 ①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총발행주식에 포함되지 않 으 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p> <p>1. 해당 유가증권이 제3조의 規定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이상을 소유한 株主는 그 所有比率</p> <p>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株主외의 者는 總發行株式의 100分の 3 이내에서 定款이 정하는 비율</p> <p>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所有比率限度에 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所有比率限度까지 公共的 法人이 발행한 株式을 所有할 수 있다.</p> <p>③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사실상 株式을 所有하는 者는 그 超過분에 한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그 基準을 초과하여 사실상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그 基準에 적합하도록 是正할 것을 命할 수 있다.</p> <p>第200條의2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보고)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株式등을 大量保有(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の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者(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日(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내에 그 保有狀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保有株式比率이 당해 法人의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の 1의 비율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日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p>	<p>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p> <p>2. 제1호의 규정에 다른 주주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비율한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제200조의2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해당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이상 변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p>

현행	순화안
<p>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投資者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그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第21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에서 規定하는 株式등의 數 및 株式등의 總數의 算定方法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등의 大量保有狀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大量保有狀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7·1·13></p> <p>④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 一般人이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金融監督委員會는 공익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者, 당해 株式등의 發行會社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그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p> <p>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第200條의3 (違反株式등의 議決權行使 제한) 第200條의2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등의 大量保有狀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 (그 訂正</p>	<p>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의 계산방법에 준용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13></p> <p>④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다른 보고자, 해당 주식 등의 발행회사 그 밖의 관계인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00조의3 (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 (그 정정</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報告를 포함한다)하지 <u>아니한</u>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u>議決權 있는</u>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u>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u>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u>당해 위반분의</u> 처분을 명할 수 있다.</p> <p>第200條의4 (準用規定) 第11條 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20條의 規定은 大量保有狀況報告 및 大量保有狀況變動報告의 경우에 <u>이를 準用한다.</u></p> <p>第201條 削除</p> <p>第202條 및 第202條의2 削除</p> <p>第203條 (外國人有價證券取得의 制限) ①外國人 또는 外國法人등에 의한 有價證券取得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制限을 할 수 있다. ②外國人 또는 外國法人등에 의한 公共的 法人의 株式取得에 關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제한에 추가하여 當해 公共的 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한 者는 當해 株式에 對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한 者에 對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④削除</p> <p>第204條 내지 第206條 削除</p> <p>第206條의2 (權限의 위임) ①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에 依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p>	<p>보고를 포함한다)하지 <u>않는</u>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동안 <u>의결권이 있는</u> 발행株式總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u>부분의</u>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u>해당 초과분의</u> 처분을 <u>명령</u>할 수 있다.</p> <p>제200조의4 (준용규정) 제11조제1항 <u>부터 제3항까지</u> 및 제20조의 규정은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대량보유상황변동보고의 경우에 <u>준용된다.</u></p> <p>제201조 삭제</p> <p>제202조 및 제202조의2 삭제</p> <p>제203조 (외국인유가증권취득의 제한)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u>유가증권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u> 대통령령에 <u>따라</u>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공공적 법인의 <u>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u> 제1항의 規定에 <u>다른</u> 제한에 추가하여 <u>해당</u> 公共적 법인의 정관에 <u>따라</u> <u>따로</u>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u>해당</u> 株式의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감독위원회는 第1항 또는 第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삭제</p> <p>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 삭제</p> <p>제206조의2 (권한의 위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u>다른</u> 권한의 일부를 大統領령에 <u>따라</u> 증권선물위원회</p>

현행	순화안
<p>證券先物委員會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證券先物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議決한 경우에는 <u>지체 없이</u>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議決이 違法하거나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u>심히</u>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議決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④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權限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각각 金融監督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p> <p>⑤第4項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06條의3 (金融監督委員會 및 證券先物委員會의 조사, 압수·수색) ① 金融監督委員會(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 또는 命令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경우에는 關係者에 대하여 參考가 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u>기타의</u>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p>	<p>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바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의가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④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⑤제4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6조의3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① 금융감독위원회(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u>규정을</u>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 등에 관계된 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關係者에 대하여 다음 각 號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調査事項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陳述書의 제출 2. 調査事項에 관한 證言을 위한 출석 3. 調査에 필요한 帳簿·書類 기타 物件의 제출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장부·서류 <u>그 밖의</u>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u>사업장</u>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u>그 밖의</u> 물건의 조사 <p>④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證券關係機關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調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이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 또는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是正命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할 수 있으며, 調査 및 措置를 함에 있어 필요한 節次·措置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88조·제188조의2및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p>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관계기관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현행	순화안
<p>⑥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이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 또는 命令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⑦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u>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p> <p>⑧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u>때에는</u> 검사의 청구에 <u>의하여</u>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p> <p>⑨조사공무원이 제3항 제2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조사, 심문 또는 압수·수색을 하는 <u>때에는</u>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⑩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⑪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u>때에는</u> 그 전말을 <u>기록하여</u>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u>서명날인</u> 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p>	<p>⑥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다른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⑦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p> <p>⑧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p> <p>⑨조사공무원이 제3항 제2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심문 또는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⑩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준용된다.</p> <p>⑪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말을 적어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뒤 그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p>

현행	순화안
<p>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u>아니하거나</u>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p> <p>⑫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第206條의4 (外國證券監督機關과의 情報交換 등)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의 證券監督機關과 情報交換을 할 수 있다.</p> <p>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交換을 <u>하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u> 아니하다.</p> <p>③金融監督委員會(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는 外國證券監督機關이 目的·범위 등을 <u>명시하여</u> 이 法에 의한 調査 또는 檢査를 요청하는 경우에 <u>협조할 수 있다</u>.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u>따라</u> 조사 또는 검사 자료를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u>이를</u> 제공받을 수 있다.</p> <p>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u>의하여</u>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u>아니할 것</u>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p>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u>않거나</u> 할 수 없는 <u>경우</u>에는 그 사유를 <u>덧붙여 적어야</u> 한다.</p> <p>⑫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u>경우</u>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06조의4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 증권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p> <p>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u>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③금융감독위원회(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u>규정</u>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는 외국증권감독기관이 목적·범위 등을 <u>밝히고</u> 이 법에 <u>다른</u>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u>협조할 수 있다</u>.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u>따라</u> 조사 또는 검사 자료를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p> <p>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u>따라</u>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u>않을 것</u>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현행	순화안
<p>3.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u>안</u> 될 것</p> <p>第206條의5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1. 다음 각 目的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p> <p>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書類</p> <p>나.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法人의 管理基準</p> <p>다. 第20條(第27條의2, 第186條의5, 第189條의2第5項, 第190條의2第3項, 第200條의 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措置節次 및 措置基準</p> <p>라. 第19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財務管理基準</p> <p>마. 제206조의3제5항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調査 및 措置의 節次·措置基準</p> <p>2. 다음 각 目的의 1에 해당하는 措置·命令 등을 하는 경우</p> <p>가. 第20條(第27條의2, 第186條의5, 第189條의2第5項, 第190條의2第3項,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措置</p> <p>나. 제54조의 規定에 의한 命令</p> <p>다. 第19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價格의 調整</p>	<p>3.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u>않</u> 을 것</p> <p>제206조의5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다음 각목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p> <p>가. 제4조의 규정에 <u>다른</u> 등록서류</p> <p>나. 제6조의 규정에 <u>다른</u> 등록법인의 관리기준</p> <p>다. 제20조(제27조의2, 제186조의5, 제189조의2제5항, 제190조의2제3항,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u>다른</u> 조치절차 및 조치기준</p> <p>라.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p> <p>마. 제2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u>다른</u>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의 절차·조치기준</p> <p>2. 다음 각목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p> <p>가. 제20조(제27조의2, 제186조의5, 제189조의2제5항, 제190조의2제3항,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u>다른</u> 조치</p> <p>나. 제54조의 규정에 <u>다른</u> 명령</p> <p>다. 제191조 제3항의 규정에 <u>다른</u> 주식매수가격의 조정</p>

현행	순화안
<p>라. 第191條의2第1項 第2號의 規定에 <u>의한</u> <u>議決權없는</u> 株式發行의 인정</p> <p>마. 第193條의 規定에 <u>의한</u> 措置</p> <p>바. 第200條 第2項의 規定에 <u>의한</u> 株式所有比率限도의 승인</p> <p>사. 제206조의3제5항의 規定에 <u>의한</u> 調査結果에 따른 措置</p> <p>아. 第206條의11의 規定에 <u>의한</u> 課徵金賦課處分</p> <p>자. 第213條 第3項의 規定에 <u>의한</u> 過怠料賦課處分</p> <p>3. 기타 第1號 및 第2號외에 金融監督委員會가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第206條의6 (金融監督院長에 대한 指示·監督 등)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이 法에 <u>의한</u> 權限을 <u>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에 대하여 指示·監督 및 業務執行方法의 변경 기타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p> <p>第206條의7 (金融監督院의 業務) 金融監督院은 이 法에 <u>의하여</u>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指示·監督을 받아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業務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에 관한 사항 2. 有價證券申告書에 관한 사항 3. 有價證券의 公開買受에 관한 사항 4. 이 法에 <u>의하여</u> 金融監督院長의 檢査를 받아야 하는 機關의 檢査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p>라. 제191조의2제1항제2호의 規定에 <u>다른 의결권이 없는</u> 주식발행의 인정</p> <p>마. 제193조의 規定에 <u>다른</u> 조치</p> <p>바. 제200조제2항의 規定에 <u>다른</u> 주식소유비율한도의 승인</p> <p>사. 제206조의3제5항의 規定에 <u>다른</u>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p> <p>아. 제206조의11의 規定에 <u>다른</u> 과징금부과처분</p> <p>자. 제213조제3항의 規定에 <u>다른</u> 과태료부과처분</p> <p>3. <u>그 밖에</u> 제1호 및 제2호외에 金融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206조의6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 등) 金融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法에 <u>다른</u> 권한을 <u>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u> 경우에는 <u>금융감독원장에게</u> 지시·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u>그 밖의</u> 감독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p> <p>제206조의7 (금융감독원의 업무) 金融감독원은 이 法에 <u>따라</u> 金融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各 호의 사항에 관한 業務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4. 이 法에 <u>따라</u> 金融감독원장의 檢査를 받아야 하는 기관的 檢査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	순화안
<p>6. 登錄法人과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企業分析 및 企業內容의 公示에 관한 사항</p> <p>7. 有價證券市場 및 <u>코스닥시장외에</u> <u>서의</u>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의 監督에 관한 사항</p> <p>8.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業務</p> <p>9. 第1號 내지 第8號외에 이 法에 의하여 부여된 業務</p> <p>10. 第1號 내지 第9號의 業務에 부수되는 業務</p> <p>第206條의8 (分擔金) ①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金融監督院의 運營經費의 일부를 分擔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顧客으로부터 委託手數料를 받는 證券會社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書를 제출하는 발행인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의 檢査를 받는 機關 登錄法人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06條의9 삭제</p> <p>第206條의10 (聽聞)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p>6. 등록법인과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7. 유가증권시장 및 <u>코스닥시장외에</u> <u>서</u>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감독에 관한 사항</p> <p>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외에 이 법에 <u>따라</u> 부여된 업무</p> <p>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p> <p>제206조의8 (분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 제8조의 규정에 <u>따라</u>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이 법에 <u>따라</u>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기관 등록법인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u>그 밖에</u>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6조의9 삭제</p> <p>제206조의10 (청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u>따른</u>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2. 第155條 第1項(第17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u>의한</u> 證券金融會社 및 仲介會社에 대한 許可의 取消</p> <p>第10章의2 課徵金の 賦課 및 徵收</p> <p>第206條의11 (課徵金) ①金融監督委員會는 第14條第1項 各號의 <u>1</u>에 해당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u>1</u>에 해당하는 <u>때에는</u> 有價證券申告書상의 募集價額 또는 賣出價額의 100分の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u>아니하는 범위 안에서</u>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p> <p>1. 第8條·第11條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u>의한</u> 申告書·說明書 기타 提出書類에 <u>허위의 기재</u>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u>아니한</u> 때</p> <p>2. 第8條·第11條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u>의한</u> 申告書·說明書 기타 提出書類를 제출하지 <u>아니한</u> 때</p> <p>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25條의3第1項各號의 <u>1</u>에 해당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u>1</u>에 해당하는 <u>때에는</u> 公開買受申告書에 기재된 公開買受豫定總額의 100分の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u>아니하는 범위 안에서</u>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 이 경우 公開買受豫定總額은 <u>公開買受할 株式 등의 數量을 公開買受價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u> 한다.</p>	<p>2. 제155조 제1항(제17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u>다른</u> 증권금융회사 및 중개회사에 대한 허가의 취소</p> <p>제10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p> <p>제206조의11 (과징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u>경우에는</u>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u>않는 범위 안에서</u>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u>다른</u> 신고서·설명서 <u>그 밖의</u> 제출서류에 <u>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u>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u>않았을</u> 때</p> <p>2.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u>의한</u> 신고서·설명서 <u>그 밖의</u>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u>않았을</u> 때</p> <p>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u>경우에는</u> 공개매수신고서에 <u>적힌</u>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u>않는 범위 안에서</u>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u>공개매수를</u> 할 주식 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현행	순화안
<p>1. 第21條의2·第22條·第23條의2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u>의한</u> 申告書·說明書 <u>기타</u> 提出書類 또는 公告의 內容에 <u>허위의 기재</u>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p> <p>2. 第21條의2·第22條·第23條의2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u>의한</u> 申告書·說明書 <u>기타</u>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u>아니하거나</u> 公告하여야 할 사항을 公告하지 <u>아니한</u> 때</p> <p>③金融監督委員會는 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u>때에는</u> 20억원을 초과하지 <u>아니하는</u> 범위 안에서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p> <p>1. 第186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u>의한</u> 申告 또는 公示의 內容에 <u>허위의 기재</u>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u>아니한</u> 때</p> <p>2. 第186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u>의한</u> 申告 또는 公示의 內容을 申告 또는 公示하지 <u>아니한</u> 때</p> <p>④金融監督委員會는 第186條의2第1項 또는 第186條의3의 規定에 <u>의하여</u>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法人이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u>때에는</u> 직전 事業年度중에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u>당해</u> 法人이 발행한 株式의 日日平均去來金額의 100分の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이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p>	<p>1. 제21조의2·제22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規定에 <u>따른</u> 신고서·설명서 <u>그 밖의</u> 제출서류 또는 公告의 內容에 <u>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u>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u>않았을</u> 때</p> <p>2. 제21조의2·제22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規定에 <u>따른</u> 신고서·설명서 <u>그 밖의</u>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u>않았거나</u> 公告하여야 할 사항을 公告하지 <u>않았을</u> 때</p>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u>경우에는</u> 20억원을 초과하지 <u>않는</u>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u>따른</u> 신고 또는 공시의 內容에 <u>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u>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u>않았을</u> 때</p> <p>2.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u>따른</u> 신고 또는 공시의 內容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u>않았을</u> 때</p> <p>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規定에 <u>따라</u>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u>하나에</u> 해당하는 <u>경우에는</u> 직전 사업연도 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u>해당</u>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去來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p> <p>1. 第186條의2第1項 또는 第186條의3의 規定에 <u>의한</u> 報告書에 <u>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u></p> <p>2. 第186條의2第1項 또는 第186條의3의 規定에 <u>의한</u> 報告書를 제출하지 <u>아니한 때</u></p> <p>⑤金融監督委員會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合併(分割合併을 포함한다) 또는 分割의 對價로 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額(營業의 讓渡 또는 讓受의 경우에는 讓渡 또는 讓受의 對價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第190條의2의 規定에 <u>의하여</u> 제출된 申告書類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新設合併의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하며, 그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u>아니하는</u> 범위 안에서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p> <p>1. 第190條의2의 規定에 <u>의한</u> 申告를 함에 있어 <u>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u></p> <p>2. 第190條의2의 規定에 <u>의한</u> 申告를 하지 <u>아니한 때</u></p> <p>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u>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u> 위반금액(제54조의3</p>	<p>에서 거래되지 <u>않은</u>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u>따른</u> 보고서에 <u>중요한사항의 허위기재</u>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u>않았을 때</u></p> <p>2.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u>따른</u> 보고서를 제출하지 <u>않았을 때</u></p> <p>⑤금융감독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u>하나에</u> 해당하는 <u>경우</u>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양수의 대가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제190조의2의 규정에 <u>따라</u> 제출된 신고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신설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하며, 그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u>않는</u>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제190조의2의 규정에 <u>따른</u> 신고를 <u>할 때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u>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u>않았을 때</u></p> <p>2. 제190조의2의 규정에 <u>따른</u> 신고를 하지 <u>않았을 때</u></p> <p>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u>해당 증권회사에게</u> 위반금액(제54조의3제1항 제1</p>

현행	순화안
<p>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 금액, 제2호의 경우에는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액, 제4호의 경우에는 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u>아니하는</u>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⑦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の 賦課는 課徵金賦課對象者에게 각 해당規定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第206條의12 (課徵金の 賦課) ①金融監督委員會는 第206條의11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を 賦課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號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回數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p>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206條의11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を 賦課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の 規定을 위반한 法人이 合併을 하는 경우 당해 法人이행한 위반행위는 合併後 存續하거나 合併에 의하여 新設된 法人이 행한 행위로 보아 課徵金を 賦課·徵收할 수 있다.</p> <p>④課徵金の 賦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06條의13 (의견제출)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を 賦課하기 전에 미</p>	<p>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제2호의 경우에는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액, 제4호의 경우에는 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1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u>않는</u>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規定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제206조의12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6조의11의 規定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p>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6조의11제3항의 規定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의 規定을 위반한 法人이 합병을 하는 경우 해당 法人이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後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法人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6조의13 (의견제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p>

현행	순화안
<p>리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 등은 金融監督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p> <p>第206條의 14 (異議申請) ①第206條의 11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賦課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p> <p>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30日 이내에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決定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p> <p>第206條의 15 (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を 賦課받은 者(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課徵金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災害 또는 盜難 등으로 財産에 현저한 損失을 입은 경우 2. 事業與件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危機에 처한 경우 	<p>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다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206조의 14 (이의신청) ①제206조의 11의 규정에 다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다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다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206조의 15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현행	순화안
<p>3. 課徵金の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u>현저한</u>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p> <p>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課徵金納付義務者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을 받거나 分割納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納付期限의 10日전까지 金融監督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p> <p>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연장되거나 分割納付가 허용된 課徵金納付義務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決定을 取消하고 課徵金을 일시에 徵收할 수 있다.</p> <p>1. 分割納付決定된 課徵金을 그 納付期限内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p> <p>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補填에 필요한 金融監督委員會의 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3. 強制執行, 競賣의 開始, 破産宣告, 法人의 解散,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을 받는 등 課徵金의 전부 또는 殘餘分을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p> <p>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 分割納付 또는 擔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p>第206條의16 (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 ①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자가 納付期限内에 課徵金을 납부</p>	<p>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u>커다란</u>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p> <p>4. <u>그 밖에</u>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u>다른</u>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u>분할하여</u>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게 된 <u>경우</u>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u>분할납부</u>의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p> <p>1. <u>분할납부가</u>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u>이내에</u> 납부하지 <u>않은 경우</u></p> <p>2. 담보의 변경 <u>그 밖의</u>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u>않은 경우</u></p> <p>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u>경우</u></p> <p>4. <u>그 밖의</u>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u>경우</u></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u>다른</u>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6조의16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u>이내에</u> 과징금을</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前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を 徵收할 수 있다.</p> <p>②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内에 課徵金を 납부하지 <u>아니한 때에는</u>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u>내에</u> 課徵金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を 납부하지 <u>아니한 때에는</u>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u>따라 이를</u> 徵收할 수 있다.</p> <p>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の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業務를 國稅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p> <p>④課徵金の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납부하지 <u>않은</u>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령이 정하는 加算金を 징수할 수 있다.</p> <p>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u>이내에</u> 과징금을 납부하지 <u>않은 경우에는</u>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u>이내에</u>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加算金を 납부하지 <u>않은 경우에는</u> 國稅체납처분의 예에 <u>따라</u> 징수할 수 있다.</p> <p>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과징금 및 加算金の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國稅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p>第207條 削除</p>	<p>제207조 삭제</p>
<p>第11章 罰則</p>	<p>제11장 벌칙</p>
<p>第207條의2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回避한 損失額의 3倍에 해당하는 금액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第188條의2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 	<p>제207조의2 (벌칙) ①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u>경우에는</u>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u>부과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u>규정을</u> 위반한 자 제188조의4의 <u>규정을</u> 위반한 자

현행	순화안
<p>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p> <p>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p> <p>제207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8조(동조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자 및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 추가서류, 제11조(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제19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류의 중요한</p>	<p>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p> <p>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한다.</p> <p>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한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p> <p>제207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1. 제8조(동조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자 및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2. 제8조의 규정에 다른 신고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다른 일괄신고 추가서류, 제11조(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다른 정정신고서,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다른 공개매수신고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다른 정정신고서,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다른 신고서류, 제186조의2의 규정에 다른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의 규정에 다른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제19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다른 신고 서류의 중요한</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와 그 누락된 사실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p> <p>2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한 자</p> <p>3. 제11조제3항 후단(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공고,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공고 또는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공고 또는 공시를 한 자</p> <p>5. 제5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6. 제188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p> <p>7. 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와 그 누락된 사실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p> <p>2의2. 제8조의 규정에 다른 신고서, 제186조의2의 규정에 다른 사업보고서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다른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다른 서명을 한 자</p> <p>3. 제11조제3항 후단(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공고를 하지 않은 자</p> <p>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다른 공개매수공고,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다른 정정공고 또는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다른 공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공고 또는 공시를 한 자</p> <p>5. 제5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6. 제188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p> <p>7. 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현행	순화안
<p>第208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28條 第1項·第28條의2第1項·第145條 第1項·第179條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許可를 받지 <u>아니하고</u> 당해 業務를 營爲하거나 第55條 또는 第155條(第17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u>의하여</u> 許可가 取消된 후 당해 業務를 營爲한 者 2. 第28條의2第3項 및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제63조·제95조제1항·第107條 第1項 또는 第173條의3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59條(제178조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60條 第1項(제178조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61條(제178조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206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의 調査要求에 不應한 者 5. 삭제 6. 削除 	<p>제20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조 제1항·제28조의2제1항·제145조 제1항·제179조 제1항의 規定에 <u>따른</u> 허가를 받지 <u>않고</u> 해당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55조 또는 제155조(제17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u>따라</u> 허가가 취소된 후 <u>해당</u>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28조의2제3항 및 제35조제1항의 <u>규정을</u> 위반한 자 3. 제63조·제95조제1항·제107조 제1항 또는 제173조의3의 <u>규정을</u> 위반한 자 4. 제59조(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0조 제1항(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1조(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u>규정을</u> 위반하거나 제206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u>규정을</u>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자 5. 삭제 6. 삭제
<p>第209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第8條의 規定에 違反한 有價證券의 모집·賣出을 주선한 者 	<p>제2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제8조의 <u>규정을</u> 위반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주선한 자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3. 第10條의 <u>規定에</u> 違反한 者</p> <p>4. 第21條 第1項 또는 제23조(제2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u>規定에</u> 違反한 者</p> <p>5. 第57條·第155條 第2項(第17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u>規定에</u> <u>의하여</u> 營業의 정지를 당한 <u>후</u> 당해 業務를 營爲한 者</p> <p>6.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者</p> <p>7. 제54조 또는 第168條의 <u>規定에</u> <u>의한</u> 命令에 違反한 者</p> <p>8. 第181條 第1項의 <u>規定에</u> <u>의한</u> 許可를 받지 <u>아니하고</u> 證券關係團體를 設立한 者</p> <p>9. 第188條 第1項, 第189條의2第3項, 第190條의2第1項·第2項 또는 第199條의 <u>規定에</u> 違反하거나 第21條의3, 第200條 第3項, 第200條의3 또는 第203條 第3項의 <u>規定에</u> <u>의한</u> 命令에 違反한 者</p> <p>第210條 (罰則)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元이하의罰金에 處한다.</p> <p>1. 第20條(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第190條의2第3項 또는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u>規定에</u> 依한 金融監督委員會의 <u>處分에</u> 違反한 者</p> <p>2. 第13條(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42條(제154조·第169條·第178條·第179條 또는 第180條에서 準用하는 포함한다) <u>내지</u> <u>제44조의</u> 規定을 違反한 者</p>	<p>3. 제10조의 <u>규정</u>을 위반한 者</p> <p>4.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2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u>규정</u>을 위반한 者</p> <p>5. 제57조·제155조제2항(제17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u>규정에</u> <u>따라</u> 營業의 정지를 당한 <u>뒤</u> 해당 업무를 영위한 者</p> <p>6.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者</p> <p>7. 제54조 또는 제168조의 <u>규정에</u> <u>다른 명령</u>을 위반한 者</p> <p>8. 제181조 제1항의 <u>규정에</u> <u>다른</u> 허가를 받지 <u>않고</u> 증권관계단체를 설립한 者</p> <p>9. 제188조 제1항, 제189조의2제3항, 제190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99조의 <u>규정</u>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3, 제200조 제3항, 제200조의3 또는 제203조 제3항의 <u>규정에</u> <u>다른 명령</u>을 위반한 者</p> <p>제2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u>부과</u>한다.</p> <p>1. 제20조(제27조의2·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제190조의2제3항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u>규정에</u> <u>다른</u> 금융감독위원회의 <u>처분</u>을 위반한 者</p> <p>2. 제13조(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2조(제154조·제169조·제178조·제179조 또는 제180조에서 준용하는 포함한다)<u>부터</u> <u>제44조까지의</u> 規定을 위반한 者</p>

현행	순화안
<p>3. 削除</p> <p>4. 削除</p> <p>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u>아니하고 당해</u>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u>의하여</u> 등록이 취소된 후 <u>당해</u> 업무를 영위한 자</p> <p>5. 제101조·제188조제6항·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6. 삭제</p> <p>7. 第1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預託者計座簿나 第17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顧客計座簿를 작성·비치하지 <u>아니하거나</u> 허위의 기재를 한 자</p> <p>第211條 (罰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百萬元 이하의 <u>罰金</u>에 <u>處한다</u>.</p> <p>1. 제155조제2항(제18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u>의하여</u> 營業의 정지를 당한 후 <u>당해</u> 營業을 영위한 자</p> <p>2. 第186條 第1項·第2項, 第186條의2 또는 第186條의3의 規定에 違反한 자</p> <p>3. 第189條의4第8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자</p> <p>4. 第200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자</p> <p>第212條 (罰則) 第171條의 規定에 위반한 자는 200萬圓이하의 <u>罰金</u>에 <u>處한다</u>.</p> <p>第213條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圓 이하의 <u>過怠料</u>에 <u>處한다</u>.</p>	<p>3. 삭제</p> <p>4. 삭제</p> <p>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등록을 하지 <u>않고 해당</u>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u>따라</u> 등록이 취소된 후 <u>해당</u> 업무를 영위한 자</p> <p>5. 제101조·제188조제6항·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6. 삭제</p> <p>7.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u>따른</u> 예탁자계좌부나 제1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지 <u>않거나</u> 허위의 기재를 한 자</p> <p>제21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u>벌금을 부과한다</u>.</p> <p>1. 제155조제2항(제18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u>따라</u> 營業의 정지를 당한 후 <u>해당</u> 營業을 영위한 자</p> <p>2. 제186조 제1항·제2항, 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u>규정을</u> 위반한 자</p> <p>3. 제189조의4제8항의 규정에 <u>따른</u> 신고를 하지 <u>않은</u> 자</p> <p>4. 제200조제1항의 <u>규정을</u> 위반한 자</p> <p>제212조 (벌칙) 제171조의 <u>규정을</u>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u>벌금을 부과한다</u>.</p> <p>제21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u>과태료를 부과한다</u>.</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1. 第3條의 <u>規定에</u>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p> <p>2. 第18條의2의 <u>規定에</u> 위반한 者</p> <p>3. 第19條 第1項(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 또는 第190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53條 第1項(제157조·第169條 또는 第178條 <u>내지</u> 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74條의12 또는 第200條의2第5項의 <u>規定에</u> 의한 檢査·調査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4. 제37조의 規定을 위반한 者</p> <p>5. 제188조의6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者</p> <p>6. 第189條의2第4項 또는 第191條 第4項의 <u>規定에</u> 위반하여 株式의 처분을 계율리 한 者</p> <p>7. 제191조의19제2항의 規定을 위반한 者</p> <p>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 제3조의 <u>규정을</u>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u>않은</u> 者</p> <p>2. 제18조의2의 <u>규정을</u> 위반한 者</p> <p>3. 제19조 제1항(제27조의2·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또는 제190조의2제3항에서 準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3조 제1항(제157조·제169조 또는 제178조부터 제181조까지에서 準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74조의12 또는 제200조의2제5항의 規定에 <u>다른</u> 檢査·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4. 제37조의 規定을 위반한 者</p> <p>5. 제188조의6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者</p> <p>6. 제189조의2제4항 또는 제191조 제4항의 <u>규정을</u> 위반하여 株式의 처분을 계율리 한 者</p> <p>7. 제191조의19제2항의 規定을 위반한 者</p> <p>②다음 各 號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u>부과한다.</u></p>
<p>1. 第17條(第27條의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36條·第46條 또는 제107조제2항·제3항의 <u>規定에</u> 위반한 者</p> <p>2. 第19條 第1項(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 또는 第190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53條 第2項(제157조·第169條 또는 第178條내지 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u>規定에</u>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u>순수에</u> 위반한 者</p>	<p>1. 제17조(제27조의2에서 準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6조·제46조 또는 제107조제2항·제3항의 <u>규정을</u> 위반한 者</p> <p>2. 제19조 제1항(제27조의2·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또는 제190조의2제3항에서 準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3조 제2항(제157조·제169조 또는 제178조부터 제181조까지에서 準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u>다른</u>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u>명령을</u> 위반한 者</p>

현행	순화안
<p>3. 제47조의 <u>規定에</u> 위반한 자</p> <p>4. 제54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의16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5. 제54조의6제1항·제2항 또는 제191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6. 第174條의2第2項의 <u>規定에</u> 위반하거나 第174條의7第3項 내지 第5項의 <u>規定에</u> 위반하여 <u>實質株主에 대한</u> 통지를 하지 <u>아니하거나</u> 허위의 통지를 한 자</p> <p>7. 第174條의6第4項 또는 第174條의8第1項의 <u>規定에</u> 위반한 자</p> <p>8. 제191조제5항, 제191조의10제2항·제3항, 제191조의11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③第1項 및 第2項의 <u>規定에 의한</u>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p> <p>④第3項의 <u>規定에 의한</u>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第3項의 <u>規定에 의하여</u> 過怠料處分을 받은 자가 第4項의 <u>規定에 의하여</u>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 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⑥第4項의 <u>規定에 의한</u>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u>아니하고</u> 過怠料를 납부하지 <u>아니한 때에는</u>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第214條 (懲役과 罰金の 併科) ①第207條의2 내지 第210條에 規定하는 罪를</p>	<p>3. 제47조의 <u>규정을</u> 위반한 자</p> <p>4. 제54조의5제1항부터 <u>제3항까지</u> 또는 제191조의16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5. 제54조의6제1항·제2항 또는 제191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6. 제174조의2제2항의 <u>규정을</u> 위반하거나 제174조의7제3항부터 <u>제5항까지의 규정을</u> 위반하여 <u>실질주주에게</u> 통지를 하지 <u>않거나</u> 허위의 통지를 한 자</p> <p>7. 제174조의6제4항 또는 제174조의8제1항의 <u>규정을</u> 위반한 자</p> <p>8. 제191조제5항, 제191조의10제2항·제3항, 제191조의11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u>다른</u>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u>따라</u>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u>다른</u>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u>따라</u> 이의를 제기한 <u>경우에는</u> 처분권자는 <u>바로</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u>다른</u>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⑥제4항의 규정에 <u>따라</u>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u>않고</u> 과태료를 납부하지 <u>않은 경우에는</u>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u>따라</u> 징수한다.</p> <p>제21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제207조의2부터 <u>제210조까지</u>에 規定하는</p>

【부록】 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현행	순화안
<p>犯한 者에게는 懲役과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제20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第21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07條의2 내지 第212條의 위반행위를 한 <u>때에는</u> 行爲者를 罰하는 <u>외에</u>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이하 생략)</p>	<p>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제21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u>그 밖의</u>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부터 제21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u>경우에는</u> 행위자를 벌하는 <u>이외에</u> 그 법인 또는 <u>개인에게도</u>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하 생략)</p>

참고문헌

-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9)
- 국회사무처, 법률용어 법문표현 입법모델 입안방안 (국회예규 제10호, 제11호)
- 김기열, 법령용어의 순화사업의 성과와 정책방향
- 김동욱,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김동훈, “상사법분야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2. 5. 17)
- _____, “회사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상사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6. 24)
- 김문오,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법무부 검토 의뢰 범영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연구원 (2000)
- _____, 법조문의 문장실태 조사, 국어국립연구원 (2001)
- 김문현, “헌법분야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5.17)
- 김성찬, 표준약관의 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 김희진,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의 바람직한 순화방안” 법률용어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 (국회사무처, 2004. 4)
- 맹수석, “보험·해상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상사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6. 24)

참고문헌

-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법제처, 법령용어정비편람 (2003)
-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8)
- 이훈동, 이주일, 행정관련법령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제3판, 1994)
- 조선일보, “1천여개 법률 한글로 쓴다” (2004. 6. 14)
-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 과제 (2003. 4.30)
- _____, 노동사회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 6. 18)
- _____,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5. 17)
- Max Baumann, 김은경 역, 법률용어 : 입법용어(Gesetzessprachen-Sprachen der Rechtssetzung), 한국법제연구원 (2003. 10)